

사례로 보는
웹툰·웹소설 작가를 위한
저작권 계약 안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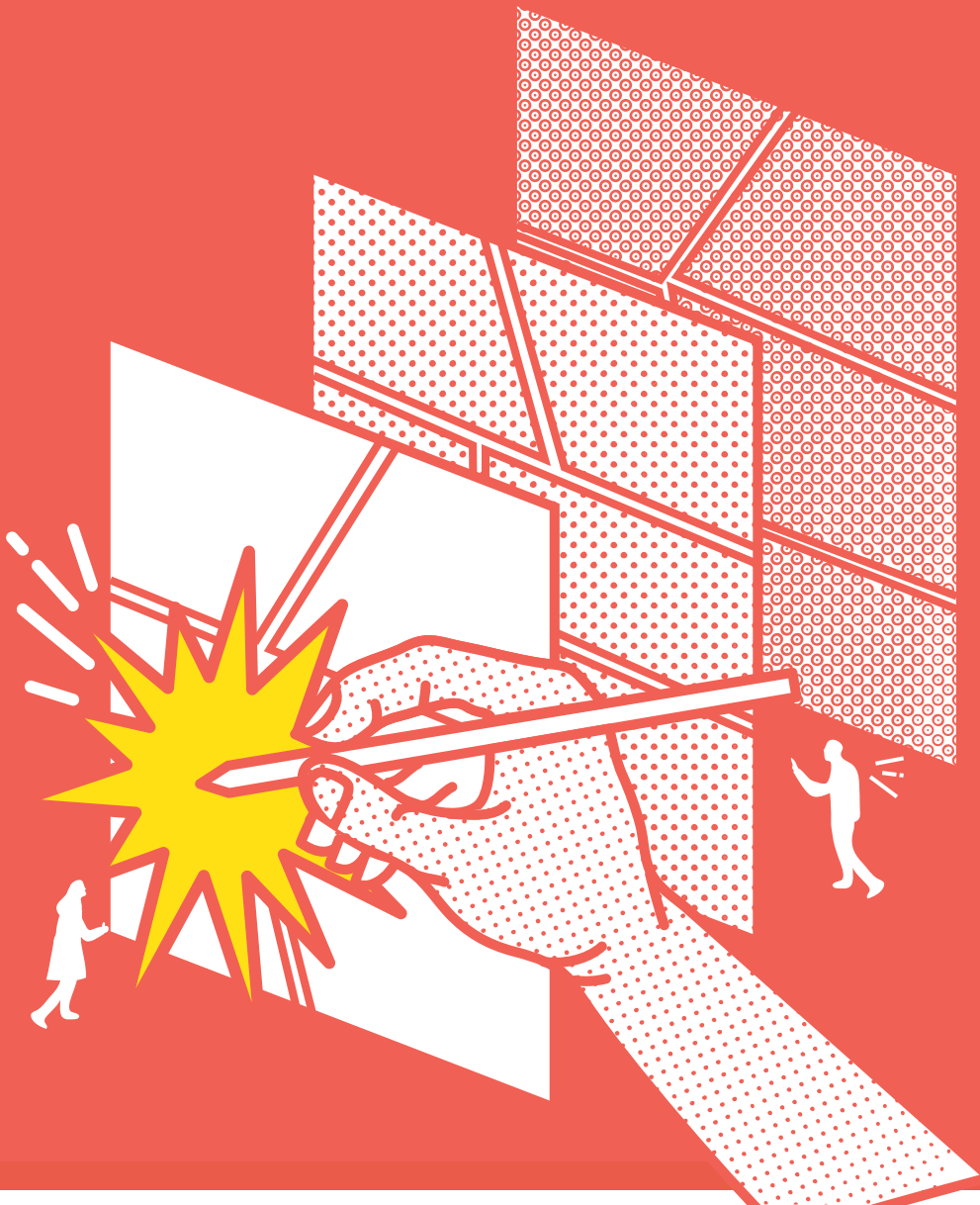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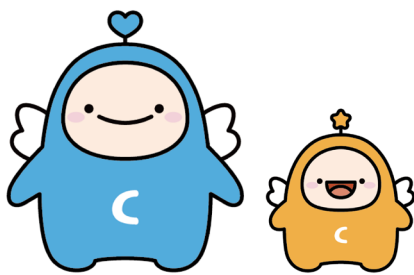


TABLE OF CONTENTS

PART.01	들어가며	05
<hr/>		
PART.02	한눈에 살펴보는 저작권법	07
	가. 저작물·저작자·저작권	07
	1) 저작물	07
	2) 저작자	09
	3) 저작권(저작인격권·저작권재산권)	10
	나. 공동저작물·결합저작물	12
	1) 공동저작물	12
	2) 결합저작물	15
	다. 업무상저작물	15
	라. 저작재산권 계약	17
	1) 계약 일반	17
	2) 저작재산권 양도 및 저작물의 이용허락	20
	① 저작재산권 양도	20
	② 저작물 이용허락	20
	③ 저작재산권 양도와 저작물 이용허락의 비교	21
<hr/>		
PART.03	문화체육관광부 표준계약서	23
	1) 만화분야	23
	2) 웹소설 분야	25
<hr/>		

PART.04	창작자를 위한 웹툰·웹소설 계약사례	27
	1) 2차적저작물에 대한 무단사용 (사례1)	28
	2) 계약상 권리 범위가 부당하게 확장될 우려가 있는 조항 (사례2)	30
	3) 권리의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 (사례3)	31
	4) 과도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거나 책임을 전가하는 조항 (사례4)	33
	5) 저작권권(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하는 조항 (사례5)	35
	6) 부당한 이익제기 금지 조항 (사례6)	37
	7) 급부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변경할 수 있게 한 조항 (사례7)	40
	8) 부당한 분쟁해결 및 재판관할 조항 (사례8)	43
	9) 부당한 계약기간 연장 조항 (사례9)	46
	10) 저작재산권 양도 시 배타적발행권자 등의 동의를 얻도록 한 조항 (사례10)	47
	11) 계약종료 후에도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게 하거나 계약의 효력을 존속시키는 조항(사례11)	49
	12) 계약상의 권리를 제3자에게 이용허락할 수 있게 한 조항 (사례12)	51
	13) 부당한 대가 지급 조항(사례13)	53
	14) 부당한 계약해지 조항 (사례14)	54
	15) 의사표시 간주 조항 (사례15)	58
	16) 정산 자료 등 중요 정보를 불성실하게 제공할 우려가 있는 조항 (사례16)	59
	17) 작품 검수 기간이 부당하게 길어질 우려가 있는 조항 (사례17)	61
	18) 과도한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 (사례18)	64
	19) 일부규정이 무효가 되더라도 나머지 규정은 어떤 형태로든 영향을 받지 않도록 정한 조항 (사례19)	66
PART.05	부록	70
	1) 만화분야 표준계약서	70
	2) 웹소설 분야 표준계약서	154
	3) 저작권 조정제도 안내	190
	4) 저작권 등록제도 안내	192
	5) 저작권법률지원센터 안내	194



PART.01

들어가며

K-콘텐츠 산업의 가파른 성장 속에서 웹툰·웹소설 분야도 문화산업을 선도하는 핵심적인 장르로 자리매김 하였습니다. 웹툰·웹소설 분야 창작자들의 눈부신 상상력과 열정으로 만들어 낸 작품들은 국내외 독자들로부터 큰 사랑을 받고 있으며, 그 파급력 또한 광범위하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화려한 성과 이면에는 창작자들이 겪는 다양한 계약상의 문제와 권리 보호의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이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는 창작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2024년 6월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를 제·개정하고, 2025년 3월 웹소설 분야 표준계약서도 새롭게 제정하였습니다. 창작자와 사업자 간의 공정한 계약 환경 조성을 위한 기반으로 표준계약서를 마련한 것입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법률지원센터 역시 창작자 지원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특히 2024년 7월부터 한국만화가협회와 공동 운영 중인 ‘웹툰 작가를 위한 1:1 저작권 법률상담소’는 만화·웹툰분야 작가들을 대상으로 저작권 법률상담 및 계약상담을 통해 창작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보호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도 2018년 3월, 2024년 4월, 2025년 5월 세 차례에 걸쳐 웹툰·웹소설 분야에서 발견된 불공정 약관을 시정 조치함으로써 창작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관행을 개선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제도적 지원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웹툰·웹소설 분야의 창작자들이 현장에서 겪는 다양한 고민과 어려움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이에 보다 공정한 창작 환경 속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본 사례집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례집은 2024년 7월부터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한국만화가협회가 함께 운영한 ‘웹툰 작가를 위한 1:1 저작권 법률상담소’를 통해 정기적으로 웹툰 작가들을 상담하면서 받았던 질의들과, 2025년 5월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 약관 시정 조치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각색한 19개의 사례 및 저작권법의 기초개념과 지원제도에 관한 내용들로 구성되었습니다. 아울러 사례와 관련한 문화체육관광부 표준계약서의 내용과 해설 등을 소개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본 사례집이 계약을 앞둔 웹툰·웹소설 분야의 창작자들에게 실질적인 길잡이가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창작자의 권익 보호와 공정한 콘텐츠 생태계 조성을 위한 노력이 지속되기를 기대합니다.

2025년 12월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법률지원센터



일러두기

- 본 사례집은 웹툰·웹소설 분야 창작자의 시각에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진행 하였던 ① 2025년 5월 웹툰·웹소설 분야 ‘출판사, 제작사 플랫폼 등 콘텐츠분야 불공정약관 시정’ 사례를 중심으로 제작되었으며, ② 2024년 4월 ‘웹툰플랫폼 사업자의 계약서 상 불공정약관조항 시정’ 및 ③ 2018년 3월 ‘26개 웹툰서비스사업자 불공정약관 시정’ 사례에서 보도된 불공정약관 유형과 시정 내용을 덧붙여 구성하였습니다.
- 개별 사례들에 첨부된 해설은 문화체육관광부 만화분야·웹소설 분야 표준계약서 및 만화분야 표준계약서 해설집 등을 인용하였으며, 기타 관련 법령과 판례 등을 참고 하였습니다.
- 관련 법령은 사례집 작성 당시 시행되는 법률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특정한 법령의 명칭을 기재하지 않았다면 저작권법을 의미합니다.
- 법률용어의 정확한 사용보다는 문맥상 이해에 도움이 되는 표현을 택하였으며, 예컨대 창작자와 저작자, 저작권자는 구분되는 개념이나 이해의 편의를 위해 혼용한 부분이 있습니다.

※ 본 사례집의 내용은 유권해석에 따른 판단이 아니며,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공식적인 견해와는 무관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률해석은 달라질 수 있으며, 수사기관 및 법원의 판단과 다를 수 있습니다.

PART.02 한눈에 살펴보는 저작권법



가. 저작물·저작자·저작권

일상생활을 하면서 저작물·저작자·저작권이라는 단어를 한 번쯤은 들어본 적 있을 것입니다. 특히나 창작자라면 더욱 익숙하게 접하는 단어들이 텐데요, 이번 장을 통해 저작권법에서 규정한 저작물·저작자·저작권이라는 단어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살펴보도록 합시다.

1) 저작물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의미합니다.

저작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저작권법에서는 아래와 같이 저작물의 예시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열거된 저작물 외에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라면 모두 저작물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4조(저작물의 예시 등)

- ① 이 법에서 말하는 저작물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소설·시·논문·강연·연설·각본 그 밖의 어문저작물
 2. 음악저작물
 3. 연극 및 무용·무연극 그 밖의 연극저작물
 4. 회화·서예·조각·판화·공예·응용미술저작물 그 밖의 미술저작물
 5. 건축물·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그 밖의 건축저작물
 6. 사진저작물(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작된 것을 포함한다)
 7. 영상저작물
 8. 지도·도표·설계도·약도·모형 그 밖의 도형저작물
 9.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저작권법에서 보호하는 저작물은 고도의 예술성을 가진 작품들만이 해당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다른 사람의 작품을 베끼지 않았으며 최소한도의 창작성만 있다면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참고판례 : 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도2227 판결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은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이어야 하는바, 여기에서 창작물이라 함은 저자 자신의 작품으로서 남의 것을 베낀 것이 아니라는 것과 최소한도의 창작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따라서 작품의 수준이 높아야 할 필요는 없지만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가치가 있는 정도의 최소한의 창작성은 요구됩니다

[참고] 2차적저작물

저작권법은 원저작물을 번역·편곡·각색·영상제작 등의 방법으로 작성한 독자적인 저작물을 2차적저작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5조(2차적저작물)

- ①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이하 “2차적저작물”이라 한다)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 ② 2차적저작물의 보호는 그 원저작물의 저작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최근 웹툰·웹소설 작품을 원작으로 2차적저작물을 만드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시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웹소설 ‘전지적 독자 시점’이 있는데요, 웹소설 ‘전지적 독자 시점’을 원저작물로 하여 제작된 웹툰과 최근에 개봉한 영화도 2차적저작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웹툰 '전지적 독자시점'
글·그림 : UMI ·슬리피-C / 원작 : 싱송



영화 '전지적 독자시점'
출처: 롯데엔터테인먼트

이처럼 원저작물을 토대로 외국어로 번역하여 해외 출판을 하거나, 드라마·영화·애니메이션 등 영상 제작을 하는 경우 모두 2차적저작물의 범위에 포함될 것입니다.

2) 저작자

태국 치앙마이에서는 그림을 수준급으로 그리는 코끼리가 있다고 합니다.¹⁾ 코끼리 코에 붓을 끼워주면 도화지 위에 정교한 붓터치로 작품을 그려내는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코끼리도 저작권법상 보호받는 저작자에 해당할까요?

저작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작권법 제2조 제2호에서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저작자로 규정하는 바, 오로지 사람만이 저작권법상 보호받는 저작자의 지위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림을 그리는 코끼리는 저작자가 될 수 없지만, 웹툰·웹소설을 비롯한 작품들을 창작한 자는 저작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1) '태국 코끼리들은 왜 '화가'가 되었을까' 쿠키뉴스, 2024. 10. 6. 광경근 기자, <https://www.kukinews.com/article/view/kuk202410050003>, (2025. 12. 22. 최종방문)

3) 저작권(저작인격권·저작권재산권)

저작자가 저작물을 창작하였을 때 원시적으로 취득하는 권리를 저작권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무방식주의를 택하고 있기 때문에, 저작자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저작권이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

제10조(저작권)

- ① 저작자는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에 따른 권리(이하 “저작인격권”이라 한다)와 제16조부터 제22조까지에 따른 권리(이하 “저작권재산권”이라 한다)를 가진다.
- ②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저작자가 저작물을 창작하였을 때 취득하는 저작권은 1) 저작인격권과 2) 저작권재산권으로 나누어지며, 이는 총 10가지의 세부 권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작권에 관하여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까요?

[저작인격권]

먼저, 저작인격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저작인격권은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하여 가지는 인격적·정신적 권리를 말합니다. 이러한 저작인격권에는 저작권법 제11조에서 제13조까지 규정한 공표권, 성명표시권 및 동일성유지권이 포함됩니다.

공표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공표하거나 공표하지 아니할 것을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성명표시권	저작자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에 또는 저작물의 공표 매체에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를 가진다.
동일성유지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의 내용·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가진다.

저작인격권은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상속할 수 없고, 저작자가 사망하면 그와 동시에 소멸합니다. 이러한 특징을 일신전속적이라고도 표현하는데요, 다만 저작권법은 저작자가 사망하더라도 일정한 경우에 그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14조(저작인격권의 일신전속성)

- ① 저작인격권은 저작자 일신에 전속한다.
- ② 저작자의 사망 후에 그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저작자가 생존하였더라면 그 저작인격권의 침해가 될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 행위의 성질 및 정도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저작재산권]

저작재산권은 저작인격권과는 달리, 타인에게 권리를 양도할 수도 있고 상속할 수도 있습니다. 저작재산권은 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권리로서 저작권법 제16조에서 제22조까지 규정한 총 일곱 가지 권리(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저작물작성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복제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를 가진다.
공연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공연할 권리를 가진다.
공중송신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공중송신할 권리를 가진다.
전시권	저작자는 미술저작물 등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전시할 권리를 가진다.
배포권	저작자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배포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이 해당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여권	저작자는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음반(이하 "상업용 음반"이라 한다)이나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프로그램을 영리를 목적으로 대여할 권리를 가진다.
2차적저작물작성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위와 같이, 저작자는 자신의 저작물에 대한 일곱가지의 저작재산권을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이 해당 저작물을 복제·배포 등의 이용을 하고자 할 경우, 원칙적으로 저작자에게 별도의 허락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나. 공동저작물·결합저작물

1인이 하나의 작품을 창작한 경우에 이를 ‘단독저작물’이라고 합니다. 한편 일반적으로 2인 이상이 하나의 작품을 창작한 경우에,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할 수 없다면 ‘공동저작물’, 분리하여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결합저작물’로 구분됩니다.

1) 공동저작물

저작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1. “공동저작물”은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서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2인 이상이 공동창작의 의사를 가지고 창작적인 표현형식 자체에 공동의 기여를 함으로써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단일한 저작물을 창작한 경우 이들은 저작물의 공동저작자가 됩니다. 여기서 공동창작의 의사는 공동의 창작행위에 의하여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단일한 저작물을 만들어 내려는 의사를 의미합니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도16066 판결).

이와 같이 공동저작물이 되기 위해서는 공동창작의 의사를 요구하기 때문에, 2인 이상이 시기를 달리하여 순차적으로 창작에 기하여 단일한 저작물을 완성하는 경우, 2인 이상의 창작자들 사이에 1) 공동창작의 의사가 존재하였다면 해당 저작물은 공동저작물에 해당하지만, 2) 공동창작의 의사가 없는 경우 공동저작물이 될 수 없으며, 경우에 따라 선행저작물의 2차적저작물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판례 : 대법원 2016. 7. 29. 선고 2014도16517 판결

2인 이상이 시기를 달리하여 순차적으로 창작에 기여함으로써 단일한 저작물이 만들어지는 경우에, 선행 저작자에게 자신의 창작 부분이 하나의 저작물로 완성되지는 아니한 상태로써 후행 저작자의 수정·증감 등을 통하여 분리이용이 불가능한 하나의

완결된 저작물을 완성한다는 의사가 있고, 후행 저작자에게도 선행 저작자의 창작 부분을 기초로 하여 이에 대한 수정·증감 등을 통하여 분리의용이 불가능한 하나의 완결된 저작물을 완성한다는 의사가 있다면, 이들에게는 각 창작 부분의 상호 보완에 의하여 단일한 저작물을 완성하려는 공동창작의 의사가 있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반면에 선행 저작자에게 위와 같은 의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창작으로 하나의 완결된 저작물을 만들려는 의사가 있을 뿐이라면 설령 선행 저작자의 창작 부분이 하나의 저작물로 완성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후행 저작자의 수정·증감 등에 의하여 분리의용이 불가능한 하나의 저작물이 완성되었더라도 선행 저작자와 후행 저작자 사이에 공동창작의 의사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때 후행 저작자에 의하여 완성된 저작물은 선행 저작자의 창작 부분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 저작물로 볼 수 있을지언정 선행 저작자와 후행 저작자의 공동저작물로 볼 수 없다.

만약 A작가의 작품 창작 과정에서 제작사 대표인 B가 아이디어를 제공하였다면, B도 공동저작자 지위를 가지게 될까요? 대법원은 공동저작자가 되려면 단순히 아이디어나 소재 또는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등의 관여를 한 것만으로는 공동저작자로 볼 수 없으며 창작적인 표현 자체에 기여할 것을 요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B는 공동저작자의 지위를 가질 수는 없다고 볼 것입니다.



참고판례 :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7도7181 판결

구 저작권법(2006. 12. 28. 법률 제810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제2호, 제13호의 각 내용 및 저작권은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한 창작적인 표현 형식만을 보호대상으로 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2인 이상이 저작물의 작성에 관여한 경우 그 중에서 창작적인 표현 형식 자체에 기여한 자만이 그 저작물의 저작자가 되는 것이고, 창작적인 표현 형식에 기여하지 아니한 자는 비록 저작물의 작성 과정에서 아이디어나 소재 또는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등의 관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저작물의 저작자가 되는 것은 아니며, 설사 저작자로 인정되는 자와 공동저작자로 표시할 것을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이 아니다.

저작권법에서는 원칙적으로 공동저작물의 저작권(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 모두 저작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여 행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공동저작자 중 권리를 대표하여 행사할 자를 정하는 것도 가능하나, 대표행사가 다른 공동저작자와의 합의 없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어 다른 공동저작자의 권리 행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작권 대표행사를 정함에 있어 공동저작자 전원의 합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저작권법

제15조(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

- ① 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은 저작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행사할 수 없다. 이 경우 각 저작자는 신의에 반하여 합의의 성립을 방해할 수 없다.
- ② 공동저작물의 저작자는 그들 중에서 저작인격권을 대표하여 행사할 수 있는 자를 정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권리를 대표하여 행사하는 자의 대표권에 가하여진 제한이 있을 때에 그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제48조(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의 행사)

- ①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그 저작재산권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행사할 수 없으며, 다른 저작재산권자의 동의가 없으면 그 지분을 양도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이 경우 각 저작재산권자는 신의에 반하여 합의의 성립을 방해하거나 동의를 거부할 수 없다.
- ② 공동저작물의 이용에 따른 이익은 공동저작자 간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그 저작물의 창작에 이바지한 정도에 따라 각자에게 배분된다. 이 경우 각자의 이바지한 정도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 ③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는 그 공동저작물에 대한 자신의 지분을 포기할 수 있으며, 포기하거나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에 그 지분은 다른 저작재산권자에게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배분된다.
- ④ 제1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의 행사에 관하여 준용한다.

2) 결합저작물

두 사람 이상이 하나의 작품 창작에 관여하나, 창작에 관여한 저작자 사이에 공동관계가 인정되지 않고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사와 악곡으로 구성된 음악저작물을 대표적인 결합저작물의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음악저작물은 가사와 악곡을 분리하여 이용하는 것이 가능한바, 가사를 이용할 경우 작사가에게, 악곡을 이용할 경우 작곡가의 허락을 받아 이용할 수 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1. 10. 21. 선고 2019나2016985 판결 및 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3다58460, 58477 판결 참조).



참고판례 : 대법원 2005. 10. 4. 선고 2004마639 결정

뮤지컬은 음악과 춤이 극의 구성·전개에 긴밀하게 짜 맞추어진 연극으로서, 각본, 악곡, 가사, 안무, 무대미술 등이 결합된 종합예술의 분야에 속하고 복수의 저작자에 의하여 외관상 하나의 저작물이 작성된 경우이기는 하나, 그 창작에 관여한 복수의 저작자들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이 분리되어 이용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공동저작물이 아닌 단독 저작물의 결합에 불과한 이른바 ‘결합저작물’이라고 볼 이 상당함.

다. 업무상저작물

업무상저작물이란 창작자 원칙에 대한 예외로, 법인·단체 그 밖의 사용자(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기획 하에 법인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을 의미합니다.

업무상저작물은 구체적으로 ① 법인·단체 그 밖의 사용자가 저작물의 작성에 관하여 기획하고, ②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의하여 작성되며, ③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이고, ④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되며 ⑤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을 것을 성립 요건으로 하며, 이와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법인 등이 저작자가 되는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저작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1. “업무상저작물”은 법인·단체 그 밖의 사용자(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기획하에 법인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을 말한다.

제9조(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

법인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는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는 때에는 그 법인등이 된다. 다만,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의 경우 공표될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업무상저작물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신문 기사를 들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신문에 소속된 기자가 업무상 작성하여 신문의 명의로 공표한 기사는 ‘업무상저작물’에 해당하여, 특별한 계약이나 근무규칙에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신문사가 저작자가 됩니다. 이러한 경우 제3자가 해당 기사를 이용하고자 한다면, 기자에게 허락을 받는 것이 아니라 신문을 통해 이용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참고판례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3. 18. 선고 2015가합553551

저작권법 제9조에 따라 업무상 저작물로서 법인 등의 저작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법인, 단체 그 밖의 사용자가 저작물의 작성에 관하여 기획을 하고,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의하여 저작물이 업무상 작성되어야 하며, 저작물이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되어야 하는데, 제반 사정에 비추어 갑과 을 사이에 고용관계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발레 작품을 저작권법 제9조에 따른 업무상 저작물로 볼 수 없고, 갑이 발레 작품의 기획·제작·공연 과정에 관여하였다는 것을 넘어 발레 작품의 창작적인 표현 형식에 기여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발레 작품을 갑과 을의 공동저작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라. 저작재산권 계약

1) 계약 일반

통상적으로 계약을 체결하기 전, 계약을 구성하는 세부 요소들을 협의하게 되는데, 이는 ① 계약을 체결할 것인지 여부, ② 계약의 상대방을 누구로 할 것인지, ③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권리·의무)을 무엇으로 할 것인지, ④ 계약 체결의 방식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 등이 있습니다. 저작권 계약을 체결할 때에도 이와 마찬가지로 사적 자치와 계약자유의 원칙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참고판례 : 헌법재판소 2009. 6. 25. 선고 2007헌바39 전원재판부

이른바 사적 자치의 원칙이란 자신의 일을 자신의 의사로 결정하고 행하는 자유 뿐만 아니라 원치 않으면 하지 않을 자유로서 우리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되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하나이다. 이런 사적 자치의 원칙은 법률행위의 영역에서는 계약자유의 원칙으로 나타나는데 계약자유의 원칙은 계약의 체결에서부터 종결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에서 자신의 자유의사에 따라 계약관계를 형성하는 것으로서 계약의 내용, 이행의 상대방 및 방법의 변경뿐만 아니라 계약 자체의 이전이나 폐기도 당사자 자신의 의사로 결정하는 자유를 말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계약의 자유도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및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로써 제한될 수 있고, 다만 그 제한은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하며 사적 자치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계약체결의 방식과 관련해서도 반드시 서면계약이 강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 대법원 판례에서 실시한 바와 같이, 묵시적인 의사표시나 구두의 의사표시를 통해서도 계약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참고판례 :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다30765 판결

일반적으로 계약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청약과 승낙이라는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가 합치될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지만, 그러한 의사표시는 명시적인 경우뿐만 아

나라 목시적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한편, 어떠한 경우에 목시적 의사표시를 통해 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는 당사자들이 취한 일련의 행위 또는 용태, 목시적 합의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그 합의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추후 분쟁이 발생할 시에 어떠한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증명하기가 어렵다는 점에서 가능한 서면계약을 작성하시기를 권장합니다. 대법원에서도 계약서 상에 기재된 내용의 객관적 의미가 명확하다면, 계약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 존재와 내용을 인정한다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습니다.



참고판례 :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다92487 판결

일반적으로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그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의 문제에 해당한다. 의사표시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그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의 여하에 관계없이 그 서면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이 경우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한편 예술인복지법에서는 아래와 같이 문화예술용역과 관련된 계약에서는 필수 기재사항을 포함한 서면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정하고 있습니다.

예술인복지법

제4조의4(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 ① 문화예술용역과 관련된 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의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주고받아야 한다.
 1. 계약 금액
 2. 계약 기간·갱신·변경 및 해지에 관한 사항
 3. 계약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4. 업무·과업의 내용, 시간 및 장소 등 용역의 범위에 관한 사항
 5. 수익의 배분에 관한 사항
 6. 분쟁해결에 관한 사항
- ③ 제5조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예술기획업자들이 제2항을 위반한 경우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계약서 명시사항의 기재,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의 교부, 그 밖에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8조(과태료)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의2. 제4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문화예술용역 관련 서면 계약을 작성하지 아니한 문화예술기획업자등

예술인복지법 제4조의4 제2항에서 규정한 각 호의 사항들은 저작권 계약을 체결할 때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이에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이 아니더라도 저작권 계약을 체결하실 때 위와 같은 사항들이 포함되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를 권장합니다.

2) 저작재산권 양도 및 저작물 이용허락

창작자 원칙이란 저작자가 저작물을 창작한 때에 저작권을 취득한다는 원칙입니다. 이에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별도의 허락을 받고 이용하여야 합니다. 저작권법에서는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한 대표적인 방법으로 '저작재산권 양도'와 '저작물 이용허락'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저작재산권 양도

저작재산권의 양도란 저작자가 제3자에게 저작재산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흔히 '저작권에 대한 주인이 바뀐다'라고도 표현을 하며, 저작자가 양도한 범위에서 양수인은 저작재산권을 보유하게 됩니다.

한편 저작권법 제45조 제2항에서는 저작재산권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별도 특약이 없는 때에는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작재산권 전부양도 계약을 체결하면서, 양도 범위를 단순히 '저작재산권 전부' 또는 '저작재산권 일체'라고 기재한 경우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양도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45조(저작재산권의 양도)

- ① 저작재산권은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다.
- ②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제22조에 따른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는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프로그램의 경우 특약이 없으면 2차적저작물작성권도 함께 양도된 것으로 추정한다.

② 저작물 이용허락

저작물의 이용허락은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재산권을 그대로 보유하면서, 허락을 받는 상대방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이에 저작자가 자신의 작품을 추후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저작재산권 양도'의 방식보다는 '저작물 이용허락'의 방식으로 계약하시기를 권장합니다.

저작권법

제46조(저작물의 이용허락)

- ①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락을 받은 자는 허락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락에 의하여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할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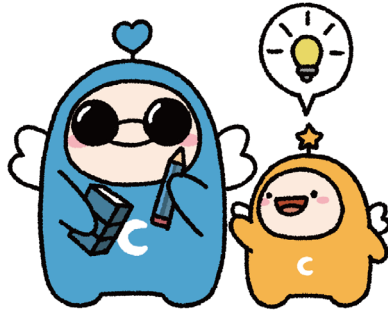
저작물의 이용허락은 크게 '독점적 이용허락'과 '비독점적 이용허락'으로 나뉘어 집니다. 1) 독점적 이용허락은 저작재산권자가 일정한 이용범위 안에서, 단일한 이용자만이 독점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을 의미하며, 2) 비독점적 이용허락은 복수의 이용자에 대하여 중첩적으로 이용을 허락해줄 수 있는 계약을 의미합니다.

③ 저작재산권 양도와 저작물 이용허락의 비교

저작권자로부터 저작재산권을 양도받은 양수인의 경우, 양수인이 저작권자가 되는바 침해자에 대한 직접적 형사고소 및 민사상 금지청구 또는 손해배상청구 등이 가능합니다. 반면 저작권자로부터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받은 이용자의 경우에는 저작권자가 아니므로 침해자를 상대로 한 위와 같은 직접적인 권리행사가 제한됩니다.

뿐만 아니라, 저작재산권 양도의 경우 권리가 이전되지만, 저작물 이용허락은 저작자가 여전히 저작권을 보유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저작재산권을 양도한 저작자는 자신의 저작물이라도 이용이 어려워지는 반면, 저작물 이용허락을 한 저작자는 스스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 대한 이용허락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존재합니다.





PART.03 문화체육관광부 표준계약서

1) 만화분야

2024년 6월 문화체육관광부는 만화·웹툰 생태계 등 다양한 관계자들과의 논의를 통해 제·개정된 표준계약서 8종을 마련하였습니다.²⁾ 제·개정안에서는 수익 배분 규정을 명확하게 하고, 정산 과정의 투명성을 담보하는 내용을 명문화했습니다. 특히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됐던 웹툰 작가들의 열악한 창작 환경과 건강 악화 문제를 고려해, 웹툰 연재 시 휴재와 회차별 최소·최대 분량 합의 등의 조항을 추가했습니다. 더불어 비밀 유지 조건을 완화하고 계약 체결 시 설명의무를 부과하는 등 계약 당사자 간 공정한 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했으며, 창작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예술인 고용보험)를 계약서 조항으로 추가했습니다.

또한 최근 만화·웹툰을 원작으로 한 드라마와 영화, 게임 등 2차적저작물이 큰 인기를 얻으며, 이와 관련한 권리관계, 수익배분의 문제가 플랫폼·제작사·창작자의 계약에서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바 ‘2차적저작물작성권 이용 허락 계약서’와 ‘2차적저작물작성권 양도계약서’의 제정안 2종을 새로 마련했습니다.³⁾

연번	명칭	개요
1	출판권 설정계약서	‘저작권자’가 대상 저작물에 대하여 ‘출판권자’에게 출판권을 부여하고 ‘출판권자’는 이를 출판함에 있어 양 당사자 사이의 권리·의무 및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
2	전자책 발행 계약서	‘저작권자’가 대상 저작물에 관하여 ‘전자책 발행업자’에게 전자책 발행권을 부여하고 ‘전자책 발행업자’는 이를 전자책으로 발행함에 있어 양 당사자 사이의 권리·의무 및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
3	웹툰 연재계약서	‘저작권자’가 창작한 대상 저작물을 ‘서비스 제공업자’에게 제공하고 ‘서비스 제공업자’는 이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하여 연재함에 있어 양 당사자 간의 권리·의무 및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
4	만화 저작물 대리중개 계약서	‘저작권자’가 대상 저작물에 대한 대리중개를 ‘대리중개인’에게 위임하고, ‘대리중개인’은 이를 대리중개함에 있어 양 당사자 사이의 권리·의무 및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

2)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24.6. 개정),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24-0032호, <https://www.mcst.go.kr/site/s_data/generalData/dataView.jsp?pSeq=51&pMenuCD=0405050000&pCcurrentPage=1&pType=&pSearchType=01&pSearchWord=> (2025. 12. 22. 최종방문)

3) 2024. 6. 13.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만화·웹툰 분야 공정환경 조성 위한 표준계약서 제·개정안 확정 고시’, <https://www.mcst.go.kr/site/s_notice/press/pressView.jsp?pSeq=21156>, (2025.12.22. 최종방문)

5	공동 저작 계약	'저작자1'과 '저작자2'가 대상 저작물을 공동으로 저작하고 저작권을 공동으로 보유함에 있어 양자 사이의 권리·의무 및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
6	기획만화 계약	'발주자'의 기획에 따라 '저작자'가 창작한 기획만화인 대상 저작물에 관하여 양 당사자 사이의 권리·의무 및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
7	2차적저작물작성권 이용허락 계약	'저작권자'가 권리를 보유한 대상 저작물의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사업자'에게 이용허락을 함에 있어 양 당사자 사이의 권리·의무 및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
8	2차적저작물작성권 양도계약	'저작권자'가 권리를 보유한 대상 저작물의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사업자'에게 양도함에 있어 양 당사자 사이의 권리·의무 및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

2025년 6월 제·개정된 '만화분야 표준계약서 해설서'(이하 '해설서'라 한다)가 배포되었으며, 본 해설서는 표준계약서 8종의 구체적인 사용에 대해 안내하며, 총 3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⁴⁾ 제1장에서는 표준계약서의 보급·활용, 제·개정 주요 내용을 설명하며 특히, 계약서 작성 시 기본원칙과 유의 사항, 계약 위반 대처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제2장에서는 표준계약서별로 계약 내용의 본질적인 부분이나 불공정성 문제 발생 가능성이 큰 사안에 관한 규정을 '핵심'으로 표시했습니다. '웹툰 연재계약서'의 경우에는 계약기간, 권리의 부여, 원고의 인도와 연재 시기, 휴재, 대가의 지급, 정산, 2차적저작물작성권, 저작권격권의 존중, 교정 및 편집, 원고의 반환, 계약의 해지·해제, 설명의 의무 등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제3장에서는 계약서를 다루면서 참고할 만한 저작권의 개념·예시, 영상저작물 특례, 저작자, 저작권의 내용,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양도·행사·소멸, 저작권 침해에 대한 대응 등을 넣었는 바 관련하여 표준계약서 활용 시 유용하게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⁵⁾



참고 : 웹툰 분야 보조작가 표준계약서

서울시에서는 웹툰 산업 내 올바른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사업자, 메인작가, 보조작가 모두 신뢰를 바탕으로 함께 일할 수 있도록 '웹툰 보조작가 표준계약서'를 개발하였는바 관련하여 함께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⁶⁾

4)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 해설집(2025. 6. 13.), 문화체육관광부, <https://www.mcst.go.kr/site/s_data/generalData/dataView.jsp?pSeq=53&pMenuCD=0405050000&pCurrentPage=1&pType=&pSearchType=01&pSearchWord=>, (2025. 12. 22. 최종방문).

5) 2025. 5. 29.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 8종 핵심 조항과 사용 기준 알려드립니다', <https://mcst.go.kr/site/s_notice/press/pressView.jsp?pSeq=21850>, (2025. 12. 22. 최종방문)

2) 웹소설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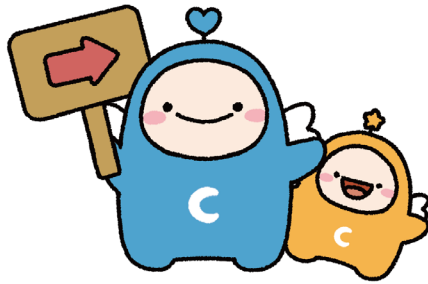
2025년 3월 문화체육관광부는 웹소설 분야 표준계약서 제정안 3종을 고시했습니다.⁷⁾ 문화체육관광부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창작사와 제작사, 플랫폼, 학계 등 웹소설 생태계 구성원이 함께한 ‘웹소설 상생협의체’를 운영해 제정안을 마련하였으며 계약 자동 갱신 시 해지권, 휴재권, 매출관련 정보 제공, 계약내용 설명 의무 등 공정 계약 체결에 필요한 상호 권한과 의무 사항을 담았습니다.⁸⁾

연번	명칭	개요
1	출판권 설정 계약서	저작권자가 출판권자에게 대상 저작물을 인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문서 또는 도화로 발행(복제·배포)하는 권리를 부여함을 규정
2	전자출판 배타적발행권 설정계약서	대상 저작물에 대한 전자책 등의 발행을 위한 배타적발행권을 설정함에 있어 저작권자 및 발행권자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
3	웹소설 연재계약서	저작권자가 대상 저작물을 콘텐츠사업자에게 제공하고, 콘텐츠사업자는 이를 플랫폼을 통하여 연재를 진행함에 있어 당사자 간의 권리의무 및 기타 제반사항을 규정

[참고] 한눈에 보는 만화·웹소설 표준계약서

		
만화분야 표준계약서	만화분야 표준계약서 해설서	웹소설 분야 표준계약서

6) 2024. 11. 18. 서울시 보도자료 ‘웹툰 보조작가용 표준계약서 나왔다…모바일로도 OK’, (<https://mediahub.seoul.go.kr/archives/2012743>), (2025. 12. 22. 최종방문)
 7) 웹소설 분야 표준계약서(‘25. 3. 20. 제정),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25-0021호, (https://www.mcst.go.kr/site/s_data/generalData/dataView.jsp?pSeq=52&pMenuCD=0405050000&pCurrentPage=1&pType=&pSearchType=01&pSearchWord=), (2025. 12. 22. 최종방문)
 8) 2025. 3. 20.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웹소설 분야 표준계약서 제정안 고시로 공정환경 조성’, (https://www.mcst.go.kr/site/s_notice/press/pressView.jsp?pSeq=21717), (2025. 12. 22. 최종방문)



PART.04

창작자를 위한 웹툰·웹소설 계약 사례

공정거래위원회는 2018년 3월, 2024년 4월, 2025년 5월 세 차례에 걸쳐 웹툰·웹소설 분야 불공정 약관을 시정한 바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시정 조치한 대상은 약관으로, 약관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에 상관없이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을 말합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이라 함) 제2조 제1호).

계약은 사적자치와 계약자유 원칙에 따라 계약 당사자들이 자유롭게 협상하여 결정하는 반면, 약관은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미리 마련한 정형화된 조건으로 개별적 교섭이 제한적이며 약관법의 특별한 규제를 받습니다.

이처럼 계약과 약관 사이에는 본질적인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시정 조치한 불공정 약관 내용들이, 곧장 불공정 계약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웹툰·웹소설 분야에서 불공정 약관으로 시정조치 되었던 사항들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이와 관련된 법령과 판례, 그리고 표준계약서 내용을 확인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2024년 7월부터 한국만화가협회와 공동으로 운영 중인 ‘웹툰작가를 위한 1:1 저작권 법률상담소’에서 나왔던 질의들과, 2025년 5월 공정거래위원회 불공정 약관 시정조치 내용들을 중심으로 아래와 같이 웹툰·웹소설 분야 작가들이 계약 체결 시 참고할 수 있는 19개의 사례로 마련하였습니다.

각 사례에서 소개된 계약서의 (원안)과 (수정안) 및 주요 내용은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에서 소개된 불공정 약관 시정 전·후의 조항 및 시정사유를 인용하였습니다. 또한 각 사례에서 참고가 되는 문화체육관광부 만화·웹소설 분야 표준계약서의 조항들과 만화분야 표준계약서 해설서의 내용을 발췌하였는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례1 2차적저작물에 대한 무단사용

Q. 안녕하세요 저는 웹툰을 그리는 작가입니다. 며칠 전 제작사가 제안한 웹툰연재 계약서에 웹툰에 대한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위임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는 추후에 2차적저작물에 관한 계약을 별도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제작사 측에서 제안한 계약서에 반드시 따라야 하나요?

[원안]

본 계약의 계약기간 동안 “콘텐츠”가 방송, 녹음, 녹화, 연극, 그 이외의 공연 등의 형태로 이차적으로 사용될 경우, “갑”은 그 이차적 사용에 대한 사무일체를 “을”에게 위임하기로 한다.

A. 저작권법 제10조에 따라 저작자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저작인격권(공표권·성명표시권·동일성유지권)과 저작재산권(복제권·배포권·공연권·전시권·대여권·공중송신권·2차적저작물작성권)을 가지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2차적저작물작성권의 권리주체는 저작자인 작가입니다. 이에 제3자가 작가의 저작물을 2차적으로 작성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제작사는 웹툰 연재계약을 통해 작가로부터 원작 그대로 연재할 권리를 부여받는 것으로, 2차적저작물에 대한 작성·사용권이 그 제작사에게 자동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작사가 작가의 웹툰을 연재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웹툰의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포괄적으로 위임받는 조항은 작가가 2차적저작물을 언제, 누구와 어떠한 조건으로 제작할지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합니다.

이에 귀하가 추후 별도의 협의를 통해 2차적저작물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한다면, 아래와 같이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도록 명시함이 바람직합니다.

[수정안]

콘텐츠의 이차적 사용에 대하여 “갑”과 “을”은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도록 한다.

[관련 규정·판례]**저작권법****제5조(2차적저작물)**

- ①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이하 “2차적저작물”이라 한다)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 ② 2차적저작물의 보호는 그 원저작물의 저작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22조(2차적저작물작성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참고 : 문화체육관광부 만화분야 표준계약서**

2024년 6월 개정된 만화분야 표준계약서에서는 「2차적저작물작성권 이용허락·양도계약서」를 제정하였으며, 아래와 같이 2차적저작물 활용범위를 항목별로 나누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는바, [부록1] 을 통해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내		국외		
	양도여부	분배비율	지역 또는 언어	양도여부	분배비율
영상화(애니메이션화)					
영상화(영화, 드라마 등)					
공연화(뮤지컬, 연극 등)					
상품화(유형물)					
게임화					
어문저작물작성					
음성저작물작성					
음악저작물작성					
광고					
번역저작물					
(추가기재가능)					

사례2 계약상 권리 범위가 부당하게 확장될 우려가 있는 조항

Q. 안녕하세요 저는 신인 웹툰 작가입니다. 얼마 전 제작사를 통해 웹툰연재 계약서를 제안받았습니다. 계약서에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향후 기술 개발되는 내용은 현재 예측할 수가 없어 걱정됩니다. 이대로 계약을 체결해야 할까요?

[원안]

제2조(용어의 정의)

5) “디지털 콘텐츠(digital contents)”란 전자 기기를 통해 보거나 듣거나 사용할 수 있는 부호, 문자, 음성, 음향, 이미지, 영상 등을 디지털 방식으로 제작, 처리, 유통하는 자료, 정보 등을 의미한다. 또한 향후 기술 개발에 따라 새로운 디지털 방식으로 제작 또는 처리된 것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A. 본 계약서에서 디지털콘텐츠의 범위를, 현재 개발되어 사용하는 매체나 기술을 통해 제작된 것뿐만 아니라, 향후 개발될 새로운 방식으로의 제작 또는 처리된 것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제작사가 웹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웹툰 작품의 사용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작가 자신이 제공한 콘텐츠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인지할 수 있도록 함이 바람직합니다.

본 계약서 조항은, 귀하가 제공한 콘텐츠가 어떠한 방식으로 제작, 처리될 것인지 예측하기 어려우며, 향후 귀하가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용되는 등 불리하게 작용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또한 향후 기술 개발에 따라 새로운 디지털 방식으로 제작 또는 처리되는 것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의 문구는 삭제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만약 현재 시점에서 예상하기 어려운 서비스 방식 및 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방식으로 저작물을 사용 및 유통하고자 할 경우, 아래와 같이 별도로 협의하는 취지로 수정하심이 바람직합니다.

[수정안]

제2조(용어의 정의)

- 5) ‘디지털 콘텐츠(digital contents)’란 전자 기기를 통해 보거나 듣거나 사용할 수 있는 부호, 문자, 음성, 음향, 이미지, 영상 등을 디지털 방식으로 제작, 처리, 유통하는 자료, 정보 등 현재 개발된 모든 매체 및 기술을 이용하여 제작, 처리된 것을 의미하며, 장래에 개발될 기술에 의하여 제작, 처리된 것에 대하여는 저작권자와 별도로 협의할 수 있다.

아울러 본 수정안을 기초로 하시되, 계약 대상 저작물이 모든 ‘디지털 콘텐츠(digital contents)’를 포괄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특정될 수 있도록 계약 서상에 보다 명확하게 기재하심이 바람직합니다.

○ 사례3 권리의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

- Q.** 안녕하세요 웹툰 작가입니다. 얼마 전 제작사로부터 웹툰에 대한 영상물을 제작하는 계약을 제안받았습니다. 이후 제작사로부터 ‘2차적저작물 작성 이용허락 계약서’를 받아 보니 계약서에 명시된 ‘2차적저작물’의 범위가 아래와 같이 포괄적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제작사에게 영상물 작성에만 한하여 이용허락을 하고자 하는데, 이대로 계약을 체결해도 될까요?

[원안]

이용허락에 관한 일반조건

제2조(용어의 정의)

1. ‘본건 2차적저작물’이라 함은 ‘원 저작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토대로 변형 등을 거쳐 작성된 새로운 저작물을 의미한다.

- A.** 귀하는 제작사로부터 웹툰의 영상화 제안을 받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계약서에는 사업자가 귀하로부터 설정받고자 한 영상물 작성 권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권리까지 확장하여 이용허락을 받고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46조에서는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으며, 허락을 받은 자는 허락받은 이용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작사가 본 계약서 상에 영상물 뿐만 아니라 웹툰, 오디오 등까지 포괄적으로 2차적저작물 이용 범위를 확장하는 경우, 귀하와 제3자 간 영상화 이외의 다른 2차적저작물에 대한 계약까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래와 같이 2차적저작물의 범위를 영상물 형태로 제작되는 것에 한정하여 기재하시되, 아울러 수정안을 기초로 본 계약서상 대상 영상물이 보다 구체적으로 특정될 수 있도록 명확하게 한정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수정안]

이용허락에 관한 일반조건

제2조(용어의 정의)

1. ‘본건 2차적저작물’이라 함은 ‘원 저작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토대로 변형 등을 거쳐 작성된 새로운 저작물로서 **영상물 형태로 제작된 것을** 의미한다.

[관련 규정·판례]

저작권법

제46조(저작물의 이용허락)

- ①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락을 받은 자는 허락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락에 의하여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할 수 없다.



참고 : 문화체육관광부 만화분야 표준계약서

2024년 6월 개정된 만화분야 표준계약서에서는 「2차적저작물작성권 이용허락·양도계약서」를 제정하였는바, [부록1] 을 통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례4 **과도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거나 책임을 전가하는 조항**

Q. 안녕하세요 웹툰 작가입니다. 제작사가 웹툰연재 계약서를 제안하였습니다. 그런데 해당 계약서에는 사유 불문하고 저의 행위로 인한 모든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과도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것 같은데 이대로 계약을 체결해야만 하나요?

[원안]

제14조 (지식재산권 등)

- ③ 사유불문하고 제공자 또는 저작권자의 행위로 인해 본 계약상 B제작사의 권리 행사나 제공자의 의무 이행이 제한되는 경우, 제공자는 제공자의 비용과 노력으로 즉시 이를 해결해야 하며 이로 인해 발생한 B제작사의 모든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A. 자신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계약을 위반하여 계약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그에 대한 배상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민법 제390조).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의 성립에도 이와 마찬가지로 고의, 과실의 귀책사유가 필요합니다(민법 제750조).

본 사안의 계약 내용은 귀하의 귀책과 상관없이 사유불문 하고 모든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귀책사유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기재 하셔서 귀책 사유가 없는 경우까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도록 수정하심이 바람직합니다.

[수정안]

제14조 (지식재산권 등)

- ③ 제공자 또는 저작권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본 계약상 B제작사의 권리 행사나 제공자의 의무 이행이 제한되는 경우, 제공자는 제공자의 비용과 노력으로 즉시 이를 해결해야 하며 이로 인해 발생한 B제작사의 모든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관련 규정·판례]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참고 : 만화분야 표준계약서 내 「웹툰 연재 계약서」

제23조 (손해배상)

- ① 이 계약을 고의 또는 과실로 위반한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②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 사실은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만화분야 표준계약서 해설서

계약당사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이를 배상해야 한다는 손해배상책임의 원칙을 규정한 조항이다. 이는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따른 기본 원칙을 계약에 명시한 것이다. 계약 위반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양 당사자 중 손해를 입힌 당사자(=귀책당사자)가 책임을 지도록 계약해야 한다(71p 참조).

○ 사례5 저작인격권(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하는 조항

Q. 안녕하세요 웹소설 작가입니다. 투자사로부터 제가 창작한 원작을 웹툰화하는 투자계약을 제안받았습니다. 그런데 해당 계약서에는 제가 저작인격권을 주장하지 않기로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러한 계약을 체결할 경우 저는 성명표시권을 주장할 수 없게 되나요?

[원안]

3. []은 투자계약 제3조의 “웹툰”이 공표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이에 대한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등 일체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기로 한다.

A. 본 사안의 계약내용은 투자사가 귀하로 하여금 성명표시권 등의 저작인격권을 주장하지 않도록 하여 권리 행사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저작인격권은 일신에 전속되는 권리로서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는 것은 물론 상속되지도 않으며, 포기할 수도 없는 권리로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공표권이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4조).

저작자는 저작물 원본, 복제물 또는 저작물 공표매체에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인 성명표시권을 보유하므로, 사업자가 계약상의 저작물을 이용함에 있어서도 성명표시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한편 본 건 계약서의 해당 조항은 저작인격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하는 저작인격권 불행사 특약으로, 이러한 특약은 유효하다고 해석될 수 있으나 귀하에게 불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귀하가 성명표시권을 행사하고자 한다면, 투자사가 저작인격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정한 내용을 삭제하심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수정안]

3. <삭제>

[관련 규정·판례]

저작권법

제12조(성명표시권)

- ① 저작자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에 또는 저작물의 공표 매체에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를 가진다.
- ②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저작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저작자가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한 바에 따라 이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저작인격권의 일신전속성)

- ① 저작인격권은 저작자 일신에 전속한다.
- ② 저작자의 사망 후에 그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저작자가 생존하였다더라면 그 저작인격권의 침해가 될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 행위의 성질 및 정도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참고판례 : 서울고등법원 2021. 10. 21. 선고 2019나2016985 판결

정규시즌 중 피고의 홈구장 전광판을 관리하는 피고로서는 최소한 정규시즌의 홈경기에서는 선수입장 시각 선수별로 정해진 응원가를 부를 것으로 예정되어 있어 해당 상황에 맞게 전광판에 저작자의 성명을 표시한다거나, 야구경기가 종료되고 난 후 해당 경기에 사용되었던 응원가 저작자의 성명을 전광판에 한꺼번에 열거하는 방식으로 표시하는 등 얼마든지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인다. 아울러 피고는 자신이 운영하는 홈페이지 또는 유튜브 채널에서 응원가 영상을 제공할 때 해당 응원가 저작자의 성명을 표시할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작곡가들에게 성명표시권 침해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참고 : 웹소설 분야 표준계약서 내 「웹소설 출판권 설정 계약서」

제10조 (저작인격권의 존중)

- ① 출판권자는 대상 저작물에 관한 저작자의 저작인격권을 적극적으로 존중하여야 한다.
- ② 출판권자는 저작자가 사용하는 실명 또는 필명 등을 저작자가 요구하는 바에 따라 올바르게 사용하여야 한다.
- ③ 출판권자는 대상 저작물의 제호, 내용 또는 형식을 바꾸고자 할 때는 저작자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하고, 저작물의 본질적 내용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출판권자는 대상 저작물과 관련하여 저작자 및 저작권자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 저작권자가 저작자가 아닌 경우 출판권자가 본조의 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저작권자는 저작자의 의사표시나 동의 여부를 적시에 확인하여 출판권자에게 전달하여야 하고, 이를 보증한다.

사례6 부당한 이의제기 금지 조항

Q. 안녕하세요 웹툰 작가입니다. 출판사로부터 2차적저작물 작성 이용허락 계약서를 제안받았는데요. 2차적저작물 제작하는 과정에서 원저작물의 변형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면 안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원저작물의 본질적인 내용을 변형하는 경우에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게 되나요?

[원안]

제6조(저작권자의 권리와 의무)

1. '저작권자'는 '이용권자'가 '원 저작물'을 토대로 '본건 2차적저작물'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원 저작물'의 변형이 일어날 수 있음을 인정하고, 그러한 변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본건 2차적저작물' 제작 과정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A. 본 계약내용은 2차적저작물 제작에 관하여 원저작물의 변경 관련 문제제기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작인격권은 일신에 전속되는 권리로서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는 것은 물론 상속되지도 않으며, 포기할 수도 없는 권리로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공표권이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4조). 이 중 동일성유지권은 저작자가 그의 저작물의 내용·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가진다는 의미의 권리입니다.

저작권법 제13조 제2항 단서에서 ‘본질적인 내용의 변경’에 대해서는 제한 없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취지를 고려하면, 2차적저작물 제작 과정에서도 저작자의 동의 없이 본질적인 내용이 변경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한편 본 건 계약서의 해당 조항은 저작인격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하는 저작인격권 불행사 특약으로, 이러한 특약은 유효하다고 해석될 수 있으나 귀하에게 불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추후 작품의 변형에 대한 의견을 제기할 수 있도록 여지를 남겨두기 위해서는, 계약서상 이의제기를 금지하는 문구를 삭제하고 원저작물의 본질적인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를 얻도록 수정하심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정안]

제6조(저작권자의 권리와 의무)

1. ‘저작권자’는 ‘이용권자’가 ‘원 저작물’을 토대로 ‘본건 2차적저작물’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원 저작물’의 변형이 일어날 수 있음을 인정한다. 단, ‘본건 2차적저작물’ 제작 과정에서 ‘원 저작물’의 본질적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이용권자’는 **사전에 ‘저작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관련 규정·판례]**저작권법****제13조(동일성유지권)**

- ①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의 내용·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가진다.
- ② 저작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에 대하여는 이의(異議)할 수 없다. 다만, 본질적인 내용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 학교교육 목적을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의 표현의 변경
 2. 건축물의 증축·개축 그 밖의 변형
 3. 특정한 컴퓨터 외에는 이용할 수 없는 프로그램을 다른 컴퓨터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의 변경
 4. 프로그램을 특정한 컴퓨터에 보다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의 변경
 5. 그 밖에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의 변경

참고판례 : 서울동부지방법원 2004. 9. 30. 선고 2004가합4292 판결

이 사건 조형물의 저작자인 원고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인격권으로서 저작물의 내용과 형식 등의 동일성을 유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할 것이고 (저작권법 제13조 제1항), 여기서 저작물의 내용이란 저작물에 표현된 사상과 감정을 의미하며, 저작물의 형식이란 그 구성과 표현방법 등을 의미하는 것인바, 피고가 별지 도면 2 원내 '가'부분의 공익광고물 부분을 철거하고 별지도면 3의 원내 '나'부분과 같이 이 사건 조형물에 전광판을 부착하면서 원반형의 스테인리스 구조물을 설치한 것은 원고에 의하여 이 사건 조형물에 반영된 사상과 감정을 훼손하고 이 사건 조형물의 구성 및 표현방법을 변경하는 것으로서 원고의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참고판례 : 대법원 1992. 12. 24. 선고 92다31309 판결

저작물인 도안의 제작자가 도안의 수정의무를 이행을 거절함으로써 주문자측의 도안 변경에 이의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묵시적 동의를 하였다면 주문자측이 도안을 일부 변경한 다음 변경된 도안을 기업목적에 따라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저작권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된 동일성유지권의 침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참고 : 만화분야 표준계약서 내 「2차적저작물 이용 허락 계약서」

제11조 (저작인격권의 존중)

- ① '사업자'는 대상 저작물에 관한 '저작권자'의 저작인격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 ② '사업자'는 대상 저작물과 관련하여 '저작권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방법으로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해서는 아니 된다.



사례7

급부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변경할 수 있게 한 조항



Q. 안녕하세요 웹툰 작가입니다. 플랫폼社로부터 콘텐츠 제공 제휴계약을 제안받았는데요, 플랫폼社가 저의 웹툰을 플랫폼 이용자에게 유료 또는 무료로 제공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웹툰이 무료로 제공되는 것은 원하지 않는데요, 이대로 계약을 체결해도 될까요?

[원안]

제4조(서비스의 제공방식)

1. “갑”은 “을”에게 “콘텐츠”를 제공하고 “을”은 “이용자”에게 “콘텐츠”를 유료 또는 무료로 제공한다.



A. 본 사안의 계약 내용은 저작물의 유·무료 제공 여부를 플랫폼社가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작물의 가격, 홍보용 무료 제공 범위 등은 작가의 수입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계약 내용입니다. 저작물을 무료로 제공하는 분량이나 빈도가 늘어날수록 작가에게 돌아가는 수익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작품 홍보를 위하여 일정 비율의 콘텐츠를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가 이례적인 것은

아니나, 본 사안처럼 아무런 제한 없이 플랫폼사가 일방적으로 '유료 또는 무료로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은 귀하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작물의 유·무료 여부는 사전에 당사자 간 합의 또는 협의를 통해 진행 하심이 바람직합니다.

[수정안]

제4조(서비스의 제공방식)

1. “갑”은 “을”에게 “콘텐츠”를 제공하고 “을”은 “이용자”에게 “콘텐츠”를 유료 또는 무료로 제공하되, 사전에 갑과 합의하여 진행한다.



참고 : 만화분야 표준계약서 내 「웹툰 연재 계약서」

제5조 (서비스 제공업자의 권리 행사)

- ① ‘서비스 제공업자’는 이 권리 허락 기간 중 대상 저작물의 온라인 서비스 연재에 대하여 이 계약에서 정한 내용의 권리를 보유한다. 다만 ‘서비스 제공업자’가 대상 저작물을 연재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는 아래 기재한 도메인 주소로 한정한다.
(예시) 가. www.웹툰연재사이트.com
- ② ‘서비스 제공업자’가 제1항에 기재한 인터넷 사이트 외에 다른 인터넷 사이트 (제3자가 운영하는 사이트를 포함한다)를 연재 사이트에 포함시키거나 제외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자’의 사전 동의를 구해야 한다.
- ③ ‘서비스 제공업자’는 대상 저작물의 가격 정책, 서비스 방향 등을 ‘저작권자’와 협의 하여 결정한다.
- ④ ‘서비스 제공업자’는 대상 저작물의 홍보, 마케팅 및 프로모션 방법 등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서비스 제공업자’는 관련 사항을 ‘저작권자’에게 알려주어야 하며, ‘저작권자’가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 성실히 협의하여야 한다.

만화분야 표준계약서 해설서

본조 제4항에서는 프로모션 등에서 저작권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가령 무료 화수의 확대)가 있으므로 저작권자가 이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정하였다. 또한 프로모션 방법 등에 대해서 저작권자가 알지 못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에

대해 저작권자에게 알려줄 의무도 정하였다. 저작권자가 의견을 제시할 경우 서비스 제공업자는 성실히 협의할 의무를 진다(60P 참조).

참조 : 어휘구별

일반적으로 비슷한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나 문장도 계약서에서는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가질 때가 있다.

협 의	합 의
통상적으로 'A는 B와 협의하여 C를 해야 한다.' 또는 'A는 C를 할 때 B와 협의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다면, 의사표시가 명확히 합치되지 않더라도, C를 위해 협의 절차를 거치면 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협의가 안 될 경우에 최종 선택을 누가 할 것인지까지 기재한다면 명확하다.	통상적으로 'A는 B와 합의하여 C를 해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다면, 이는 A와 B 사이에 의사표시의 합치(일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A와 B의 의사표시가 일치하지 않는다면 C를 할 수 없다고 해석된다.

* 협의와 합의 중에 어느 하나가 반드시 나쁘다고 할 수는 없다. 계약의 내용에 따라 '합의'로 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고, '협의'로 하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다(21P 참조).



사례8 부당한 분쟁해결 및 재판관할 조항

Q. 안녕하세요 웹소설 작가입니다. 플랫폼社로부터 콘텐츠 제공 제휴 계약을 제안 받았는데요, 계약서 상 분쟁이 발생할 시 반드시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과정을 거쳐야 하며, 1심법원은 플랫폼社의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플랫폼社 소재지가 거주지와 멀리 떨어져 있어 저에게 불리할 것 같은데요, 재판 관할 부분을 수정요청 해도 될까요?

[원안]

제15조(분쟁조정 및 관할법원)

-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법원에의 제소에 앞서 '공급자'와 '플랫폼社'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이 성립되지 않고, 어느 일방이 제소할 경우 제1심 법원은 '플랫폼社'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A. 본 사안의 계약 내용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제소 전에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 과정을 필수적으로 거치도록 하고, 제소 시의 제1심 법원을 플랫폼社 소재지의 관할 법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분쟁조정제도란 저작권 분쟁 당사자의 조정 신청이 있는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조정부가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해주는 제도로서, 전문성·신속성·편의성·경제성·비공개성의 특징을 갖는 전문적인 서비스로 다양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처럼 조정 절차를 의무로 거치도록 정한 계약서 조항은, 조정 실익이 없는 경우에도 절차를 강제하여 재판청구권 등 법률에 따른 권리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업자 소재지 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정하여 해당 지역 외에 거주하는 귀하의 소 제기 및 응소에 큰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제소에 앞서 당사자 선택에 따라 조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제1심 관할법원을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으로 기재하심이 바람직합니다.

[수정안]

제15조(분쟁조정 및 관할법원)

2.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법원에의 제소에 앞서 '공급자'와 '플랫폼사'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을 받을 수 있다.
3. 이 계약과 관련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한다.

[관련 규정·판례]

헌법

제27조

- ①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② 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민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는 중대한 군사상 기밀·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군용물에 관한 죄중 법률이 정한 경우와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
- ③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④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 ⑤ 형사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

약관법

제14조(소송 제기의 금지 등)

소송 제기 등과 관련된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소송 제기 금지 조항 또는 재판관할의 합의 조항



[참고] 웹소설분야 표준계약서 내 「웹소설 연재 계약서」

제27조 (분쟁의 해결)

- ① 이 계약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저작권자와 콘텐츠사업자는 제소에 앞서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을 받을 수 있다.
- ② 저작권자와 콘텐츠사업자 사이에 제기되는 소송의 제1심 법원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사례9 부당한 계약기간 연장 조항

Q. 안녕하세요 웹소설 작가입니다. 출판사로부터 전자출판 유료연재 및 전자책 계약서를 제안받았는데요. 출판사와의 계약기간이 계약일로부터 최초 서비스 일까지와 마지막 편 서비스 일로부터 3년까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웹툰이 제작될 경우 완결 시까지 계약기간을 연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계약기간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 걱정이 됩니다. 이렇게 계약해도 될까요?

[원안]

제3조(전송권의 존속 기간)

- ① 본 계약의 존속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최초 서비스 일까지와 마지막 편 서비스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단, 웹툰 제작 시 웹툰 시리즈를 완결할 때까지 존속 기간을 연장한다. 웹툰의 완결이 더 빠를 경우 소설 완결일을 기준으로 한다.

* 갑: 저작권자, 을: 출판권자

A. 본 계약은 출판사가 웹소설의 2차적저작물인 웹툰을 제작할 경우 웹툰 시리즈를 완결할 때까지 웹소설 전송권의 존속기간이 연장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원저작물인 웹소설의 이용과 웹툰(2차적저작물) 제작은 각기 분리하여 별도의 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나의 계약으로 묶어 존속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계약 종료시기를 예측하기 어렵게할 뿐더러, 귀하가 원저작물인 웹소설을 통해 창출할 수 있는 다양한 이익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에 웹툰 계약에 따른 계약 연장 문구를 삭제하는 방향으로 수정하심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수정안]

제3조(전송권의 존속 기간)

- ① 본 계약의 존속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최초 서비스 일까지와 마지막 편 서비스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후단삭제>

사례10 저작재산권 양도 시 배타적발행권자 등의 동의를 얻도록 한 조항

Q. 안녕하세요 웹툰 작가입니다. 출판사로부터 배타적발행권 설정 계약서를 제안 받았는데요. 저작물의 저작재산권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 시 배타적 발행권자의 동의를 얻도록 정한 조항이 있습니다.

이는 저작권자인 저의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생각되는데요, 이렇게 계약을 체결해야만 하나요?

[원안]

제22조(저작재산권 양도 등)

1. '갑'은 위 저작물의 복제권, 배포권, 공중송신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을'의 문서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

* 갑: 저작재산권자

A. 본 계약은 저작권자인 귀하가 저작재산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할 경우 배타적발행권자의 사전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저작재산권은 준물권적 성격을 지닌 권리로서, 권리의 전부나 일부를 타인에게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이를 제한하는 것은 재산권 처분행위의 과도한 제한으로 보입니다. 다만 저작권자가 저작재산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여 배타적발행권자 등의 권리를 침해할 경우, 계약위반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이에 귀하가 저작재산권을 양도할 시 배타적발행권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전제하에 사전 통보를 하도록 수정하심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수정안]

제22조(저작재산권 양도 등)

1. '갑'은 위 저작물의 복제권, 배포권 및 전송권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이를 '을'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 '을'의 배타적발행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관련 규정·판례]

저작권법

제45조(저작권재산권의 양도)

- ① 저작권재산권은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다.
- ② 저작권재산권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제22조에 따른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는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프로그램의 경우 특약이 없으면 2차적저작물작성권도 함께 양도된 것으로 추정한다



[참고] 만화분야 표준계약서 내 「출판권 설정 계약서」

제21조 (저작권재산권, 출판권의 양도 등)

- ① '저작권자'는 대상 저작물의 복제권 및 배포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출판권자'에게 사전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② '출판권자'는 대상 저작물의 출판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저작권자'로부터 사전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만화분야 표준계약서 해설서

현행 저작권법 제45조 제1항에서는 저작권재산권의 양도에 관하여 “저작권재산권은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다”고 규정한 반면, 출판권에 준용되는 저작권법 제62조 제1항에서는 “배타적발행권자는 저작권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배타적발행권을 양도하거나 또는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저작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출판권자 외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것은 별문제가 되지 않지만, 출판권자가 저작권자로부터 획득한 권리(출판권)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제1항에서는 상도의를 존중하여, 만일 저작권자가 출판권을 설정해 준 저작물의 복제권 및 배포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질권을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이를 출판권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였다(34P 참조).

사례11 계약종료 후에도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게 하거나 계약의 효력을 존속시키는 조항

Q. 안녕하세요 웹소설 작가입니다. 출판사로부터 출판권 설정 및 2차적저작물 계약서를 제안받았는데요. 계약을 종료한 이후에도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계약을 종료한 이후에는 출판사가 더 이상 저작물을 이용할 수 없도록 하고 싶은데 이렇게 수정 요청 해도 될까요?

[원안]

제4조(2차적저작물작성권의 설정 및 그 범위)

⑤ 본 계약 기간 및 계약 종료 이후에도 제공자는 발행처의 본 2차적저작물의 이용 행위를 모두 허락한다. 다만, 발행처는 본 계약 종료 이후에는 본 2차적저작물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새로운 저작물을 작성할 수 없다.

제16조(계약 종료 후 저작물의 이용)

발행처는 본 계약 기간이 종료한 이후에도 본 2차적저작물의 권리자로서 해당 저작물을 그대로 이용할 수 있고, 제공자는 발행처의 이용을 허락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발행처는 제공자에게 그 이용에 따른 수익에 관하여 본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배분하여야 한다.

* 제공자: 원저작물 저작권자

A. 본 계약은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부여받은 출판사가 계약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해당 2차적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체결로 인한 권리는 저작권자인 귀하에게 환원됩니다. 본 계약은 출판사에게 기간의 제한 없이 2차적저작물 이용 권리가 존재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별도로 계약기간을 정한 취지를 무색하게 할 뿐만 아니라 저작권자의 진정한 의사에도 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차적저작물작성권 이용허락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그 이후의 이용 행위에 대해서는 이용범위의 적절성과 대가 등에 관련하여 별도로 협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귀하는 계약기간 종료 후 2차적저작물 이용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문구를 삭제하거나 별도로 합의하도록 정하심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정안]

제4조 (2차적저작물작성권의 설정 및 그 범위)

⑤ <삭제>

제16조(계약 종료 후 저작물의 이용)

발행처는 본 계약 기간이 종료한 이후 **제공자의 별도 합의가 있는 경우 그 합의에 따라 본 2차적저작물의 권리자로서 해당 저작물을 그대로 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처가 제공자에게 배분하여야 하는 수익 및 기타 이용 조건은 별도로 정한다.

[관련 규정·판례]

저작권법

제46조(저작물의 이용허락)

- ①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락을 받은 자는 허락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락에 의하여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할 수 없다.



Q 사례12 계약상의 권리를 제3자에게 이용허락할 수 있게 한 조항

Q. 안녕하세요 웹소설 작가입니다. 출판사로부터 배타적발행권 설정계약을 제안 받았습니다. 계약서에는 출판사가 계약상 부여받은 권리를 저의 허락 없이 제3자에게 이용허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출판사 외에 다른 제3자가 이용하는 경우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해당 부분을 삭제요청 해도 될까요?

[원안]

제6조(제삼자에게의 이용허락 등)

- ① ‘을’은 본 저작물을 본 계약에 따른 전자출판의 방식으로 이용하도록 제삼자에게 재허락할 수 있다. ‘을’의 배타적발행권이 존속기간의 만료 기타 그 밖의 사유로 소멸된 경우에는 위 제삼자의 권리도 소멸한다.

* 갑: 저작권자

A. 본 계약은 출판사가 계약상 부여 받은 권리를 귀하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허락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저작권법에서는 배타적발행권이나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권리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저작권법 제46조 및 제62조). 본 계약과 같이 계약의 성질상 당사자가 누구인지가 중요한 인적 신뢰관계를 전제로 하는 경우, 제3자에 대한 재이용허락도 별도 동의를 얻도록 함이 저작권자의 진정한 의사에 부합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본 조항을 삭제하시거나, 제3자에 대한 재이용허락은 귀하의 별도 동의를 얻도록 기재하심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수정안]

제6조(제3자에게의 이용허락 등)

- ① ‘을’은 대상 저작물을 발행등으로 이용하는 과정에서 ‘갑’의 동의를 얻어 제3자에게 이용허락할 수 있다. ‘을’의 배타적발행권이 존속기간의 만료 기타 그 밖의 사유로 소멸된 경우에는 위 제3자의 권리도 소멸한다.

[관련 규정·판례]

저작권법

제46조(저작물의 이용허락)

- ①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락을 받은 자는 허락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락에 의하여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할 수 없다.

제62조(배타적발행권의 양도·제한 등)

- ① 배타적발행권자는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배타적발행권을 양도하거나 또는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 ② 배타적발행권의 목적으로 되어 있는 저작물의 복제 등에 관하여는 제23조, 제24조, 제25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 제30조부터 제33조까지, 제35조제2항 및 제3항, 제35조의2부터 제35조의5까지, 제36조 및 제37조를 준용한다.

사례13 부당한 대가 지급 조항

Q. 안녕하세요 웹툰 작가입니다. 제작사로부터 웹툰 샘플제작 계약서를 제안받았습니다. 제작사와 A작품에 대한 샘플작업을 진행하는 계약인데, A작품이 아닌 다른 작품에 대한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도 샘플작업에 대한 대가를 선금금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A작품에 대한 샘플작업의 대가를 A작품이 아닌 다른 작품에서 선금금으로 전환하는 것이 이상해 보이는데요. 이런 부분을 삭제요청 해도 될까요?

[원안]

제4조 대가의 지급

- (3) “제작사”와 “작가”는 “샘플작업” 이후 “대상작품” 또는 “제작사”와 “작가”가 합의한 별도 작품으로 10회 이상의 장편 제작 계약(이하 “연재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대금”은 “연재계약”의 원고제공에 따라 “작가”에게 선급하는 금액(이하 “최소보장금”)으로 전환한다.

A. 본 계약은 A작품의 샘플작업에 대한 계약대금을, 다른 작품으로 연재계약을 체결할 경우의 선금금으로 전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계약의 핵심인 대가 지급에 관한 개별 합의 없이, A작품 샘플작업의 대금을 다른 작품 연재 계약의 선금금으로 전환하는 것은 작가의 진정한 의사에 반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작가가 원하지 않는 별개 작품에 대한 계약 체결을 강요받는 부담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에 제작사가 귀하의 사전 합의를 거친 경우에만, 대가 지급 방식을 전환할 수 있도록 계약서를 수정하심이 바람직합니다.

[수정안]

제4조(대가의 지급)

- ③ “제작사”와 “작가”는 “샘플작업” 이후 “대상작품” 또는 “제작사”와 “작가”가 합의한 별도 작품으로 10회 이상의 장편 제작 계약(이하 “연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작사”와 “작가”는 상호 사전 합의하여 “계약대금”을 “연재계약”의 원고 제공에 따라 “작가”에게 선급하는 금액(이하 “선급금”)으로 전환할 수 있다.

사례14 부당한 계약해지 조항

Q. 안녕하세요 웹툰 작가입니다. 출판사로부터 전자출판용 배타적발행권 설정 계약을 제안받았는데요. 출판사가 전자출판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할 경우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불분명한 해지사유에 대해서 삭제요청을 해도 될까요?

[원안]

제16조 (발행책임)

‘을’은 ‘갑’으로부터 제11조의 완전원고를 인도받은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저작물의 전자출판을 개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갑’과 협의하여 그 개시일을 변경할 수 있다. 또한 ‘을’이 저작물이 전자출판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할 경우, ‘을’은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갑: 저작권자

A. 계약의 해지·해제는 당사자의 이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사유가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합니다. 채무불이행에 의한 경우에도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한 후, 기간 내에 이행제공이 없는 등의 요건이 필요합니다.

본 사안과 같이 ‘전자출판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 등의 모호한 사유로, 시정기간이나 별다른 소명기회도 부여하지 않은 채 출판사가 임의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작가는 부당하게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불명확한 해지사유는 결국 계약해석의 문제로 귀착되는바, 당사자 간 불필요한 분쟁이 야기될 수 있습니다.

이에 귀하는 일방의 판단이 아닌 객관적인 기준에 따르도록 계약해지 사유를 구체화하셔야 하며, 소명기회를 부여한 이후 또는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수정하심이 바람직합니다.

[수정안]

제16조(발행책임)

- ① ‘을’은 ‘갑’으로부터 제11조의 완전원고를 인도받은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저작물의 전자출판을 개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갑’과 협의하여 그 개시일을 변경할 수 있다.
- ② ‘갑’의 ‘저작물’에 대해 제3자의 저작권 등의 권리 주장, 대상 ‘저작물’로 인한 권리 침해 주장, 법령 위반 주장, 규제기관으로부터의 위법사항 소명 요청 등이 있는 경우, ‘갑’과 ‘을’은 상호 합의를 통해 본 계약을 수정 또는 해지할 수 있다.

[관련 규정·판례]

민법**제543조(해지, 해제권)**

- ① 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일방이나 쌍방이 해지 또는 해제의 권리가 있는 때에는 그 해지 또는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 ② 전항의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한다.

제544조(이행지체와 해제)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제550조(해지의 효과)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계약은 장래에 대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

제551조(해지, 해제와 손해배상)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참고판례 :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다78586 판결

지입차주와 지입회사 사이의 구체적인 법률관계는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 사이에 체결된 지입계약에 의하여 확정되는 것이므로 지입차주와 지입회사는 지입계약 내용에 따라 지입계약의 해지사유에 관하여 임의로 정할 수 있으며, 그와 같이 정하여진 지입계약의 해지사유가 명백하지 아니할 때에는 의사해석의 문제로 귀착되는 것으로서, 이러한 당사자의 의사를 해석할 때에는 지입계약이 체결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계약을 통해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참고] 만화분야 표준계약서 내 「전자책 발행 계약서」

제22조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

- ① ‘저작권자’ 또는 ‘전자책 발행업자’가 이 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그 상대방은 _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제대로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상대방은 대상 저작물의 발행이 시작되기 이전까지는 이 계약을 해지·해제할 수 있으며, 발행이 시작된 후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민법 등 관계 법령이 있는 경우에는 법정 해지·해제, 합의 해지·해제할 수 있다.

- ③ ‘저작권자’ 또는 ‘전자책 발행업자’는 상대방이 더 이상 대상 저작물을 이 계약에 따라 발행할 의사가 없음을 서면으로 통지하거나, 상대방이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이 계약에 따른 발행을 계속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이 계약의 해지를 통고할 수 있다.
 1. 회생, 파산, 회사정리, 해산 또는 청산절차가 개시된 경우
 2. 발행한 어음, 수표가 지급 거절되는 경우
 3. 제3자에게 인수 또는 합병되거나 영업을 위하여 필요한 주요한 재산이 제3자에게 양도되는 경우
 4. 영업을 위하여 필요한 주요 재산에 대하여 법원의 보전처분 또는 강제집행이 개시되고 60일 이내에 해소되지 않는 경우

5. 고의적인 30일 이상의 계약 불이행 및 연락 두절 등으로 발행을 지속할 수 없는 사정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6. 작품 표절, 사회적 물의로 인한 계약 상대방의 손해, 범죄 등이 법원의 판결 등으로 객관적으로 입증된 경우

만화분야 표준계약서 해설서

전자책 발행 이후에 해제할 경우 기존에 서로 주고받은 채무이행을 돌려주고 원상회복을 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인해 여러 후속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본조 제2항**에서는 대상 저작물 발행 후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을 원칙으로 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민법 등 관계 법령이 정한 해지·해제 사유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므로 관련 규정이 있을 경우 법정 해지·해제를 할 수 있다. 합의 하에 해지·해제하는 것도 물론 가능하다.

본조 제3항 제5호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려면 발행을 지속할 수 없는 사정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여야 한다. 해지를 통고할 때는 서면으로 통지하며, 증빙자료를 미리 확보하고 통지할 때 활용하면 분쟁이 확대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본조 제3항 제6호는 작품 표절 등 논란이 불거진 것만으로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고, 법원 판결 등으로 객관적으로 입증된 경우에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규정이다(법원 판결은 예시임). 마찬가지로 해지를 통고할 때는 서면으로 통지한다(52P 참조).

해 제	해 지
<p>계약을 체결하였던 시기로 돌아가 계약의 효력을 없애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경우 원상회복(서로 계약에 의해 가지게 된 이익을 돌려주는 것)을 하도록 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해제에 대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p>	<p>계약의 해지 시점으로부터 장래(미래)를 향해 계약의 효력을 없애는 것을 의미한다. 원상회복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해지 시점 이전의 계약은 유효하므로 아직 이행하지 않은 채무(의무)가 있다면 그에 대해 이행하여야 한다. 해지에 대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21P 참조).</p>

○ 사례15 의사표시 간주 조항

Q. 안녕하세요 웹소설 작가입니다. 플랫폼社로부터 작품 등록 계약을 제안받았는데요. 플랫폼社가 계약기간 중 약관을 변경하는 경우 이를 알지 못한 책임이 저에게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웹소설 작업 중에 수시로 플랫폼社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약관을 확인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이렇게 계약 체결할 의무가 있나요?

[원안]

제2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 ⑤ 본 약관에 동의하는 것은 플랫폼社가 운영하는 본 서비스의 홈페이지를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약관의 변경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함을 의미합니다. 변경된 약관에 대한 정보를 알지 못하여 발생하는 작가의 피해에 대하여 플랫폼社는 책임이 없습니다.

A. 본 계약내용은 귀하가 플랫폼社의 홈페이지를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약관변경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한다고 간주하고, 변경된 약관을 알지 못하여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부담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귀하가 현실적으로 홈페이지에 수시로 접속해서, 약관 변경내용 확인하고 이를 숙지하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또한 약관법 제12조 제1호에 따르면 약관의 중요한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사업자가 개별 통지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작가에게 변경사항을 확인할 의무를 부과하는바 귀하가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사안에서 해당 조항을 삭제하심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수정안]

제2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 ⑤ <삭제>

[관련 규정·판례]**약관법****제12조(의사표시의 의제)**

의사표시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일정한 작위(作爲) 또는 부작위(不作爲)가 있을 경우 고객의 의사표시가 표명되거나 표명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조항. 다만, 고객에게 상당한 기한 내에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면 의사표시가 표명되거나 표명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확하게 따로 고지한 경우이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그러한 고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례16 정산 자료 등 중요 정보를 불성실하게 제공할 우려가 있는 조항

Q. 안녕하세요 웹툰 작가입니다. 에이전시로부터 작가 매니지먼트 계약서를 제안받았는데요. 계약기간 중 매니지먼트 활동에 대한 정보나 자료를 확인하기 위하여는 에이전시의 동의 하에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요청할 때 자료를 확인할 수 있도록 계약을 수정요청 해도 되나요?

[원안]**제8조(저작권자의 권한)**

1. “갑”은 “을”의 매니지먼트 활동에 대해 언제든지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을”의 동의하에 관련된 자료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 갑: 저작권자

A. 본 계약에서는 귀하가 에이전시의 매니지먼트 활동에 대한 자료나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에이전시의 동의가 필요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상 위임에 해당하는 매니지먼트 활동에 대해, 위임인인 귀하의 청구가 있으면 수임인에게 위임사무 보고의무가 지워집니다(민법 제683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계약은 수임인인 에이전시가 귀하에 대한 자료제공 여부를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하급심 판례에서는 연예인 전속계약과 같이, 당사자 사이에 신뢰관계가 중요한 계속적 계약에서는 정산자료 제공을 중요한 의무로 보아 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 사유로 판단하기도 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0. 1. 31. 선고 2019나2034976 판결).

한편 본 사안에서도 귀하에게 정산자료나 정보제공은 대가지급과 관련된 중요한 사안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매니지먼트 활동 관련 자료나 정보를 요청하면 에이전시가 따르도록 하되 요청자료나 정보의 제공이 불가능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면 별도로 합의하도록 수정하심이 바람직합니다.

[수정안]

제8조(저작권자의 권한)

1. “갑”은 “을”의 매니지먼트 활동에 대해 언제든지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을”에게 관련된 자료나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갑”이 “을”에게 요청한 자료나 정보의 제공이 불가능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합의에 따르기로 한다.

[관련 규정·판례]

민법

제683조(수임인의 보고의무)

수임인은 위임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위임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고 위임이 종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전말을 보고하여야 한다.

[참고판례 : 서울고등법원 2020. 1. 31. 선고 2019나2034976 판결]

원고와 피고 사이의 투명하면서도 성실한 수익 분배는 위와 같은 신뢰관계의 존속을 위한 필수적인 전제조건이므로, 피고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수익 분배가 적정하지 여부의 판단을 위하여 이 사건 전속계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피고의 정산자료 제공 의무는 피고의 정산의무와 동일한 수준의 중요한 의무이고, 정산의 결과 피고가 원고에게 실제 지급할 금액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피고는 원고에게 그 정산자료를 제공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참고] 만화분야 표준계약서 내 「만화 저작물 대리중개 계약서」

제8조 (정산 등)

- ① ‘대리중개인’이 ‘저작권자’에게 정산금을 지급할 때 ‘대리중개인’은 ‘저작권자’에게 이 계약의 대리중개에 따른 사용료 내역, 수수료 계산 내역, 정산금 산정내역 등을 포함한 정산자료 일체를 제공하여야 한다. 해당 정산 주기에 ‘저작권자’에게 지급할 대가가 없는 경우에도 같다.
- ② ‘대리중개인’은 사용료 내역, 수수료 계산 내역, 정산금 산정내역 등과 관련된 이 계약에 따른 장부 및 자료를 별도로 유지, 보관하고, 이를 이 계약 종료 후 5년 후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 ③ ‘저작권자’가 제2항의 기간 동안 장부 또는 자료의 열람 또는 제공을 요청할 경우, ‘대리중개인’은 지체 없이 이에 응해야 한다.

만화분야 표준계약서 해설서

본조 제1항은 저작권자가 대리중개 과정에서 발생한 수익과 비용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의 규정이다. 특히 “해당 정산 주기에 지급할 대가가 없는 경우에도 같다”는 문구는 정산금 지급이 없는 경우에도 대리중개인이 정산 자료를 제공하여 저작권자가 대리중개 활동의 현황과 관련 수익 흐름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91P 참조).

사례17 작품 검수 기간이 부당하게 길어질 우려가 있는 조항

Q. 안녕하세요 웹소설 번역작가입니다. 출판사로부터 번역계약을 제안받았는데요. 검수 관련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 2주 이내에 확인이 곤란한 사항은 2주 후라도 대가 지급 없이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계약을 체결해야 하나요?

[원안]

제4조(번역제작자의 의무)

- ② 번역제작자는 출판사로부터 '대상 콘텐츠'의 '번역' 및 '제작'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대상 콘텐츠'의 한국어 번역본(지정된 양식의 워드 및 엑셀파일)과 '대상 콘텐츠'의 콘텐츠 파일(PSD, PNG, JPG 등)을 출판사에게 제출해야 하고, 출판사는 이를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검수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며, 이상 발견 시 번역제작자에게 그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통상적인 방법으로 2주 이내 확인이 곤란한 사항은 2주 후라도 대가지급 없이 그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A. 본 계약은 '통상적인 방법으로 2주 이내 확인이 곤란한 사항'이라는 추상적 사유를 근거로 번역 작품의 검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작품 검수가 합리적인 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출판사의 편의에 따라 임의로 검수 기간이 정해질 우려가 있습니다. 더구나 일반적으로 검수가 완료된 이후에 번역료가 지급된다는 점에서, 불명확한 검수기간은 번역작가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할 뿐 아니라 생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항은 통상적으로 계약목적물에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 포함하는 것이나, 번역 작품 검수와 관련하여 그러한 경우를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번역작가의 사전 동의를 얻은 기간 내에서만 추가 수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심이 바람직합니다.

[수정안]

제4조(번역제작자의 의무)

- ② 번역제작자는 출판사로부터 '대상 콘텐츠'의 '번역' 및 '제작'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대상 콘텐츠'의 한국어 번역본(지정된 양식의 워드 및 엑셀파일)과 '대상 콘텐츠'의 콘텐츠 파일(PSD, PNG, JPG 등)을 출판사에게 제출해야 하고, 출판사는 이를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검수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며, 이상 발견 시 번역제작자에게 그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2주 이내 확인할 수 없는 하자가 있는 경우 번역제작자의 사전동의를 얻은 기간 내에서 2주 후라도 그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참고] 만화분야 표준계약서 내 「기획 만화 계약서」

제7조 (작품의 검수)

- ① '발주자'는 대상 저작물의 창작 과정에서 '저작자'에게 대상 저작물의 내용이나 작화를 수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수정요구 사항은 계약 체결 당시의 기획 의도나 의뢰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야 하고, 합리적인 수정 기간이 부여되어야 한다.
- ② '발주자'는 수정을 요구할 때 수정요구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서면 형식으로 '저작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③ '발주자'의 수정 요구는 시나리오, 콘티, 스케치(선화 이전), 선화, 채색 등 창작 단계를 막론하고 하나의 부분에 대하여 ___회 이내로 한다.
- ④ '저작자'는 제3항의 각 단계마다 '발주자'에게 그 시점까지 '저작자'가 창작한 부분의 검수를 요청할 수 있다. '발주자'는 합리적인 기간 내에 검수 회신을 해야 한다. '발주자'는 합격 검수를 마친 내용에 대해서는 재차 수정을 요구할 수 없다.
- ⑤ 본조 제1항 내지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저작자'와 '발주자'는 추가로 상당한 대가의 지급을 하고 대상 저작물을 수정하도록 합의할 수 있다.

제3항 관련, 통상의 경우 하나의 부분에 대한 수정 요구는 3회 이내로 한다.

만화분야 표준계약서 해설서

본조 제1항에서 규정하였듯, 발주자는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만화의 기획을 의뢰하는 것이므로 수정 요구를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러나 최초 기획 의도나 의뢰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에 그 책임을 저작자에게 지워선 안 되고, 무리하게 짧은 기간 내에 수정할 것을 요구하는 것도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단서 조항을 두었다.

본조 제2항에서는 수정 내용을 명확히 하고 추후 분쟁이 발생할 경우 증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서면 형식으로 정리해 교부하도록 하였다.

본조 제3항에서 수정 요구 횟수를 제한한 것은 무한정 수정을 요구하는 것이 저작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동일한 부분에 대해 수정 요구를 일정 횟수로 제한하여 창작 과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당사자 간의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하였다.

검수 완료 이후 저작자가 다음 단계 작업을 진행한 경우 이전 단계에서 수정이 필요했던 사항을 다시 수정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 이에 본조 제4항에서는 합격 검수를 마친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 요구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다(112P 참조).

○ 사례18 과도한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

Q. 안녕하세요 웹소설 작가입니다. 플랫폼社로부터 콘텐츠 제공 계약을 제안받았는데요. 계약서 상에 비밀유지 관련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비밀유지 의무가 있는 경우 계약 체결 후 법률상담이 제한될까봐 걱정되는데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원안]

제5조(비밀 유지 및 보안 의무)

1. 파트너와 플랫폼社는 본 합의서의 내용 및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취득하였거나 향후 취득할 상대방의 개인정보, 사업상 정보, 노하우 또는 영업상 비밀 등 일체의 정보를 누구에게도 누설하여서는 아니되고, 그 종업원, 대리인, 상담역 등으로 하여금 누설하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여야 한다.

A. 본 계약내용은 비밀유지의 대상인 정보를 ‘일체의 정보’, ‘본 계약의 내용’ 등으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영업비밀 관련 법령의 보호범위와 관계없이 일체의 정보를 비밀유지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과도하며, 변호사법에 따른 비밀유지의무를 지는 변호사와 저작권자와의 계약관련 법률 자문도 제한될 우려가 있습니다.

비밀유지의 대상인 정보를 개인정보, 영업비밀 등으로 구체화하고, 비밀유지 의무가 있는 변호사의 자문을 받거나 법령에 의해 정보공개가 강제되는 등의 일정한 경우 예외규정을 두도록 수정하심이 바람직합니다.

[수정안]

제5조(비밀 유지 및 보안 의무)

1. 파트너와 플랫폼社는 본 합의서의 내용 및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취득하였거나 향후 취득할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회사의 기술 및 사업상 정보, 노하우 또는 영업상

비밀 등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 비밀로 관리되는 정보를 누구에게도 누설하여서는 아니되고, 그 종업원, 대리인, 상담역 등으로 하여금 누설하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단, 계약내용 검토를 위한 변호사 자문이나 법령, 법령에 근거한 정부기관의 명령, 판결, 기타 해당 당사자에게 구속력이 있는 규제에 따라 해당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관련 규정·판례]

변호사법

제26조(비밀유지의무 등)

변호사 또는 변호사이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참고] 웹소설분야 표준계약서 내 「웹소설 연재 계약서」

제23조 (비밀유지 등)

- ① 저작권자와 콘텐츠사업자는 이 계약의 내용 및 계약 이행 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의 사업상 비밀 정보를 상대방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아래 각호의 경우는 제1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1. 계약서 체결 또는 검토를 위하여 비밀유지의무를 지는 변호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경우
 2. 수사나 소송 등의 분쟁으로 인해 수사기관 또는 사법기관에 제출하는 경우
 3. 법령에 따른 신고나 조사를 위한 목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4. 그밖에 법령에 의해 정보의 공개가 강제되는 경우

사례19

일부규정이 무효가 되더라도 나머지 규정은 어떤 형태로든 영향을 받지 않도록 정한 조항

Q. 안녕하세요 웹소설 작가입니다. 제작사로부터 콘텐츠 제공 계약서를 제안받았는데요. 계약서 상에 일부 규정이 무효가 되더라도 나머지 규정은 효력이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저에게 유리한 규정이 무효가 되었을 때가 걱정되는데요, 이렇게 계약을 체결해야 할까요?

[원안]

제18조(기타사항)

1. '본 계약' 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작성된 서류에 포함된 특정 규정이 관련법에 의해 무효, 불법 또는 집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도, 그로 인해 나머지 규정의 유효성, 적법성 및 집행가능성이 어떤 형태로든 영향을 받거나 침해되지 아니한다.

A. 본 계약내용은 '특정규정이 무효가 되더라도 나머지 규정의 유효성, 적법성 및 집행가능성이 어떤 형태로든 영향을 받거나 침해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계약의 일부 조항이 무효인 경우 유효한 부분만으로는 계약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유효한 부분이 한쪽 당사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경우에도 유효한 부분만을 존속시키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할 수 있습니다.

이에 위와 같은 경우에는 그 계약을 무효로 하는 것으로 수정하심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수정안]

제18조(기타사항)

1. '본 계약' 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작성된 서류에 포함된 특정 규정이 관련법에 의해 무효, 불법 또는 집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도, 그로 인해 나머지 규정의 유효성, 적법성 및 집행가능성이 어떤 형태로든 영향을 받거나 침해되지 아니한다. 다만, 유효한 부분만으로는 계약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그 유효한 부분이 한쪽 당사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경우에는 그 계약은 무효로 한다.

[관련 규정·판례]

민법**제2조(신의성실)**

- ①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 ②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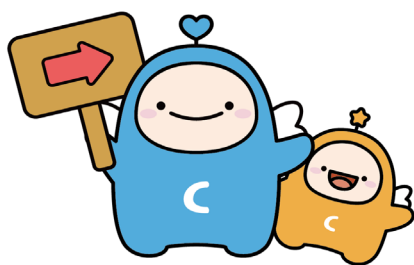
제137조(법률행위의 일부무효)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그러나 그 무효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아니한다.

· · · · · · 참고판례 :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0다288375 판결 · · · · · ·

· · · · · ·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하나, 그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아니한다(민법 제137조). 이와 같은 법률행위의 일부무효 법리는 여러 개의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그 계약 전부가 경제적, 사실적으로 일체로서 행하여져서 하나의 계약인 것과 같은 관계에 있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이때 그 계약 전부가 일체로서 하나의 계약인 것과 같은 관계에 있는 것인지의 여부는 계약 체결의 경위와 목적 및 당사자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PART.05

부 록

부록 1 : 만화분야 표준계약서

[별표1]

출판권 설정 계약서(제2조 제1호 관련)

저작권자¹⁾ _____(이하 '저작권자'라고 한다)와(과) 출판권자 _____(이하 '출판권자'라고 한다)는(은) 아래 대상 저작물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출판권설정계약을 체결한다.

대상 저작물의 표시
제호(가제) :

1) 저작권자는 저작권자권을 보유한 '저작자'와 저작권자권을 양도받아 권리를 행사하는 '저작권자'를 포함한다.

제1조 (계약의 목적)

이 계약은 '저작권자'가 대상 저작물에 대하여 '출판권자'에게 출판권을 부여하고 '출판권자'는 이를 출판함에 있어 양 당사자 사이의 권리·의무 및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1. "대상 저작물"은 위에 표시한, 이 계약의 목적이 되는 저작물을 말한다.
2. "복제"는 대상 저작물을 인쇄·사진촬영·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한다.
3. "배포"는 대상 저작물 원본 또는 그 복제물을 공중에게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아니하고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4. "발행"은 대상 저작물을 공중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복제·배포하는 것을 말한다.
5. "출판"은 대상 저작물을 인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문서 또는 도화로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
6. "선금금"은 대상 저작물의 향후 판매 부수를 예상하고, 해당 부수만큼 미리 지급하는 인세를 말한다.

7. “2차적저작물”은 대상 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 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말한다.
8.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대상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를 말한다.
9. “완전원고”는 교정·편집만 거치면 출판이 가능한 스케치, 채색, 식자 배열 등 창작 작업이 끝난 원고를 말한다.
10. 본조에서 정하지 않은 용어의 정의는 관련 법령과 상관습에 따른다.

제3조 (계약기간 등)

- ① 이 계약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개시하여, 출판물의 첫 발행일로부터 ___년까지로 한다.
- ② ‘저작권자’와 ‘출판권자’는 계약기간 만료일 __개월 전까지 계약 연장에 서면으로 합의할 수 있고, 그 경우 이 계약은 같은 조건으로 ___년간 연장된다. 다만, ‘저작권자’와 ‘출판권자’는 연장에 합의하면서 계약의 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합의가 없는 한 계약은 기간의 만료로 종료된다.

제4조 (출판권의 설정)

- ① ‘저작권자’는 ‘출판권자’에게 대상 저작물에 대한 출판권을 설정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출판권자’는 대상 저작물을 원작 그대로 출판할 수 있는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가진다.

비독점적 성격의 권리 설정 시에는 본 계약서가 아닌 타 계약서(출판 이용허락계약 등)를 활용하여야 한다.

제5조 (배타적 권리)

- ① ‘저작권자’는 이 계약기간 중 스스로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대상 저작물과 동일 또는 유사한 저작물을 출판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저작권자’는 이 계약기간 중 ‘출판권자’의 동의 없이 스스로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대상 저작물의 개정판 또는 증보판을 출판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저작권자’는 이 계약기간 중에 대상 저작물을 제3자가 발행하는 전집이나 선집 등에 수록, 출판하고자 할 때는 ‘출판권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6조 (출판권 설정의 등록)

- ① ‘출판권자’와 ‘저작권자’는 「저작권법」 제54조 제2호에 따라 대상 저작물에 대한 출판권 설정 사실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출판권자’가 출판권 설정등록을 하는 경우 ‘저작권자’는 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출판권자’에게 제공하는 등 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③ ‘출판권자’가 출판권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하였을 경우, ‘출판권자’는 계약 기간 만료, 해제·해지 등으로 계약이 종료된 후 (지체없이 / ___일 이내에) 출판권 등록을 말소하고, 이를 말소하였다는 서면 증빙을 ‘저작권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거래안전을 위해 ‘지체없이’가 원칙이나, 합의에 따라서 일 수를 정할 수 있다.

제7조 (완전원고의 인도와 발행 시기)

- ① ‘저작권자’는 ___년 ___월 ___일까지 ‘출판권자’에게 완전원고를 인도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출판권자’의 동의를 얻어 인도 시한을 변경할 수 있다.
- ② ‘출판권자’는 ‘저작권자’로부터 완전원고를 인도받은 날로부터 ___개월 내에 출판물 초판을 발행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저작권자’의 동의를 얻어 발행일을 변경할 수 있다.

제8조 (정가, 판형, 제책방식 등)

- ① 출판물에 대한 정가, 판형, 제책방식 등은 ‘저작권자’와 ‘출판권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출판권자’는 ‘저작권자’에게 관련 사항을 알려야 한다.
- ② ‘출판권자’는 출판물의 중쇄의 시기, 수량, 홍보와 판매 방법 등을 결정할 수 있으며, 중쇄가 진행되는 경우 ‘출판권자’는 ‘저작권자’에게 수량과 시기 등 중쇄 계획에 대해 미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출판물의 중판 여부 및 내용은 ‘저작권자’와 ‘출판권자’가 사전 합의하여야 한다.
- ④ ‘출판권자’는 출판물의 재고가 없을 경우 중쇄를 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 중쇄의 시기, 수량, 판매 방법 등은 시장 상황, 계약의 잔여기간, ‘출판권자’의 경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저작권자’와 ‘출판권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 ⑤ ‘출판권자’는 이 계약기간 중 대상 저작물의 출판을 중단해서는 아니 된다.¹⁾

1) 단행본 이외의 연속물(1권이상~완결권)은 완결작품 전체를 제5항의 대상으로 한다.

제9조 (대가의 지급)

- ① ‘출판권자’는 아래와 같이 ‘저작권자’에게 정가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일정 부수(발행부수 또는 판매부수)를 곱한 금액을 지정 계좌를 통하여 저작권 사용료로 지급한다. 이때 ‘출판권자’는 ‘저작권자’에게 발행부수 또는 판매부수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 초판의 경우 도서정가의 ____% X 발행부수,
2쇄부터는 도서정가의 ____% X 판매부수 ()
 - 도서정가의 ____% X 발행부수 ()
 - 도서정가의 ____% X 판매부수 ()
 - 기타 _____
- ② ‘출판권자’는 ____개월에 한 번씩 발행부수 또는 판매부수를 ‘저작권자’에게 통보하고 다음 달 말일까지 그 기간에 해당하는 저작권사용료를 ‘저작권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지급하여야 한다.
- ③ ‘저작권자’는 납본, 증정, 신간 안내, 서평, 홍보 등을 위하여 제공되는 부수에 대하여는 저작권사용료를 면제한다. 다만, 그 부수는 매쇄 당 ____%를 초과할 수 없으며, 출판사는 자세한 내역을 저작권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 ④ ‘출판권자’는 이 계약 성립일로부터 ____일 이내에 선금금으로 _____원을 ‘저작권자’에게 지급한다. 계약 종료 시까지의 ‘저작권자가’ 지급받은 저작권 사용료의 합계가 선금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도, ‘저작권자’는 차액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 ⑤ 초판 제1쇄의 발행부수는 _____부로 정한다. ‘출판권자’는 이후 대상 저작물 초판 제1쇄 및 이후 발행 시 지급할 저작권사용료에서 제4항의 선금금을 공제할 수 있다.
- ⑥ ‘저작권자’와 ‘출판권자’는 검인지를 [부착하기로() / 부착하지 아니하기로 ()] 합의한다.

제10조 (정산 등)

- ① ‘출판권자’가 ‘저작권자’에게 제9조의 대가를 지급할 때, ‘출판권자’는 ‘저작권자’에게 출판물의 발행 부수, 인세 계산 내역 등이 기재된 정산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해당 정산 주기에 ‘저작권자’에게 지급할 대가가 없는 경우에도 같다.
- ② ‘저작권자’가 제1항의 정산서 내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출판권자’는 정산서 내용의 근거가 되는 자료를 ‘저작권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공이 불가능한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 별도의 합의를 거쳐 ‘출판권자’는 ‘저작권자’

에게 이를 열람하도록 한다.

- ③ ‘출판권자’는 발행 부수, 인쇄 계산 내역, 인쇄 지급 내역 등과 관련된 이 계약에 따른 장부 및 자료를 별도로 유지, 보관하고, 이를 제3조의 계약 종료 후 5년 후까지 유지 및 보관하여야 한다.
- ④ ‘저작권자’가 제3항의 기간 동안 자료의 열람 또는 제공을 요청할 경우, ‘출판권자’는 계약 종료 여부와 관계없이 이에 응해야 한다. 제2항 2문은 본항에도 적용된다.

제11조 (비용의 부담)

- ① 대상 저작물을 창작하는 비용은 ‘저작권자’가 부담한다. 다만, ‘출판권자’는 ‘저작권자’와 협의에 따라 창작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② 대상 저작물의 출판물 제작비 및 판매, 홍보에 따른 비용은 ‘출판권자’가 부담한다.

제12조 (출판권의 범위)

- ① ‘출판권자’는 대상 저작물을 한국어로, 대한민국 내에서 출판할 수 있다.
- ② ‘저작권자’와 ‘출판권자’는 대상 저작물을 한국어 외의 언어 또는 대한민국 외에서 출판하기 위해 상대방과 협의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내용에 대한 부속합의서 또는 별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3조 (2차적저작물작성권 등)

- ① ‘출판권자’는 대상 저작물에 관하여 이 계약에서 명시적으로 ‘출판권자’에게 허락된 권리만을 갖는다.
- ② 대상 저작물에 대한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저작권자’에게 있다. ‘출판권자’는 대상 저작물의 2차적저작물 이용 등을 위해서는 ‘저작권자’와 부속합의서 또는 별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계약기간 중에 위 저작물에 대하여 국내외 제3자가 2차적저작물로서의 이용을 요청할 때, ‘출판권자’에게 먼저 요청이 오는 경우 ‘출판권자’는 제3자의 저작물 이용허락 요청 사실을 ‘저작권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14조 (교정 및 편집)

- ① 대상 저작물의 교정과 편집은 ‘출판권자’가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저작권자’와 ‘출판권자’가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교정·편집 수행자의 상대방은 교정·편집 수행자에게 협력하여야 하며,

‘출판권자’는 자신이 수행한 교정·편집 결과물에 대하여 ‘저작권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15조 (저작인격권의 존중)

- ① ‘출판권자’는 대상 저작물에 관한 ‘저작자’의 저작인격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 ② ‘출판권자’는 대상 저작물 및 그 복제물에 ‘저작자’의 실명 또는 ‘저작자’가 지정하는 이명(필명)을 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않는 등 ‘저작자’가 요구하는 바에 따라 저작자의 성명 등을 올바르게 표기하여야 한다.
- ③ ‘출판권자’는 대상 저작물의 제호, 내용 또는 형식을 바꾸고자 할 때는 ‘저작자’의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출판권자’는 대상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의 변경을 할 수 있으나, 저작물의 본질적 내용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출판권자’는 대상 저작물과 관련하여 ‘저작자’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 ‘저작권자’가 ‘저작자’(창작자)가 아닌 경우 ‘출판권자’가 본조의 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저작권자’는 ‘저작자’의 의사표시나 동의 여부를 적시에 확인하여 ‘출판권자’에게 전달하여야 하고, 이를 보증한다.

제16조 (저작물의 보증 등)

- ① ‘저작권자’는 ‘출판권자’가 이 계약상의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 장애가 되는 사정(계약 이전에 대상 저작물의 저작권을 처분하거나 권리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등)이 없고, 이 계약기간 중에도 ‘출판권자’의 동의 없이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한다.
- ② ‘저작권자’는 대상 저작물의 내용으로 인해 제3자의 저작권 등 법적 권리를 침해하여 손해를 끼친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다만 ‘출판권자’가 제공하거나 참여한 부분으로 인해 제3자의 저작권 등 법적 권리를 침해하게 된 경우에는 ‘출판권자’가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17조 (저작권자에 대한 증정보 등)

- ① ‘출판권자’는 출판물의 초판 및 개정판 1쇄 발행 시 ___부, 중쇄 발행 시 ___부를 ‘저작권자’에게 증정한다. 이 증정분의 개수는 저작권사용료를 산정하기 위한 발행부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 ② ‘저작권자’가 제1항에 규정된 부수를 초과하는 출판물이 필요한 경우 정가의 ___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출판권자’로부터 구입할 수 있다. 이 구입본의 개수는 저작권사용료를 산정하기 위한 발행부수에 포함된다.

제18조 (원고의 반환 등)

- ① 계약기간의 만료 등으로 이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출판권자’는 ‘저작권자’로부터 받은 육필 원고나 원화 등 실물원고 기타 일체의 자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자료가 전자적 형태로 제공되었을 경우, 이 계약 종료 시 ‘출판권자’는 이를 파기하고, 이를 파기하였다는 서면 확인서를 만들어 ‘저작권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③ ‘출판권자’가 원고 또는 자료를 훼손 또는 분실하거나 본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출판권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다만, 자신의 책임 없는 사유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출판권자’는 제20조 제1항에 따른 성과의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자료를 ‘저작권자’와 협의하여 보존할 수 있다.

제19조 (출판권 소멸 후의 배포)

- ① 출판권이 소멸한 후에도 ‘출판권자’는 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에 발행된 도서의 재고 물량을 ___개월 동안 배포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배포에 대하여 ‘출판권자’는 제9조 제1항에서 정한 저작권사용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선금금이 소진되지 않은 경우 제9조 제5항 후문을 준용한다.

제20조 (출판권자의 성과 존중)

- ① ‘저작권자’는 저작물을 구성하는 스타일, 구성, 레이아웃 등 출판물의 형식에 대한 ‘출판권자’의 성과를 존중하여야 한다.
- ② ‘저작권자’가 이 계약이 종료된 후 ‘출판권자’가 구성한 제1항의 성과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자’와 ‘출판권자’가 별도의 서면 합의를 거쳐야 한다.

제21조 (저작권재산권, 출판권의 양도 등)

- ① ‘저작권자’는 대상 저작물의 복제권 및 배포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출판권자’에게 사전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② ‘출판권자’는 대상 저작물의 출판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저작권자’로부터 사전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22조 (권리·의무의 양도 등)

‘저작권자’와 ‘출판권자’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는 이 계약상 권리·의무 또는 계약상 지위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23조 (계약 내용의 변경)

- ① ‘저작권자’와 ‘출판권자’는 필요시 서면 합의에 따라 이 계약의 내용 중 일부를 변경할 수 있으며, 그 서면 합의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변경된 사항은 그다음 날부터 효력을 가진다.
- ② ‘저작권자’와 ‘출판권자’는 이 계약의 내용을 보충하거나,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부속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부속 합의는 이 계약의 내용과 배치되거나 위반하지 않는 범위로 한정한다.

제24조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

- ① ‘저작권자’ 또는 ‘출판권자’가 이 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그 상대방은 ___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제대로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상대방은 대상 저작물의 출판이 시작되기 이전까지는 이 계약을 해지·해제할 수 있으며, 출판이 시작된 후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민법 등 관계 법령이 있는 경우에는 법정 해지·해제, 합의 해지·해제할 수 있다.

- ③ ‘저작권자’ 또는 ‘출판권자’는 상대방이 더 이상 대상 저작물을 이 계약에 따라 출판할 의사가 없음을 서면으로 통지하거나, 상대방이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이 계약에 따른 출판을 계속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이 계약의 해지를 통고할 수 있다.
1. 회생, 파산, 회사정리, 해산 또는 청산절차가 개시된 경우
 2. 발행한 어음, 수표가 지급 거절되는 경우

3. 제3자에게 인수 또는 합병되거나 영업을 위하여 필요한 주요한 재산이 제3자에게 양도되는 경우
4. 영업을 위하여 필요한 주요 재산에 대하여 법원의 보전처분 또는 강제집행이 개시되고 60일 이내에 해소되지 않는 경우
5. 고의적인 30일 이상의 계약 불이행 및 연락 두절 등으로 출판을 지속할 수 없는 사정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6. 작품 표절, 사회적 물의로 인한 계약 상대방의 손해, 범죄 등이 법원의 판결 등으로 객관적으로 입증된 경우

제25조 (손해배상)

- ① 이 계약을 고의 또는 과실로 위반한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②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 사실은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26조 (불가항력)

천재지변, 자연재해, 전쟁, 내란, 폭동 등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저작권자’ 또는 ‘출판권자’가 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계약 불이행에 대한 서로의 책임을 면제하며, 쌍방이 서면 합의를 통해 후속 조치를 결정한다.

제27조 (성희롱 등의 금지)

- ① ‘저작권자’와 ‘출판권자’는 상대방 또는 상대방의 임직원 등 관련자로부터 객관적인 증거로 확인되는 성희롱·성폭력 피해를 입은 경우, 행위자의 업무 배제 등 적절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고, 상대방은 이러한 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 ② ‘저작권자’ 또는 ‘출판권자’는 상대방 또는 상대방의 임직원 등 관련자로부터의 성희롱·성폭력으로 인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나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이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제28조 (비밀유지)

- ① ‘저작권자’와 ‘출판권자’는 이 계약의 내용 및 계약 이행 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의 영업상 비밀 정보를 상대방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아래 각호의 경우는 제1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1. 계약서 체결 또는 검토를 위하여 비밀유지의무를 지는 변호사 등 전문가, 만화, 예술 또는 저작권 관련 공공기관 및 설립에 필요한 법령상 절차를 거친 협회·단체·조합 등의 자문을 받는 경우
 2. 수사나 소송 등의 분쟁으로 인해 수사기관 또는 사법기관에 제출하는 경우
 3. 법령에 따른 신고나 조사를 위한 목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4. 그 밖의 법령에 의해 정보의 공개가 강제되는 경우
- ③ ‘저작권자’와 ‘출판권자’는 이 계약의 이행 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유의하여 취급하여야 하며, 상대방 동의 없이 이를 공개, 누설 또는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9조 (저작권자의 정보 이용)

‘저작권자’는 ‘출판권자’가 이 계약에 따른 홍보, 판매 등을 위하여 ‘저작권자’가 제공한 정보를 스스로 또는 제3자를 통하여 공개 또는 이용하는 것을 허락한다. 다만, ‘저작자’의 실명과 초상의 공개 또는 이용에 대하여는 ‘저작자’와 ‘출판권자’가 별도 합의하여 결정한다.

제30조 (저작권 침해의 공동대응)

‘저작권자’와 ‘출판권자’는 대상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 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상대방에게 자료를 제공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31조 (예술인고용보험)

- ① ‘출판권자’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경우 ‘저작권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고용보험 취득신고 등 자격관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 ② ‘출판권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저작권자’와 ‘출판권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판권자’는 ‘저작권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를 ‘저작권자’에게 지급하는 보수에서 원천공제하여 납부할 수 있다.

제32조 (분쟁 해결)

- ① 이 계약에서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저작권자’와 ‘출판권자’가 자율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 ② ‘저작권자’ 또는 ‘출판권자’는 소송에 앞서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을 받을 수 있다.

- ③ 이 계약과 관련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한다.

제33조 (설명 의무)

- ① ‘출판권자’는 ‘저작권자’에게 이 계약서의 주요 내용과 취지를 설명해야 한다.
다만, ‘저작권자’의 의사에 따라 추가되거나 변경된 계약의 내용은 ‘저작권자’가 ‘출판권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설명과 별개로, ‘출판권자’는 ‘저작권자’가 계약서 내용 전문을 최초로 확인한 시점으로부터 최소 15일의 기간을 보장하여 ‘저작권자’가 계약 전 법률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어야 한다.

이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저작권자’, ‘출판권자’가 서명 날인한 다음 각 1통씩 보관한다.

_____년 __월 __일

“저작권자”

성 명(이명) :

생 년 월 일 :

주 소 :

기 명 날 인 : _____(인)

입 금 계 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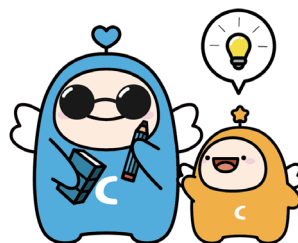
“출판권자”

상 호 :

사업자번호 :

주 소 :

대 표 자 : _____ (인)



[별표2]

전자책 발행 계약서(제2조 제2호 관련)

저작권자¹⁾ _____(이하 ‘저작권자’라고 한다)와(과) 전자책 발행업자 _____(이하 ‘전자책 발행업자’라고 한다)는(은) 아래 대상 저작물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전자책 발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다.

대상 저작물의 표시
제호(가제) :

1) 저작권자는 저작재산권을 보유한 ‘저작권자’와 저작재산권을 양도받아 권리를 행사하는 ‘저작재산권자’를 포함한다.

제1조 (계약의 목적)

이 계약은 ‘저작권자’가 대상 저작물에 관하여 ‘전자책 발행업자’에게 전자책 발행권을 부여하고 ‘전자책 발행업자’는 이를 전자책으로 발행함에 있어 양 당사자 사이의 권리·의무 및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1. “대상 저작물”은 위에 표시한, 이 계약의 목적이 되는 저작물을 말한다.
2. “복제”는 대상 저작물을 인쇄·사진촬영·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한다.
3. “공중송신”은 대상 저작물을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4. “전송”은 공중송신 중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물 등을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그에 따라 이루어지는 송신을 포함한다.
5. “배포”는 대상 저작물 원본 또는 그 복제물을 공중에게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아니하고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6. “발행”은 대상 저작물을 공중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복제·배포하는 것을 말한다.
7. “배타적발행권”은 대상 저작물을 발행하거나 복제·전송(이하 “발행등”이라 한다.)할 권리를 가진 자가 그 저작물을 발행 등에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배타적

- 권리를 갖는 것을 말한다. 다만, 출판권은 제외한다.
8. “선급금”은 대상 저작물의 향후 판매 부수를 예상하고, 해당 부수만큼 미리 지급하는 인세를 말한다.
 9. “출판”은 대상 저작물을 인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문서 또는 도화로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
 10. “2차적저작물”은 대상 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말한다.
 11.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대상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를 말한다.
 12. “전자책”은 대상 저작물의 내용을 전자적 매체에 실어 이용자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그 내용을 읽거나 보거나 들을 수 있게 만든 것을 말한다.
 13. “완전원고”는 교정·편집만 거치면 전자책 출판이 가능한 스케치, 채색, 식자 배열 등 창작 작업이 끝난 원고를 말한다.
 14. “총 매출액”은 대상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한 이용자 지불금 등으로 대상 저작물의 이용으로 발생하는 총 합계 금액을 말한다.
 15. “순 매출액”은 총 매출액에서 세금, 앱마켓(구글·애플 등) 수수료, 결제/환불 수수료 등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단, 총 매출액에서 공제되는 항목은 ‘전자책 발행업자’와 ‘저작권자’의 합의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전자책 발행업자’가 CP사 등 에이전시인 경우는 공제하는 금액에 유통플랫폼에 배분되는 수수료를 포함할 수 있다.

16. 본조에서 정하지 않은 용어의 정의는 관련 법령과 상관습에 따른다.

제3조 (계약기간)

- ① 이 계약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개시하여, 저작물의 첫 발행일로부터 ___년까지로 한다.
- ② ‘저작권자’와 ‘전자책 발행업자’는 계약기간 만료일 __개월 전까지 계약 연장에 서면으로 합의할 수 있고, 그 경우 이 계약은 같은 조건으로 ___년간 연장된다. 다만, ‘저작권자’와 ‘전자책 발행업자’는 연장에 합의하면서 계약의 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합의가 없는 한 이 계약은 기간의 만료로 종료된다.

제4조 (배타적발행권의 설정)

- ① '저작권자'는 '전자책 발행업자'에게 대상 저작물을 전자책 형식으로 발행 등을 할 권리인 배타적발행권을 설정한다.
- ② '전자책 발행업자'는 이 계약에서 정한 조건 및 방법에 따라 대상 저작물에 대한 배타적발행권을 갖는다.
- ③ '저작권자'는 이 계약기간 중 스스로 또는 제3자로 하여금 대상 저작물과 동일 또는 유사한 저작물을 이 계약에서 정한 조건 및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저작권자'는 이 계약에서 정한 배타적발행권 설정과 중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3자에게 대상 저작물에 대한 새로운 배타적발행권을 설정할 수 있다.

제5조 (배타적발행권 설정의 등록)

- ① '전자책 발행업자'와 '저작권자'는 대상 저작물에 대한 배타적발행권 설정 사실을 「저작권법」 제54조 제2호에 따라 등록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전자책 발행업자'가 등록을 하는 경우 '저작권자'는 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는 등으로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이루어진 경우, '전자책 발행업자'는 계약기간 만료, 해제·해지 등으로 이 계약이 종료된 후 (지체없이 / ___일 이내에) 등록을 말소해야 한다.

거래안전을 위해 '지체 없이'가 원칙이나, 합의에 따라서 일 수를 정할 수 있다.

제6조 (완전원고의 인도와 발행 시기)

- ① '저작권자'는 ___년 ___월 ___일까지 완전원고를 '전자책 발행업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전자책 발행업자'의 동의를 얻어 인도 시한을 변경할 수 있다.
- ② '전자책 발행업자'는 '저작권자'로부터 완전원고를 인도받은 날로부터 ___개월 내에 대상 저작물을 발행 등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저작권자'의 동의를 얻어 발행일을 변경할 수 있다.

제7조 (발행 등)

- ① 대상 저작물의 발행 등에 따른 이용 조건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 매체 형식 :
- 이용 형식 :
- ② 발행물의 정가, 서비스 시기, 판매방법, 홍보·광고 등은 ‘저작권자’와 ‘전자책 발행업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전자책 발행업자’는 관련 사항을 ‘저작권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 ③ ‘전자책 발행업자’는 이 계약기간 중 대상 저작물의 발행 등을 중단해서는 아니 된다.

제8조 (대가의 지급)

- ① ‘전자책 발행업자’는 ‘저작권자’에게 위 저작물 순 매출액의 _____%에 해당하는 금액을 저작권사용료로 지급한다.
- ② ‘전자책 발행업자’는 이 계약 성립일로부터 ___일 내에 선금금으로 _____원을 ‘저작권자’에게 지급한다. 계약 종료 시까지의 ‘저작권자’가 지급받은 저작권 사용료의 합계가 선금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도, ‘저작권자’는 차액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 ③ ‘전자책 발행업자’는 이후 대상 저작물 발행 시 지급할 저작권사용료에서 제2항의 선금금을 공제할 수 있다.
- ④ ‘전자책 발행업자’는 ‘저작권자’의 저작권사용료를 _____개월에 한 번씩 ‘저작권자’에게 통보하고, 다음 달 말일까지 그 기간에 해당하는 저작권사용료를 ‘저작권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지급한다.

제9조 (정산 등)

- ① ‘전자책 발행업자’가 ‘저작권자’에게 제8조의 대가를 지급할 때, ‘전자책 발행업자’는 ‘저작권자’에게 배타적발행 내용, 대가 계산 내역 등이 기재된 정산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해당 정산 주기에 ‘저작권자’에게 지급할 대가가 없는 경우에도 같다. 정산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판매방식별(구매, 대여, 구독 등) 판매수량/비율 및 총 판매금액
 2. 세금, 플랫폼 수수료율 및 수수료, 결제/환불 수수료 등 비용 내역
 3. 순 매출액
 4. 순 매출액 중 ‘저작권자’에게 실제 지급되는 금액(총 판매금액, 비용, 순 매출액, 정산비율 등을 구분하여 표시한다)
- ② ‘저작권자’가 제1항의 정산서 내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전자책 발행업자’는 정산서 내용의 근거가 되는 자료(관련 계약서를 포함한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공이 불가능한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 별도의 합의를 거쳐 '전자책 발행업자'는 '저작권자'에게 이를 열람하도록 한다.

- ③ '전자책 발행업자'는 배타적발행 내용, 대가 계산 내역, 대가 지급 내역 등과 관련된 이 계약에 따른 장부 및 자료를 별도로 유지, 보관하고, 이를 제3조에 따른 계약 종료일 이후 5년 후까지 유지 및 보관하여야 한다.
- ④ '저작권자'가 제3항의 기간 동안 자료의 열람 또는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전자책 발행업자'는 계약 종료 여부와 관계없이 이에 응해야 한다. 제2항 제2문은 본항에도 적용된다.

제10조 (비용의 부담)

- ① 대상 저작물을 창작하는 비용은 '저작권자'가 부담한다. 다만, '전자책 발행업자'는 '저작권자'와의 협의에 따라 창작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② 대상 저작물의 발행 등 제작비 및 판매, 홍보에 따른 비용은 '전자책 발행업자'가 부담한다.

제11조 (배타적발행권의 범위)

- ① '전자책 발행업자'는 대상 저작물을 한국어로, 대한민국 내에서 발행 등을 할 수 있다.
- ② '저작권자'와 '전자책 발행업자'는 대상 저작물을 한국어 외의 언어 또는 대한민국 외에서 발행 등을 하기 위해 상대방과 협의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할 경우 해당 내용에 대한 부속합의서 또는 별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2조 (2차적저작물작성권 등)

- ① '전자책 발행업자'는 대상 저작물에 관하여 이 계약에서 명시적으로 '전자책 발행업자'에게 허락한 권리만을 갖는다.
- ② 대상 저작물에 대한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저작권자'에게 있다. '전자책 발행업자'는 대상 저작물의 2차적저작물 이용 등을 위해서는 '저작권자'와 부속합의서 또는 별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계약기간 중에 위 저작물에 대하여 국내외 제3자가 2차적저작물로서의 이용을 요청할 때, '전자책 발행업자'에게 먼저 요청이 오는 경우 '전자책 발행업자'는 제3자의 저작물 이용허락 요청 사실을 '저작권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13조 (저작물의 보증 등)

- ① '저작권자'는 '전자책 발행업자'가 이 계약상의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 장애가 되는 사정(계약 이전에 대상 저작물의 저작권을 처분하거나 권리의 목적으로 제공 하는 등)이 없고, 이 계약기간 중에도 '전자책 발행업자'의 동의 없이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한다.
- ② '저작권자'는 대상 저작물의 내용으로 인해 제3자의 저작권 등 법적 권리를 침해하여 손해를 끼친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다만 '전자책 발행업자'가 제공하거나 관여한 부분으로 인해 제3자의 저작권 등 법적 권리를 침해하게 된 경우에는 '전자책 발행업자'가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14조 (저작인격권의 존중)

- ① '전자책 발행업자'는 대상 저작물에 관한 '저작자'의 저작인격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 ② '전자책 발행업자'는 대상 저작물 및 그 복제물에 '저작자'의 실명 또는 '저작자'가 지정하는 이명(필명)을 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않는 등 '저작자'가 요구하는 바에 따라 올바르게 사용하여야 한다.
- ③ '전자책 발행업자'는 대상 저작물의 제호, 내용 또는 형식을 바꾸고자 할 때는 '저작자'의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전자책 발행업자'는 대상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의 변경을 할 수 있으나, 저작물의 본질적 내용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전자책 발행업자'는 대상 저작물과 관련하여 '저작자'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 '저작권자'가 '저작자'(창작자)가 아닌 경우 '전자책 발행업자'가 본조의 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저작권자'는 '저작자'의 의사표시나 동의 여부를 적시에 확인하여 '전자책 발행업자'에게 전달하여야 하고, 이를 보증한다.

제15조 (교정 및 편집)

- ① 대상 저작물의 교정과 편집은 '전자책 발행업자'가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저작권자'와 '전자책 발행업자'가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교정·편집 수행자의 상대방은 교정·편집 수행자에게 협력하여야 하며, '전자책 발행업자'는 자신이 수행한 교정·편집 결과물에 대하여 '저작권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 (원고의 반환 등)

- ① 계약기간의 만료 등으로 이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전자책 발행업자'는 '저작권자'로부터 받은 육필 원고나 원화 등 실물원고 기타 일체의 자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원고 또는 자료가 전자적 형태로 제공되었을 경우, 이 계약 종료 시 '전자책 발행업자'는 이를 모두 파기하고, 이를 파기하였다는 서면 확인서를 만들어 '저작권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③ '전자책 발행업자'가 자료를 훼손 또는 분실하거나 본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전자책 발행업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다만, 자신의 책임 없는 사유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자책 발행업자'는 대상 저작물을 구매(일정 기간 또는 영구 소장)한 이용자에게 차질 없이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제18조 제1항에 따른 성과의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자료를 '저작권자'와 협의하여 보존할 수 있다.

제17조 (배타적발행권 소멸 후의 배포)

- ① 배타적발행권이 소멸한 후에도 '전자책 발행업자'는 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에 발행 등의 방법으로 제작한 유형물을 ___개월 동안 배포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배포에 대하여 '전자책 발행업자'는 제8조 제1항에서 정한 저작권 사용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선급금이 소진되지 않은 경우 제8조 제3항을 준용한다.

제18조 (전자책 발행업자의 성과 존중)

- ① '저작권자'는 저작물을 구성하는 스타일, 구성, 레이아웃 등 전자책의 형식에 대한 '전자책 발행업자'의 성과를 존중하여야 한다.
- ② '저작권자'가 이 계약이 종료된 후 '전자책 발행업자'가 구성한 제1항의 성과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자'와 '전자책 발행업자'가 별도의 서면 합의를 거쳐야 한다.

제19조 (저작권재산권, 배타적발행권의 양도 등)

- ① '저작권자'는 대상 저작물의 복제권 및 전송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자책 발행업자'에게 사전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② '전자책 발행업자'는 대상 저작물의 배타적발행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저작권자’로부터 사전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20조 (권리·의무의 양도 등)

‘저작권자’와 ‘전자책 발행업자’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는 이 계약상 권리·의무 또는 계약상 지위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21조 (계약 내용의 변경)

- ① ‘저작권자’와 ‘전자책 발행업자’는 필요시 서면 합의에 따라 이 계약의 내용 중 일부를 변경할 수 있으며, 그 서면 합의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변경된 사항은 그다음 날부터 효력을 가진다.
- ② ‘저작권자’와 ‘전자책 발행업자’는 이 계약의 내용을 보충하거나,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부속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부속 합의는 이 계약의 내용과 배치되거나 위반되지 않는 범위로 한정한다.

제22조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

- ① ‘저작권자’ 또는 ‘전자책 발행업자’가 이 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그 상대방은 ___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제대로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상대방은 대상 저작물의 발행이 시작되기 이전까지는 이 계약을 해지·해제할 수 있으며, 발행이 시작된 후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민법 등 관계 법령이 있는 경우에는 법정 해지·해제, 합의 해지·해제할 수 있다.

- ③ ‘저작권자’ 또는 ‘전자책 발행업자’는 상대방이 더 이상 대상 저작물을 이 계약에 따라 발행할 의사가 없음을 서면으로 통지하거나, 상대방이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이 계약에 따른 발행을 계속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이 계약의 해지를 통고할 수 있다.
 1. 회생, 파산, 회사정리, 해산 또는 청산절차가 개시된 경우
 2. 발행한 어음, 수표가 지급 거절되는 경우
 3. 제3자에게 인수 또는 합병되거나 영업을 위하여 필요한 주요한 재산이 제3자에게 양도되는 경우

4. 영업을 위하여 필요한 주요 재산에 대하여 법원의 보전처분 또는 강제집행이 개시되고 60일 이내에 해소되지 않는 경우
5. 고의적인 30일 이상의 계약 불이행 및 연락 두절 등으로 발행을 지속할 수 없는 사정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6. 작품 표절, 사회적 물의로 인한 계약 상대방의 손해, 범죄 등이 법원의 판결 등으로 객관적으로 입증된 경우

제23조 (손해배상)

- ① 이 계약을 고의 또는 과실로 위반한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②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 사실은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24조 (불가항력)

천재지변, 자연재해, 전쟁, 내란, 폭동 등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저작권자' 또는 '전자책 발행업자'가 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계약 불이행에 대한 서로의 책임을 면제하며, 쌍방이 서면 합의를 통해 후속 조치를 결정한다.

제25조 (성희롱 등의 금지)

- ① '저작권자'와 '전자책 발행업자'는 상대방 또는 상대방의 임직원 등 관련자로부터 객관적인 증거로 확인되는 성희롱·성폭력 피해를 입은 경우, 행위자의 업무 배제 등 적절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고, 상대방은 이러한 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 ② '저작권자' 또는 '전자책 발행업자'는 상대방 또는 상대방의 임직원 등 관련자로부터 성희롱·성폭력으로 인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나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이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제26조 (비밀유지)

- ① '저작권자'와 '전자책 발행업자'는 이 계약의 내용 및 계약 이행 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의 영업상 비밀 정보를 상대방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개 또는 누설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아래 각호의 경우는 제1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1. 계약서 체결 또는 검토를 위하여 비밀유지의무를 지는 변호사 등 전문가, 만화, 예술 또는 저작권 관련 공공기관 및 설립에 필요한 법령상 절차를

- 거친 협회·단체·조합 등의 자문을 받는 경우
2. 수사나 소송 등의 분쟁으로 인해 수사기관 또는 사법기관에 제출하는 경우
 3. 법령에 따른 신고나 조사를 위한 목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4. 그 밖의 법령에 의해 정보의 공개가 강제되는 경우
- ③ ‘저작권자’와 ‘전자책 발행업자’는 이 계약의 이행 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유의하여 취급하여야 하며, 상대방 동의 없이 이를 공개, 누설 또는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7조 (저작권자의 정보 이용)

‘저작권자’는 ‘전자책 발행업자’가 이 계약에 따른 홍보, 판매 등을 위하여 ‘저작권자’가 제공한 정보를 스스로 또는 제3자를 통하여 공개 또는 이용하는 것을 허락한다. 다만, ‘저작자’의 실명과 초상의 공개 또는 이용에 대하여는 ‘저작자’와 ‘전자책 발행업자’가 별도 합의하여 결정한다.

제28조 (저작권 침해의 공동대응)

‘저작권자’와 ‘전자책 발행업자’는 대상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 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상대방에게 자료를 제공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29조 (예술인고용보험)

- ① ‘전자책 발행업자’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경우 ‘저작권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고용보험 취득신고 등 자격관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 ② ‘전자책 발행업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저작권자’와 ‘전자책 발행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책 발행업자’는 ‘저작권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를 ‘저작권자’에게 지급하는 보수에서 원천공제하여 납부할 수 있다.

제30조 (분쟁 해결)

- ① 이 계약에서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저작권자’와 ‘전자책 발행업자’가 자율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 ② ‘저작권자’ 또는 ‘전자책 발행업자’는 소송에 앞서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을 받을 수 있다.

- ③ 이 계약과 관련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한다.

제31조 (설명 의무)

- ① ‘전자책 발행업자’는 ‘저작권자’에게 이 계약서의 주요 내용과 취지를 설명해야 한다. 다만, ‘저작권자’의 의사에 따라 추가되거나 변경된 계약의 내용은 ‘저작권자’가 ‘전자책 발행업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설명과 별개로, ‘전자책 발행업자’는 ‘저작권자’가 계약서 내용 전문을 최초로 확인한 시점으로부터 최소 15일의 기간을 보장하여 ‘저작권자’가 계약 전 법률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어야 한다.

이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저작권자’, ‘전자책 발행업자’가 서명 날인한 다음 각 1통씩 보관한다.

_____년 __월 __일

“저작권자”

성 명(이명) :

생 년 월 일 :

주 소 :

기 명 날 인 : _____(인)

입 금 계 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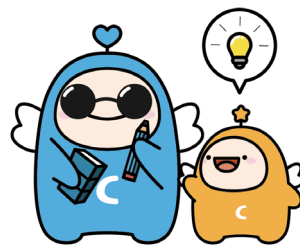
“전자책 발행업자”

상 호 :

사업자번호 :

주 소 :

대 표 자 : _____ (인)



[별표3]

웹툰 연재계약서(제2조 제3호 관련)

저작권자 ____ (이하 '저작권자'라고 한다)와(과) 게재 매체 사업주 ____ (이하 '서비스 제공업자'라고 한다)는(은) 아래의 저작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연재(게재)계약을 체결한다.

대상 저작물의 표시
제호(가제) :

제1조 (계약의 목적)

이 계약은 '저작권자'가 창작한 대상 저작물을 '서비스 제공업자'에게 제공하고 '서비스 제공업자'는 이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하여 연재함에 있어 양 당사자 간의 권리·의무 및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1. “대상 저작물”은 위에 표시한, 이 계약의 목적이 되는 저작물을 말한다.
2. “복제”는 대상 저작물을 인쇄·사진촬영·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한다.
3. “공중송신”은 대상 저작물을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4. “전송”은 공중송신 중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물 등을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그에 따라 이루어 지는 송신을 포함한다.
5. “발행”은 대상 저작물을 공중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복제·배포하는 것을 말한다.
6. “배타적발행권”은 대상 저작물을 발행하거나 복제·전송(이하 “발행등”이라 한다.)할 권리를 가진 자가 그 저작물을 발행 등에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배타적 권리를 갖는 것을 말한다. 다만, 출판권은 제외한다.
7. “2차적저작물”은 대상 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말한다.
8.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대상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를 말한다.

9. “인터넷 사이트”는 서비스업자 또는 제3자가 이용자에게 대상 저작물을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운영하고 있는,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버가 설치되어 있는 호스트 컴퓨터 시스템을 말한다.
10. “온라인 서비스”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대상 저작물을 복제, 전송하는 것을 말한다.
11. “연재”는 대상 저작물을 “인터넷 사이트”에 “온라인 서비스”의 방법으로 계약 기간 동안 정해진 주기마다 발행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12. “PPL”(Product Placement)은 대상 저작물의 내용이나 맥락 내에 제3자의 상품이나 브랜드 이미지 등을 노출시켜 홍보하는 마케팅을 말한다.
13. “완전원고”는 교정·편집만 거치면 연재가 가능한 스케치, 채색, 식자 배열 등 창작 작업이 끝난 원고를 말한다.
14. “총 매출액”은 대상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한 이용자 지불금 등으로 대상 저작물의 이용으로 발생하는 총 합계 금액을 말한다.
15. “순 매출액”은 총 매출액에서 세금, 앱마켓(구글·애플 등) 수수료, 결제/환불 수수료 등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16. “코인”은 이용자가 대상 저작물의 이용을 위해서 구매하는, 플랫폼이 발행하는 전자적 증표 또는 화폐를 말한다.
17. 본조에서 정하지 않은 용어의 정의는 관련 법령과 상관습에 따른다.

제3조 (계약기간 등)

- ① 이 계약의 계약기간은 대상 저작물의 계약체결일로부터 (__개월 / __회 연재일) 까지로 한다. 다만, ‘저작권자’는 ‘서비스 제공업자’에게 이 계약에 따른 권리를 (계약기간 종료일 / 최종화 연재¹⁾일)로부터 __개월 간 (독점 / 비독점)으로 허락하며, 그에 따른 서비스 및 대가 지급, 정산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 계약은 유효하게 존속(이하 권리 허락 기간)한다.

1) 최종화 연재를 상호 합의 없이 임의로 변동시킬 수 없음

- ② ‘저작권자’와 ‘서비스 제공업자’는 계약기간 만료일 __개월 전까지 계약 연장에 서면으로 합의할 수 있고, 그 경우 이 계약은 같은 조건으로 (__개월 / __회) 연장된다. 다만, ‘저작권자’와 ‘서비스 제공업자’는 연장에 합의하면서 계약의 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합의가 없는 한 이 계약은 기간 만료로 종료되며, ‘서비스 제공업자’의 권리는 제1항의 기간만큼 존속한다.

제4조 (권리의 부여)

- ① '저작권자'는 '서비스 제공업자'에게 이 계약기간 중 대상 저작물을 온라인 서비스 방식으로 연재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
- ② '저작권자'와 '서비스 제공업자'가 제1항의 권리를 독점적·배타적인 것으로 하는 배타적발행권을 설정하기로 합의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업자'와 '저작권자'는 「저작권법」 제54조 제2호에 따라 대상 저작물에 대한 배타적발행권 설정 사실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라 '서비스 제공업자'가 배타적발행권 설정등록을 하는 경우 '저작권자'는 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서비스 제공업자'에게 제공하는 등 이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 ④ '서비스 제공업자'는 계약기간 만료, 해제·해지 등으로 이 계약이 종료된 후 (지체 없이 / ___일 이내에) 배타적발행권 말소 등록을 신청하고, '저작권자'에게 말소하였다는 증빙 자료를 교부해야 한다.

거래안전을 위해 '지체없이'가 원칙이나, 합의에 따라서 일 수를 정할 수 있다.

※ 권리를 부여함에 있어 반드시 배타적 발행권을 설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단순 연재를 허락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업자'는 대상저작물을 인터넷 전송 등의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다. 따라서 비독점 연재에 적합하다.
- '배타적발행'을 허락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업자'는 대상저작물을 독점적·배타적으로 인터넷 전송 등의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다. 따라서 독점 연재에 적합하다. 이 경우에도 '서비스 제공업자'는 제5조 제2항에 따라 '저작권자'의 동의 하에 연재 사이트를 추가할 수 있다.

제5조 (서비스 제공업자의 권리 행사)

- ① '서비스 제공업자'는 이 권리 허락 기간 중 대상 저작물의 온라인 서비스 연재에 대하여 이 계약에서 정한 내용의 권리를 보유한다. 다만 '서비스 제공업자'가 대상 저작물을 연재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는 아래 기재한 도메인 주소로 한정한다. (예시) 가. www.웹툰연재사이트.com
- ② '서비스 제공업자'가 제1항에 기재한 인터넷 사이트 외에 다른 인터넷 사이트 (제3자가 운영하는 사이트를 포함한다)를 연재 사이트에 포함시키거나 제외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자'의 사전 동의를 구해야 한다.
- ③ '서비스 제공업자'는 대상 저작물의 가격 정책, 서비스 방향 등을 '저작권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 ④ '서비스 제공업자'는 대상 저작물의 홍보, 마케팅 및 프로모션 방법 등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서비스 제공업자'는 관련 사항을 '저작권자'에게 알려주어야 하며, '저작권자'가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 성실히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연재의 계속)

- ① '저작권자'와 '서비스 제공업자'는 계약기간 중 대상 저작물의 연재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상호 신의와 성실로써 협조해야 한다.
- ② '서비스 제공업자'는 권리 허락 기간 중 '저작권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부당하게 '저작권자'가 제공한 대상 저작물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연재를 지연 또는 중단해서는 아니 된다.
- ③ '저작권자'는 계약기간 중 '서비스 제공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부당하게 대상 저작물의 창작 및 인도를 거부하거나 연재를 지연 또는 중단해서는 아니 된다.

제7조 (원고의 인도와 연재 시기)

- ① '저작권자'는 계약 체결 이후 __일 이내에 '서비스 제공업자'에게 __회 분량의 완전원고를 인도하고, 이후 계약기간 동안 (__일/_요일)마다 제2항에서 정한 1회 분량의 완전원고를 인도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는 '서비스 제공업자'의 동의를 얻어 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 ② 대상 저작물의 장르와 형식을 고려하여 원고는 회당 최소 __컷 내외의 완전원고 형태로 제작되어야 하며, '저작권자'와 '서비스 제공업자'의 합의에 따라 분량의 상·하한을 정할 수 있다. 만일 '서비스 제공업자'의 요구에 따라 계약 컷수보다 __컷 이상 늘어나는 경우 '서비스 제공업자'는 '저작권자'에게 컷당 _____원의 추가금을 지급한다.
- ③ '서비스 제공업자'는 제1항의 연재에 필요한 분량의 원고를 인도받은 날로부터 __개월 이내에 대상 저작물의 연재를 개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저작권자'의 동의를 얻어 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2항 관련, 주 1회 연재 기준 통상 50~70컷 내외로 계약하며, 계약 컷수가 늘어날수록 제9조에 따른 대가(원고료 등)도 높아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제8조 (휴재 등)

- ① '서비스 제공업자'는 '저작권자'가 대상 저작물의 창작활동 중 적절히 휴재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 ② ‘저작권자’는 건강한 창작활동을 위해 연재 주기 기준 50회당 2회씩 휴재할 수 있으며, 이때 ‘서비스 제공업자’는 조건 없는 휴재를 보장한다. 만일 ‘저작권자’가 위 보장된 휴재 시간만큼 휴재하지 않는 경우, ‘서비스 제공업자’는 그 기간만큼 ‘저작권자’에게 휴재를 권고하고 대상 저작물의 연재를 중단할 수 있다.
- ③ 휴재에 따른 모든 공지와 안내는 ‘서비스 제공업자’가 수행하며, ‘서비스 제공업자’는 ‘저작권자’에게 휴재 사실을 안내하기 위한 별도 작업을 요구할 수 없다.
- ④ 기타 불가피한 사유에 의한 휴재는 ‘저작권자’와 ‘서비스 제공업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 작품 연재·제작방식에 따른 가이드라인 (제8조 제2항 관련)

- ‘시즌제’의 경우 한 시즌 분량에 따라 연재주기 50회당 2회에 비례하는 수준의 휴재를 보장하며, ‘사전제작’의 경우 누적된 회차의 차감 없이 50회당 2회 또는 그에 상응하는 기간(주 1회 연제작 기준 50주)당 2회의 휴재를 보장한다.
- 시즌제 : 일정 회차(100회 등)를 연재하고 일정 기간(n개월) 휴재하였다가 연재를 재개하는 구조
- 사전제작 : 상당한 분량의 선제작(20회 등) 후 연재를 개시하는 경우를 의미 한다.

제9조 (대가의 지급)

- ① ‘서비스 제공업자’는 ‘저작권자’에게 대상 저작물의 1회차 분량의 원고에 대해 연재료로 _____ 원을 지급한다.
- ② ‘서비스 제공업자’는 본조의 대가의 지급 및 제10조의 정산 등은 매월 한 번씩 진행하고, 다음 달 말일까지 ‘저작권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지급한다.

제10조 (정산 등)

- ① ‘저작권자’와 ‘서비스 제공업자’는 수익분배(Revenue Share, 이하 ‘RS’라 한다) 비율에 따라 순 매출액을 나누어 갖는다. 이때 ‘저작권자’와 ‘서비스 제공업자’의 RS 비율은 ___% : ___%(저작권자:서비스 제공업자)이며, 제9조에 따라 지급되는 대금의 공제 방식은 제2항에서 정한다.
- ② 제9조에 따라 지급되는 대금의 공제는 _____ 방식으로 한다.
- ③ 순 매출액은 제2조의 정의에 따른다. 다만, ‘저작권자’와 ‘서비스 제공업자’는 서면으로 합의하여 순 매출액 산정 시 공제되는 범위 또는 항목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④ ‘서비스 제공업자’는 연재 계약이 종료되더라도 대상 저작물이 서비스되는 동안에는 RS 비율에 따라 ‘저작권자’와 순매출액을 나누어 갖는다.

- ⑤ ‘서비스 제공업자’는 ‘저작권자’에게 (___주/___개월)마다 1회, 지급할 대가 유무와 관계없이 별도의 자료(엑셀 등 파일 형태를 포함한다.) 또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수익 정산서를 제공한다. 수익 정산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해당 기간 대상 저작물로 인해 발생한 총 매출액(대여·소장·이벤트 판매 수량, 스토어별 판매 수량, 유료 판매 비율 등 포함)

※ 괄호 안은 예시적이며, 계약내용 등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2. 저작물이 플랫폼에서 판매될 당시 코인으로 환산한 저작물의 회차별 가격 및 코인당 단가
 3. 세금, 플랫폼 수수료율 및 수수료, 결제/환불 수수료 등 비용 내역
 4. 순 매출액 내역
 5. 순 매출액 중 ‘저작권자’에게 실제 지급되는 금액(원고료, 수익분배금, 차감액, 이월금 등을 구분하여 표시한다)
- ⑥ ‘저작권자’가 제5항의 정산서 내용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업자’는 정산서 내용의 근거 자료(관련 계약서를 포함한다)를 제공하여야 한다. 만일 근거 자료 제공이 불가능한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 ‘서비스 제공업자’는 별도의 합의를 거쳐 ‘저작권자’에게 이를 열람하도록 한다.
- ⑦ ‘서비스 제공업자’는 정산내역 및 정산의 근거가 되는 자료 일체를 제3조의 권리 소멸일로부터 5년 후까지 유지 및 보관하여야 한다.
- ⑧ ‘저작권자’가 제7항의 기간 동안 자료의 열람 또는 제공을 요청할 경우, ‘서비스 제공업자’는 계약 종료 여부와 관계없이 이에 응해야 한다. 제6항 제2문은 본항에도 적용된다.

제11조 (조회 수)

- ① ‘서비스 제공업자’는 ‘저작권자’에게 대상 저작물의 회차별 조회 수 정보를 (___일마다 1회) 제공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술적 한계 등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정확한 조회 수를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 ‘서비스 제공업자’는 근사치를 제공할 수 있으며, 그러한 경우 ‘저작권자’에게 특별한 사정을 설명하여야 한다.

제12조 (비용의 부담)

- ① 대상 저작물을 창작하는 비용은 '저작권자'가 부담한다. 다만, '서비스 제공업자'는 '저작권자'와 협의에 따라 창작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② 대상 저작물의 발행 등 제작비 및 판매, 홍보에 따른 비용은 '서비스 제공업자'가 부담한다.
- ③ '저작권자'가 '서비스 제공업자'의 요구에 따라 별도의 예고편, 후기, 일러스트레이션 등을 제작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업자'는 '저작권자'에게 이에 대한 별도의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때 지급할 금전은 당사자 간 서면 합의에 의한다.
- ④ '저작권자'와 '서비스 제공업자'는 대상 저작물에 PPL을 삽입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별도 합의에 따른다.

제13조 (권리의 범위)

- ① '서비스 제공업자'는 대상 저작물을 한국어로, 제5조 제1항 및 제2항에 적시한 도메인에서 발행 등을 할 수 있다.
- ② '저작권자'와 '서비스 제공업자'는 대상 저작물을 한국어 외의 언어 또는 대한민국 외에서 발행 등을 하기 위해 상대방과 협의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내용에 대한 부속합의서 또는 별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4조 (2차적저작물작성권 등)

- ① '서비스 제공업자'는 대상 저작물에 관하여 이 계약에서 명시적으로 '서비스 제공업자'에게 허락된 권리만을 갖는다.
- ② 대상 저작물에 대한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저작권자'에게 있다. '서비스 제공업자'는 대상 저작물의 2차적저작물 이용 등을 위해서는 '저작권자'와 별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중에 위 저작물에 대하여 국내외 제3자가 2차적저작물로서의 이용을 요청할 때, '서비스 제공업자'에게 먼저 요청이 오는 경우 '서비스 제공업자'는 제3자의 저작물 이용허락 요청 사실을 '저작권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15조 (저작물의 보증 등)

- ① '저작권자'는 '서비스 제공업자'가 이 계약상의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 장애가 되는 사정(계약 이전에 대상 저작물의 저작권을 처분하거나 권리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등)이 없고, 이 권리 허락 기간 중에도 '서비스 제공업자'의 동의 없이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한다.

- ② ‘저작권자’는 대상 저작물의 내용으로 인해 제3자의 저작권 등 법적 권리를 침해하여 손해를 끼친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다만 ‘서비스 제공업자’가 제공하거나 관여한 부분으로 인해 제3자의 저작권 등 법적 권리를 침해하게 된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업자’가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 ③ 해당 저작물이 제3자의 저작권 등 법적 권리를 침해했다고 볼 만한 객관적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 제2항에 따라 책임이 있는 자는 이에 대해 해명하고 해결하여야 한다. 만일 해명이 없거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 책임이 없는 상대방은 연재중단 등의 긴급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6조 (저작권격권의 존중)

- ① ‘서비스 제공업자’는 대상 저작물에 관한 ‘저작자’의 저작권격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 ② ‘서비스 제공업자’는 대상 저작물 및 그 복제물에 ‘저작자’의 실명 또는 ‘저작자’가 지정하는 이명(필명)을 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않는 등 ‘저작자’가 요구하는 바에 따라 올바르게 사용하여야 한다.
- ③ ‘서비스 제공업자’는 대상 저작물의 제호, 내용 또는 형식을 바꾸고자 할 때는 ‘저작자’의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서비스 제공업자’는 대상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의 변경을 할 수 있으나, 저작물의 본질적 내용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서비스 제공업자’는 대상 저작물과 관련하여 ‘저작자’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 ‘저작권자’가 ‘저작자’(창작자)가 아닌 경우 ‘서비스 제공업자’가 본조의 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저작권자’는 ‘저작자’의 의사표시나 동의 여부를 적시에 확인하여 ‘서비스 제공업자’에게 전달하여야 하고, 이를 보증한다.

제17조 (교정 및 편집)

- ① 대상 저작물의 교정과 편집은 ‘서비스 제공업자’가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저작권자’와 ‘서비스 제공업자’가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교정·편집 수행자의 상대방은 교정·편집 수행자에게 협력하여야 하며, ‘서비스 제공업자’는 자신이 수행한 교정·편집 결과물에 대하여 ‘저작권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18조 (원고의 반환 등)

- ① 계약기간의 만료 등으로 이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서비스 제공업자'는 '저작권자'로부터 받은 육필 원고나 원화 등 실물원고 기타 일체의 자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원고 또는 자료가 전자적 형태로 제공되었을 경우, 이 계약 종료 시 '서비스 제공업자'는 이를 파기하고, 이를 파기하였다는 서면 확인서를 만들어 '저작권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③ '서비스 제공업자'가 원고 또는 자료를 훼손 또는 분실하거나 본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제공업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다만, 자신의 책임 없는 사유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제공업자'는 대상 저작물을 구매(일정 기간 또는 영구 소장)한 이용자에게 차질 없이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제19조 제1항에 따른 성과의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자료를 '저작권자'와 협의하여 보존할 수 있다.

제19조 (서비스 제공업자의 성과 존중)

- ① '저작권자'는 저작물을 구성하는 스타일, 구성, 레이아웃 등 대상 작품의 원안을 편집하여 구성한 경우(가로페이지 만화를 세로 형태의 웹툰으로 변환하는 등) '서비스 제공업자'의 성과를 존중하여야 한다.
- ② '저작권자'가 이 계약이 종료된 후 '서비스 제공업자'가 구성한 제1항의 성과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자'와 '서비스 제공업자'가 별도의 서면 합의를 거쳐야 한다.

제20조 (권리·의무의 양도 등)

'저작권자'와 '서비스 제공업자'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는 이 계약상 권리·의무 또는 계약상 지위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21조 (계약 내용의 변경 및 보완)

- ① '저작권자'와 '서비스 제공업자'는 필요시 서면 합의에 따라 이 계약의 내용 중 일부를 변경할 수 있으며, 그 서면 합의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변경된 사항은 그다음 날부터 효력을 가진다.
- ② '저작권자'와 '서비스 제공업자'는 이 계약의 내용을 보충하거나,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부속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부속 합의는 이 계약의 내용과 배치되거나 위반하지 않는 범위로

한정한다.

제22조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

- ① '저작권자' 또는 '서비스 제공업자'가 이 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그 상대방은 ___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제대로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상대방은 대상 저작물의 연재가 시작되기 이전까지는 이 계약을 해지·해제할 수 있으며, 연재가 시작된 후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민법 등 관계 법령이 있는 경우에는 법정 해지·해제, 합의 해지·해제할 수 있다.

- ③ '저작권자' 또는 '서비스 제공업자'는 상대방이 더 이상 대상 저작물을 이 계약에 따라 연재할 의사가 없음을 서면으로 통지하거나, 상대방이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이 계약에 따른 연재를 계속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이 계약의 해지를 통고할 수 있다.
 1. 회생, 파산, 회사정리, 해산 또는 청산절차가 개시된 경우
 2. 발행한 어음, 수표가 지급 거절되는 경우
 3. 제3자에게 인수 또는 합병되거나 영업을 위하여 필요한 주요한 재산이 제3자에게 양도되는 경우
 4. 영업을 위하여 필요한 주요 재산에 대하여 법원의 보전처분 또는 강제집행이 개시되고 60일 이내에 해소되지 않는 경우
 5. 고의적인 30일 이상의 계약 불이행 및 연락 두절 등으로 연재를 지속할 수 없는 사정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6. 작품 표절, 사회적 물의로 인한 계약 상대방의 손해, 범죄 등이 법원의 판결 등으로 객관적으로 입증된 경우
- ④ 이 계약이 해지되면, '서비스 제공업자'는 다음과 같은 책임을 부담한다.
 1. '서비스 제공업자'는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저작권자'에게 해지 시점 (제2호의 단서 기간 포함)까지 발생한 모든 대금(원고료, RS 등)을 지급한다.
 2. '서비스 제공업자'는 즉시 대상 저작물의 복제, 전송 등 모든 서비스를 중지한다. 다만, '서비스 제공업자'는 대상 저작물의 이용자를 위해 필요한 범위 안에서 3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서비스를 할 수 있다.

제23조 (손해배상)

- ① 이 계약을 고의 또는 과실로 위반한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②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 사실은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24조 (불가항력)

천재지변, 자연재해, 전쟁, 내란, 폭동 그 밖의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하여 '저작권자' 또는 '서비스 제공업자'가 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계약 불이행에 대한 서로의 책임을 면제하며, 쌍방이 서면 합의를 통해 후속 조치를 결정한다.

제25조 (성희롱 등의 금지)

- ① '저작권자'와 '서비스 제공업자'는 상대방 또는 상대방의 임직원 등 관련자로부터 객관적인 증거로 확인되는 성희롱·성폭력 피해를 입은 경우 행위자의 업무 배제 등 적절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고, 상대방은 이러한 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 ② '저작권자' 또는 '서비스 제공업자'는 상대방 또는 상대방의 임직원 등 관련자로부터의 성희롱·성폭력으로 인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나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이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제26조 (비밀유지)

- ① '저작권자'와 '서비스 제공업자'는 이 계약의 내용 및 계약 이행 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의 영업상 비밀 정보를 상대방의 사전 승낙 없이 제3자에게 공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아래 각호의 경우는 제1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1. 계약서 체결 또는 검토를 위하여 비밀유지의무를 지는 변호사 등 전문가, 만화, 예술 또는 저작권 관련 공공기관 및 설립에 필요한 법령상 절차를 거친 협회·단체·조합 등의 자문을 받는 경우
 2. 수사나 소송 등의 분쟁으로 인해 수사기관 또는 사법기관에 제출하는 경우
 3. 법령에 따른 신고나 조사를 위한 목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4. 그 밖의 법령에 의해 정보의 공개가 강제되는 경우
- ③ '저작권자'와 '서비스 제공업자'는 이 계약의 이행 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유의하여 취급하여야 하며, 상대방 동의 없이 이를 공개, 누설 또는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7조 (저작권자의 정보 이용)

‘저작권자’는 ‘서비스 제공업자’가 이 계약에 따른 홍보, 판매 등을 위하여 ‘저작권자’가 제공한 정보를 스스로 또는 제3자를 통하여 공개 또는 이용하는 것을 허락한다. 다만, ‘저작권자’의 실명과 초상의 공개 또는 이용에 대하여는 ‘저작권자’와 ‘서비스 제공업자’가 별도 합의하여 결정한다.

제28조 (저작권 침해의 공동대응)

‘저작권자’와 ‘서비스 제공업자’는 대상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 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상대방에게 자료를 제공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29조 (예술인고용보험)

- ① ‘서비스 제공업자’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경우 ‘저작권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고용보험 취득신고 등 자격관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 ② ‘서비스 제공업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저작권자’와 ‘서비스 제공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비스 제공업자’는 ‘저작권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를 ‘저작권자’에게 지급하는 보수에서 원천공제하여 납부할 수 있다.

제30조 (분쟁 해결)

- ① 이 계약에서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저작권자’와 ‘서비스 제공업자’가 자율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 ② ‘저작권자’ 또는 ‘서비스 제공업자’는 소송에 앞서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을 받을 수 있다.
- ③ 이 계약과 관련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한다.

제31조 (설명 의무)

- ① ‘서비스 제공업자’는 ‘저작권자’에게 이 계약서의 주요 내용과 취지를 설명해야 한다. 다만, ‘저작권자’의 의사에 따라 추가되거나 변경된 계약의 내용은 ‘저작권자’가 ‘서비스 제공업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설명과 별개로, ‘서비스 제공업자’는 ‘저작권자’가 계약서 내용 전문을

최초로 확인한 시점으로부터 최소 15일의 기간을 보장하여 ‘저작권자’가 계약 전 법률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어야 한다.

제32조 (효력 발생)

이 계약은 계약체결일로부터 효력이 발생된다.

이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저작권자’, ‘서비스 제공업자’가 서명 날인한 다음 각 1통씩 보관한다.

_____년 __월 __일

“저작권자”

성 명(이명) :

생 년 월 일 :

주 소 :

기 명 날 인 : _____(인)

입 금 계 좌 :

“서비스 제공업자”

상 호 :

사업자번호 :

주 소 :

대 표 자 : _____(인)



[별표4]

만화 저작물 대리중개 계약서(제2조 제4호 관련)

저작권자¹⁾ _____(이하 ‘저작권자’라고 한다)와(과) 대리중개인 _____(이하 ‘대리중개인’ 이라고 한다)는(은) 아래의 저작물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대리중개 계약을 체결한다.

저작물의 표시
제호(가제) :

1) 저작권자는 저작재산권을 보유한 ‘저작권자’와 저작재산권을 양도받아 권리를 행사하는 ‘저작재산권자’를 포함한다.

제1조 (계약의 목적)

이 계약은 ‘저작권자’가 대상 저작물에 대한 대리중개를 ‘대리중개인’에게 위임하고, ‘대리중개인’은 이를 대리중개함에 있어 양 당사자 사이의 권리·의무 및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1. “대상 저작물”은 위에 표시한, 이 계약의 목적이 되는 저작물을 말한다.
2. “복제”는 대상 저작물을 인쇄·사진촬영·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한다.
3. “공중송신”은 대상 저작물을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4. “전송”은 공중송신 중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물 등을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그에 따라 이루어지는 송신을 포함한다.
5. “배포”는 대상 저작물 원본 또는 그 복제물을 공중에게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아니하고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6. “발행”은 대상 저작물을 공중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복제·배포하는 것을 말한다.
7. “배타적발행권”은 대상 저작물을 발행하거나 복제·전송(이하 “발행등”이라 한다.)할 권리를 가진 자가 그 저작물을 발행 등에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배타적 권리를 갖는 것을 말한다. 다만, 출판권은 제외한다.

8. “출판”은 대상 저작물을 인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문서 또는 도화로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
9. “온라인 서비스”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대상 저작물을 복제, 전송하는 것을 말한다.
10. “대리중개”란 저작재산권자, 배타적발행권자, 출판권자, 저작인접권자 또는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를 가진 자를 위하여 그 권리의 이용에 관한 대리 또는 중개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11. “사용료”는 대상 저작물을 이용하는 이용자가 저작권자 또는 대리중개인에게 지급하는 이용대가를 말한다.
12. “수수료”란 저작권자가 대리중개인에게 대리 중개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13. 본조에서 정하지 않은 용어의 정의는 관련 법령과 상관습에 따른다.

제3조 (계약기간)

- ① 이 계약의 계약기간은 계약 체결 후 ___년으로 한다.
- ② ‘저작권자’와 ‘대리중개인’은 계약기간 만료일 __개월 전까지 계약 연장에 합의할 수 있고, 그 경우 이 계약은 같은 조건으로 ___년간 연장된다. 다만, ‘저작권자’와 ‘대리중개인’은 연장에 합의하면서 계약의 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합의가 없는 한 이 계약은 기간의 만료로 종료된다.
- ④ 이 계약기간 중에 체결된 제3자와의 계약에 관해서는 해당 계약에 한하여 해당 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이 계약의 효력이 유지된다.

제4조 (권한의 부여)

‘저작권자’는 ‘대리중개인’에게 대상 저작물에 관하여 아래 표 중 선택한 항목에 관련된 저작권(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2차적저작물작성권) 행사의 대리중개를 위임하며, 해당 항목의 독점 여부를 기재한다.(아래 표에 기재되지 않은 ‘저작권자’와 ‘대리중개인’의 합의 항목은 표에 항목을 추가한다.) 위임하기로 선택한 항목에는 수수료율(사용료 중 대리중개인에게 지급되는 수수료 비율)을 기재한다. 여기서 특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로 합의하여 정한다.

항목	국 내			국 외		
	위임여부	독점여부	독점여부	위임여부	독점여부	수수료율(%)
출판						
전자책 발행						

온라인 서비스(인터넷 연재)						
영상화(애니메이션화)						
영상화(영화, 드라마 등 실사화)						
공연화(뮤지컬, 연극 등)						
상품화(유형물)						
이모티콘, NFT 등 상품화(무형물)						
게임화						
어문저작물작성						
음성저작물작성						
음악저작물작성						
광고						
(추가기재가능)						

제4조를 통해 부여하는 권한은 모든 권한을 위임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한 항목에 관련된 저작권 권한을 위임하는 것임

제5조 (저작권자의 권리 의무)

- ① ‘저작권자’는 본 계약 체결 이후, 대상 저작물에 관하여 본 계약과 저촉되는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되고, 스스로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본 계약과 저촉되는 권리 행사를 해서는 아니 된다.
- ② ‘저작권자’는 본 계약 체결 이후 ____일 이내에 대상 저작물에 대한 자료를 ‘대리중개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③ ‘저작권자’는 본 계약 체결 이후에도 ‘대리중개인’이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충실히 이를 제공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 ④ ‘저작권자’는 ‘대리중개인’과의 계약의 범위를 넘어서는 내용을 요구할 수 없다.

제6조 (대리중개인의 권리 의무)

- ① ‘대리중개인’은 이 계약의 내용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대리중개인’은 대리중개 업무를 처리하며 ‘저작권자’를 위하여 최선의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② ‘대리중개인’은 대상 저작물의 대리중개 과정을 ‘저작권자’와 공유하여야 한다. ‘대리중개인’은 제3자와 협상 시 저작권자의 의사에 따라 계약기간, 이용허락조건 및 사용료 등 계약의 교섭을 진행하고, 제3자의 제안 내용 및 협상의 진행 과정을 ‘저작권자’와 공유하여야 한다.
- ③ ‘대리중개인’은 대상 저작물에 대하여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반드시

‘저작권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대리중개인’은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한 후, 즉시 해당 계약서의 사본을 ‘저작권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④ ‘저작권자’가 계약에 따른 대리중개 업무 처리 현황의 보고를 요청할 경우, ‘대리중개인’은 지체 없이 해당 내용을 정리하여 ‘저작권자’에게 보고한다.
- ⑤ ‘대리중개인’은 이 계약에 따른 사무를 처리하면서 대상 저작물에 관하여 권리를 취득한 경우, 이를 ‘저작권자’에게 온전히 이전 또는 양도하여야 한다.
- ⑥ ‘저작권자’와 ‘대리중개인’은 협의하여 대상 저작물의 대리중개 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이 경우 ‘대리중개인’은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대리중개인’은 상표나 디자인 기타 유사한 지식재산권의 등록·이용이 필요한 경우, 당사자 간 특약을 추가할 수 있음

제7조 (수수료의 지급)

- ① ‘저작권자’는 ‘대리중개인’에게 사용료의 수령 권한을 부여한다.

‘저작권자’는 사용료 수령 권한을 주지 않을 수도 있으나, 이 경우 정산의무는 ‘저작권자’에게 있다.

- ② ‘저작권자’는 사용료를 기준으로 제4조의 수수료율에 따라 ‘대리중개인’에게 수수료를 지급한다.
- ③ ‘저작권자’와 ‘대리중개인’이 사용료에서 비용을 공제한 뒤 수수료를 산정하기로 합의하는 경우, ‘대리중개인’은 대리중개와 관련하여 직접 소요되는 실제비용, 제3자에게 불가피하게 지급하는 비용(중개수수료 등), 기타 ‘저작권자’의 동의하에 지출한 비용에 한하여 사용료에서 공제할 수 있다. 다만, ‘저작권자’와 ‘대리중개인’은 서면으로 합의하여 공제되는 범위 또는 항목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④ ‘대리중개인’은 ___개월에 한 번씩 사용료에서 수수료를 제한 금액(이하 ‘정산금’)을 ‘저작권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지급한다.

제8조 (정산 등)

- ① ‘대리중개인’이 ‘저작권자’에게 정산금을 지급할 때 ‘대리중개인’은 ‘저작권자’에게 이 계약의 대리중개에 따른 사용료 내역, 수수료 계산 내역, 정산금 산정내역 등을 포함한 정산자료 일체를 제공하여야 한다. 해당 정산 주기에 ‘저작권자’에게 지급할 대가가 없는 경우에도 같다.
- ② ‘대리중개인’은 사용료 내역, 수수료 계산 내역, 정산금 산정내역 등과 관련된 이 계약에 따른 장부 및 자료를 별도로 유지, 보관하고, 이를 이 계약 종료 후

5년 후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 ③ ‘저작권자’가 제2항의 기간 동안 장부 또는 자료의 열람 또는 제공을 요청할 경우, ‘대리중개인’은 지체 없이 이에 응해야 한다.

제9조 (비용의 부담)

- ① 대상 저작물을 창작하는 비용은 ‘저작권자’가 부담한다.
- ② 대상 저작물의 대리중개 및 그에 수반하는 비용은 ‘대리중개인’이 부담한다.
- ③ 제7조 제3항에 따른 서면합의에 의하여 저작권자가 부담하기로 한 것은 예외로 한다.

제10조 (저작인격권의 존중)

- ① ‘대리중개인’은 대상 저작물에 관한 ‘저작자’의 저작인격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 ② ‘대리중개인’은 대상 저작물과 관련하여 ‘저작자’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 (저작물의 보증 등)

- ① ‘저작권자’는 ‘대리중개인’이 이 계약상의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 장애가 되는 사정이 없고, 이 계약기간 중에도 ‘대리중개인’의 동의 없이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한다.
- ② ‘저작권자’는 대상 저작물의 내용으로 인해 제3자의 저작권 등 법적 권리를 침해하여 손해를 끼친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다만 ‘대리중개인’이 제공하거나 관여한 부분으로 인해 제3자의 저작권 등 법적 권리를 침해하게 된 경우에는 ‘대리중개인’이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 ③ 계약기간 만료 등 이 계약의 종료 시 ‘대리중개인’의 귀책 사유로 ‘저작권자’에게 대상 저작물에 관한 권리가 온전히 환원되지 못할 경우, ‘대리중개인’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12조 (원고의 반환)

- ① 계약기간의 만료 등으로 이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대리중개인’은 ‘저작권자’로부터 받은 육필 원고나 원화 등 실물원고 기타 일체의 자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원고 또는 자료가 전자적 형태로 제공되었을 경우, 이 계약 종료 시 ‘대리중개인’은 이를 모두 파기하고, 이를 파기하였다는 서면 확인서를 만들어 ‘ 저작

권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③ '대리중개인'이 원고 또는 자료를 훼손 또는 분실하거나 본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대리중개인'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다만, 자신의 책임 없는 사유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리중개인'은 제13조 제1항에 따른 성과의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자료를 '저작권자'와 협의하여 보존할 수 있다.

제13조 (대리중개인의 성과 존중)

- ① '저작권자'는 대상 저작물을 본 계약에 따라 이용하며 '대리중개인'이 상당한 투자와 노력으로 홍보자료 등을 작성한 경우 '대리중개인'의 성과를 존중하여야 한다.
- ② '저작권자'가 이 계약이 종료된 후 '대리중개인'이 구성한 제1항의 성과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자'와 '대리중개인'이 별도의 서면 합의를 거쳐야 한다.

제14조 (권리·의무의 양도 등)

'저작권자'와 '대리중개인'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는 이 계약상 권리·의무 또는 계약상 지위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5조 (계약 내용의 변경 및 보완)

- ① '저작권자'와 '대리중개인'은 필요시 서면 합의에 따라 이 계약의 내용 중 일부를 변경할 수 있으며, 그 서면 합의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변경된 사항은 그다음 날부터 효력을 가진다.
- ② '저작권자'와 '대리중개인'은 이 계약의 내용을 보충하거나,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부속 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부속 합의는 이 계약의 내용과 배치되거나 위반하지 않는 범위로 한정한다.

제16조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

- ① '저작권자' 또는 '대리중개인'이 이 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그 상대방은 ___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제대로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상대방은 본 계약의 이행이 시작되기 이전까지는 이 계약을 해지·해제할 수 있으며, 이행이 시작된 후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민법 등 관계 법령이 있는 경우에는 법정 해지·해제, 합의 해지·해제할 수 있다.

- ③ ‘저작권자’ 또는 ‘대리중개인’은 상대방이 더 이상 대상 저작물을 이 계약에 따라 대리중개할 의사가 없음을 서면으로 통지하거나, 상대방이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이 계약에 따른 이행을 계속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이 계약의 해지를 통고할 수 있다.
1. 회생, 파산, 회사정리, 해산 또는 청산절차가 개시된 경우
 2. 발행한 어음, 수표가 지급 거절되는 경우
 3. 제3자에게 인수 또는 합병되거나 영업을 위하여 필요한 주요한 재산이 제3자에게 양도되는 경우
 4. 영업을 위하여 필요한 주요 재산에 대하여 법원의 보전처분 또는 강제집행이 개시되고 60일 이내에 해소되지 않는 경우
 5. 고의적인 30일 이상의 계약 불이행 및 연락 두절 등으로 대리중개를 지속할 수 없는 사정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6. 작품 표절, 사회적 물의로 인한 계약 상대방의 손해, 범죄 등이 법원의 판결 등으로 객관적으로 입증된 경우

제17조 (손해배상)

- ① 이 계약을 고의 또는 과실로 위반한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②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 사실은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8조 (불가항력)

천재지변, 자연재해, 전쟁, 내란, 폭동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하여 ‘저작권자’ 또는 ‘대리중개인’이 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계약 불이행에 대한 서로의 책임을 면제하며, 쌍방이 서면 합의를 통해 후속 조치를 결정한다.

제19조 (성희롱 등의 금지)

- ① ‘저작권자’와 ‘대리중개인’은 상대방 또는 상대방의 임직원 등 관련자로부터 객관적인 증거로 확인되는 성희롱·성폭력 피해를 입은 경우 행위자의 업무 배제 등 적절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고, 상대방은 이러한 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 ② ‘저작권자’ 또는 ‘대리중개인’은 상대방 또는 상대방의 임직원 등 관련자로부터의 성희롱·성폭력으로 인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나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이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제20조 (비밀유지 등)

- ① ‘저작권자’와 ‘대리중개인’은 이 계약의 내용 및 계약 이행 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의 영업상의 비밀 정보를 상대방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개 또는 누설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아래 각호의 경우는 제1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1. 계약서 체결 또는 검토를 위하여 비밀유지의무를 지는 변호사 등 전문가, 만화, 예술 또는 저작권 관련 공공기관 및 설립에 필요한 법령상 절차를 거친 협회·단체·조합 등의 자문을 받는 경우
 2. 수사나 소송 등의 분쟁으로 인해 수사기관 또는 사법기관에 제출하는 경우
 3. 법령에 따른 신고나 조사를 위한 목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4. 그 밖의 법령에 의해 정보의 공개가 강제되는 경우
- ③ ‘저작권자’와 ‘대리중개인’은 이 계약의 이행 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유의하여 취급하여야 하며, 상대방 동의 없이 이를 공개, 누설 또는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 (저작권자의 정보 이용)

‘저작권자’는 ‘대리중개인’이 이 계약에 따른 대리중개 사업을 위하여 ‘저작권자’가 제공한 정보를 스스로 또는 제3자를 통하여 공개 또는 이용하는 것을 허락한다. 다만, ‘저작자’의 실명과 초상의 공개 또는 이용에 대하여는 ‘저작자’와 ‘대리중개인’이 별도 합의하여 결정한다.

제22조 (저작권 침해의 공동대응)

‘저작권자’와 ‘대리중개인’은 대상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 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상대방에게 자료를 제공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23조 (분쟁 해결)

- ① 이 계약에서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저작권자’와 ‘대리중개인’이 자율적으로 해결

하도록 노력한다.

- ② ‘저작권자’ 또는 ‘대리중개인’은 소송에 앞서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을 받을 수 있다.
- ③ 이 계약과 관련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한다.

제24조 (설명 의무)

- ① ‘대리중개인’은 ‘저작권자’에게 이 계약서의 주요 내용과 취지를 설명해야 한다. 단, ‘저작권자’의 의사에 따라 추가되거나 변경된 계약의 내용은 ‘저작권자’가 ‘대리중개인’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설명과 별개로, ‘대리중개인’은 ‘저작권자’가 계약서 내용 전문을 최초로 확인한 시점으로부터 최소 15일의 기간을 보장하여 ‘저작권자’가 계약 전 법률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어야 한다.

제25조 (효력 발생)

이 계약은 계약체결일로부터 효력이 발생된다.

이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저작권자, 대리중개인이 서명 날인한 다음 각 1통씩 보관한다.

_____년 __월 __일

“저작권자”

성 명(이명) :

생 년 월 일 :

주 소 :

기 명 날 인 : _____(인)

입 금 계 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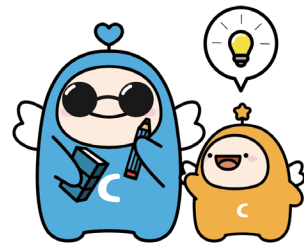
“대리중개인”

상 호 :

사업자번호 :

주 소 :

대 표 자 : _____ (인)



[별표5]

공동 저작 계약서(제2조 제5호 관련)

_____ (이하 '저작자1'이라 한다)와(과) _____ (이하 '저작자2'라 한다)
는(은) 아래의 저작물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동 저작 계약을 체결한다.

대상 저작물의 표시
제호(가제) :

제1조 (계약의 목적)

이 계약은 '저작자1'과 '저작자2'가 대상 저작물을 공동으로 저작하고 저작권을 공동으로 보유함에 있어 양자 사이의 권리·의무 및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1. “대상 저작물”은 위에 표시한, 이 계약의 목적이 되는 저작물을 말한다.
2. “공동저작물”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서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3. “완전원고”는 이를 바탕으로 상대방이 자신의 업무 부분에 대한 창작업무를 진행할 수 있을 수준으로 완성된 원고를 말한다.
4. 본조에서 정하지 않은 용어의 정의는 관련 법령과 상관습에 따른다.

제3조 (계약기간)

- ① 이 계약의 계약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___년/___회 차/대상 저작물의 연재 종료일)까지로 한다.
- ② '저작자1'과 '저작자2'는 계약기간 만료일 __개월 전까지 계약 연장에 서면으로 합의할 수 있고, 그 경우 이 계약은 같은 조건으로 ___년간 연장된다.
다만, '저작자1'과 '저작자2'는 연장에 합의하면서 계약의 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합의가 없는 한 계약은 기간의 만료로 종료된다.
- ④ 계약기간의 종료에도 불구하고, 이 계약의 계약기간 중 작성된 대상 저작물의 저작권의 귀속에 대해서는 이 계약을 따른다.

제4조 ('저작자1', '저작자2'의 창작 담당)

- ① '저작자1'과 '저작자2'는 대상 저작물 중 아래 부분을 창작한다.
'저작자1':
'저작자2':
- ② '저작자1'과 '저작자2'는 상대방의 창작 영역에 대해 조언을 할 수 있고, 상대방은 이를 최대한 수용하고자 노력한다.
- ③ '저작자1'과 '저작자2'의 서면 합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임의로 계약상의 의무를 제3자에게 위임할 수 없다.

제5조 (대상 저작물의 지분 등)

- ① 대상 저작물은 '저작자1'과 '저작자2'의 공동저작물로서, 저작권은 '저작자1'이 ____%, '저작자2'가 ____%의 지분으로 갖는다.
- ② 대상 저작물의 저작권 등록은 '저작자1'과 '저작자2' 양자 모두를 공동저작권자로 등록하고, 지분 비율을 명시하여야 한다.
- ③ '저작자1', '저작자2'가 별도의 합의를 하지 않는 한, 대상 저작물의 수익 배분은 제1항의 지분 비율에 따른다.

제6조 (권리행사 등)

- ① 대상 저작물에 관한 「저작권법」상의 권리행사는 '저작자1'과 '저작자2'의 합의에 따른다. 이 경우 '저작자1'과 '저작자2'는 신의에 반하여 합의의 성립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 ② '저작자1'과 '저작자2'는 그들 중에서 제1항의 권리를 대표하여 행사할 수 있는 자를 정할 수 있다.

제7조 (원고의 인도)

- ① '저작자1'과 '저작자2'는 합의를 통해 정한 일정에 맞추어 창작 담당 분야의 완전 원고를 상대방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합의하여 일정을 변경할 수 있다.
- ② '저작자1'과 '저작자2'는 공동창작이 양자가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는 과정임을 인식하고, 대상 저작물의 온전하고 성공적인 완성을 위해 상대방에게 적극 협조한다.

제8조 (저작권의 양도, 상속 등)

- ① '저작자1', '저작자2'가 자신의 저작권 지분을 양도하거나 질권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② '저작자1' 또는 '저작자2'가 사망한 경우 사망자의 대상 저작물 저작권 지분은 사망자의 상속인에게 상속된다. 다만,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귀속된다.
- ③ '저작자1', '저작자2'는 대상 저작물의 자신의 저작권 지분을 포기할 수 있다. 포기한 자의 저작권 지분은 상대방에게 귀속된다.

제9조 (저작인격권의 존중)

- ① '저작자1', '저작자2'는 대상 저작물에 대한 저작인격권이 충실히 실현될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한다.
- ② '저작자1', '저작자2'는 대상 저작물의 제호, 내용 또는 형식 등을 바꾸고자 할 때는 반드시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③ '저작자1', '저작자2'는 대상 저작물의 저작권을 행사함에 있어 '저작자1', '저작자2' 모두를 공동저작권자로 표시해야 한다.

제10조 (저작물의 내용에 따른 책임)

- ① 대상 저작물이 저작권 등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여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귀책 사유가 있는 당사자가 그에 대한 책임을 진다.
- ② '저작자1' 또는 '저작자2'는 자신의 책임 부분 이상을 배상하였을 때에는 상대방에게 이에 따른 구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1조 (원고의 반환)

- ① 대상 저작물의 완전원고가 육필원고나 원화 등의 실물원고이고, 이를 대상 저작물을 훼손하지 않고 분리할 수 있을 경우, 상대방이 반환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를 상대방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완전원고가 전자적 형태로 전송되었을 경우에는 상대방은 이를 파기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파기 사실을 확인하는 서면 교부를 요구할 수 있다.
- ② 원고 또는 자료를 제공받은 상대방이 원고 또는 자료를 훼손 또는 분실하거나 본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상대방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다만, 자신의 책임 없는 사유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 (권리·의무의 양도)

‘저작자1’과 ‘저작자2’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는 이 계약상 권리·의무 또는 계약상 지위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3조 (계약 내용의 변경)

이 계약은 ‘저작자1’과 ‘저작자2’ 쌍방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변경될 수 있다.

제14조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

- ① ‘저작자1’ 또는 ‘저작자2’가 이 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그 상대방은 ___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제대로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상대방은 공동저작의 착수 이전까지는 이 계약을 해지·해제할 수 있으며, 공동저작의 착수 이후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민법 등 관계 법령이 있는 경우에는 법정 해지·해제, 합의 해지·해제할 수 있다.

- ③ ‘저작자1’ 또는 ‘저작자2’는 상대방이 더 이상 대상 저작물을 이 계약에 따라 공동 창작할 의사가 없음을 서면으로 통지하거나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이 계약에 따른 공동창작을 계속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즉시 서면으로 이 계약의 해지를 통고할 수 있다.
 1. 회생, 파산, 회사정리, 해산 또는 청산절차가 개시된 경우
 2. 발행한 어음, 수표가 지급 거절되는 경우
 3. 제3자에게 인수 또는 합병되거나 영업을 위하여 필요한 주요한 재산이 제3자에게 양도되는 경우
 4. 영업을 위하여 필요한 주요 재산에 대하여 법원의 보전처분 또는 강제집행이 개시되고 60일 이내에 해소되지 않는 경우
 5. 고의적인 30일 이상의 계약 불이행 및 연락 두절 등으로 공동창작을 지속할 수 없는 사정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6. 작품 표절, 사회적 물의로 인한 계약 상대방의 손해, 범죄 등이 법원의 판결 등으로 객관적으로 입증된 경우
- ④ 이 계약이 해지되면 대상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의 귀속 및 행사는 양자간 별도 합의가 없는 경우 「저작권법」 등 관련 법률에 따른다.

제15조 (손해배상)

- ① 본 계약을 고의 또는 과실로 위반한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②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6조 (불가항력)

천재지변, 자연재해, 전쟁, 내란, 폭동 등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저작자1' 또는 '저작자2'가 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계약 불이행에 대한 서로의 책임을 면제하고, 쌍방이 서면 합의를 통해 후속조치를 결정한다.

제17조 (성희롱 등의 금지)

- ① '저작자1'과 '저작자2'는 상대방 또는 상대방의 임직원 등 관련자로부터 객관적인 증거로 확인되는 성희롱·성폭력 피해를 입은 경우 행위자의 업무 배제 등 적절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고, 상대방은 이러한 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 ② '저작자1' 또는 '저작자2'는 상대방 또는 상대방의 임직원 등 관련자로부터의 성희롱·성폭력으로 인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나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이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제18조 (비밀유지 등)

- ① '저작자1'과 '저작자2'는 이 계약의 내용 및 계약 이행 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의 영업상 비밀 정보를 상대방의 사전 승낙 없이 제3자에게 공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아래 각호의 경우는 제1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1. 계약서 체결 또는 검토를 위하여 비밀유지의무를 지는 변호사 등 전문가, 만화, 예술 또는 저작권 관련 공공기관 및 설립에 필요한 법령상 절차를 거친 협회·단체·조합 등의 자문을 받는 경우
 2. 수사나 소송 등의 분쟁으로 인해 수사기관 또는 사법기관에 제출하는 경우
 3. 법령에 따른 신고나 조사를 위한 목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4. 그 밖의 법령에 의해 정보의 공개가 강제되는 경우
- ③ '저작자1'과 '저작자2'는 이 계약의 이행 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유의하여 취급하여야 하며, 상대방 동의 없이 이를 공개, 누설 또는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 (저작권 침해의 공동대응)

‘저작자1’과 ‘저작자2’는 대상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 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상대방에게 자료를 제공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20조 (분쟁 해결)

- ① 이 계약에서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저작자1’과 ‘저작자2’가 자율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 ② ‘저작자1’ 또는 ‘저작자2’는 소송에 앞서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을 받을 수 있다.
- ③ 이 계약과 관련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한다.

제21조 (효력 발생)

본 계약은 계약체결일로부터 효력이 발생된다.

이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저작자1’, ‘저작자2’가 서명 날인한 다음 각 1통씩 보관한다.

_____년 __월 __일

“저작자1”

성 명(이명) :

생 년 월 일 :

주 소 :

기 명 날 인 : _____(인)

입 금 계 좌 :

“저작자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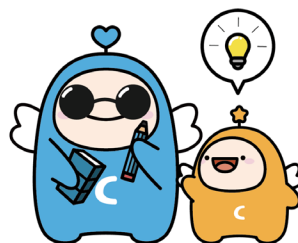
성 명(이명) :

생 년 월 일 :

주 소 :

기 명 날 인 : _____(인)

입 금 계 좌 :



[별표6]

기획만화 계약서(제2조 제6호 관련)

저작자____(이하 ‘저작자’라고 한다)와(과) 발주자 ____ (이하 ‘발주자’라고 한다)는(은) 아래의 저작물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기획만화 출판 계약을 체결한다.

대상 저작물의 표시
제호(가제) :

제1조 (계약의 목적)

이 계약은 ‘발주자’의 기획에 따라 ‘저작자’가 창작한 기획만화인 대상 저작물에 관하여 양 당사자 사이의 권리·의무 및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1. “대상 저작물”은 위에 표시한, 이 계약의 목적이 되는 저작물을 말한다.
2. “복제”는 대상 저작물을 인쇄·사진촬영·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한다.
3. “배포”는 대상 저작물 원본 또는 그 복제물을 공중에게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아니하고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4. “발행”은 대상 저작물을 공중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복제·배포하는 것을 말한다.
5. “출판”은 대상 저작물을 인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문서 또는 도화로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
6. “선급금”은 대상 저작물의 향후 판매 부수를 예상하고, 해당 부수만큼 미리 지급하는 인세를 말한다.
7. “2차적저작물”은 대상 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말한다.
8. “완전원고”는 교정·편집만 거치면 출판이 가능한 스케치, 채색, 식자 배열 등 창작 작업이 끝난 원고를 말한다.
9. “기획만화”란 발주자가 주도하여 미리 마련한 배경, 이야기를 바탕으로 작가가 작업을 맡아 제작하는 출판 형식의 만화를 말한다.

본 계약서의 기획만화는 작가가 저작권을 보유한 만화 또는 캐릭터 등을 이용한 경우는 제외한다.

10. 본조에서 정하지 않은 용어의 정의는 관련 법령과 상관습에 따른다.

제3조 (계약기간)

- ① 이 계약의 계약기간은 ____년 __월 __일부터 ____년 __월 __일까지로 한다.
- ② ‘저작자’와 ‘발주자’는 계약기간 만료일 __개월 전까지 계약 연장에 서면으로 합의할 수 있고, 그 경우 이 계약은 같은 조건으로 __년간 연장된다. ‘저작자’와 ‘발주자’는 연장에 합의하면서 계약의 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합의가 없는 한 이 계약은 기간 만료로 종료되며, ‘발주자’의 권리는 제4조 제1항의 기간(양도기간)만큼 존속한다.

제4조 (저작권재산권의 귀속)

- ① ‘저작자’는 대상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재산권 중 다음에 해당하는 권리를 각 양도 기간 동안 발주자에게 양도한다.

저작권재산권의 종류	포함 여부(○ 또는 ×)	양도기간 ¹⁾	비고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1) 예시) ① 제3조 제1항의 계약기간 동안 ② ____년 __월 __일부터 ____년 __월 __일까지 ③ 영구 등

- ② ‘저작자’는 대상 저작물에 관하여 이 계약에서 명시적으로 ‘발주자’에게 허락한 권리 외의 모든 권리를 갖는다.
- ③ 대상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와 대상 저작물의 캐릭터에 대한 권리, 속편, 후속 시즌, 스피노프(spin-off), 프리퀄(prequel), 시퀄(sequel) 등 관련 저작물을 제작할 권리는 이 계약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저작자’와 ‘발주자’가 이들 권리에 대해 상대방과 계약하고자 하는 경우 부속합의서 또는 별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5조 (권리의 등록)

- ① ‘발주자’와 ‘저작자’는 「저작권법」 제54조에 따라 대상 저작물의 저작권 양도 등록을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발주자’가 저작권 양도 등록을 하는 경우 ‘저작자’는 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발주자’에게 제공하는 등 이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 ③ ‘발주자’는 양도기간이 만료되거나, 해지·해제 등으로 이 계약이 종료된 후에는 (지체없이 / ___일 이내에) 저작재산권 양도 등록을 말소하고, ‘저작자’에게 말소하였다는 증빙 자료를 교부해야 한다.

거래안전을 위해 ‘지체없이’가 원칙이나, 합의에 따라서 일 수를 정할 수 있다.

제6조 (완전원고의 인도와 발행 시기)

- ① ‘저작자’는 ___년 ___월 ___일까지 ‘발주자’에게 완전원고를 인도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인도 시한을 변경할 수 있다.
- ② 완전원고의 내용은 ‘저작자’와 ‘발주자’가 본 계약 체결 이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저작자’는 해당 완전원고 수준의 원고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③ ‘발주자’는 ‘저작자’로부터 완전원고를 인도받은 날로부터 ___개월 내에 출판물 초판을 발행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저작자’의 동의를 얻어 발행일을 변경할 수 있다.

제7조 (작품의 검수)

- ① ‘발주자’는 대상 저작물의 창작 과정에서 ‘저작자’에게 대상 저작물의 내용이나 작화를 수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수정요구 사항은 계약 체결 당시의 기획 의도나 의뢰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야 하고, 합리적인 수정 기간이 부여되어야 한다.
- ② ‘발주자’는 수정을 요구할 때 수정요구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서면 형식으로 ‘저작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③ ‘발주자’의 수정 요구는 시나리오, 콘티, 스케치(선화 이전), 선화, 채색 등 창작 단계를 막론하고 하나의 부분에 대하여 ___회 이내로 한다.
- ④ ‘저작자’는 제3항의 각 단계마다 ‘발주자’에게 그 시점까지 ‘저작자’가 창작한 부분의 검수를 요청할 수 있다. ‘발주자’는 합리적인 기간 내에 검수 회신을 해야 한다. ‘발주자’는 합격 검수를 마친 내용에 대해서는 재차 수정을 요구할 수 없다.
- ⑤ 본조 제1항 내지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저작자’와 ‘발주자’는 추가로 상당한 대가의 지급을 하고 대상 저작물을 수정하도록 합의할 수 있다.

제3항 관련, 통상의 경우 하나의 부분에 대한 수정 요구는 3회 이내로 한다.

제8조 (대가의 지급)

제8조는 다음 중 _____ 방식으로 한다.

[일시불 방식]

- ① ‘발주자’는 이 계약에 따라 권리를 부여받는 대가로 ‘저작자’에게 _____ 원을 지급한다. ‘발주자’는 본조의 대가를 ‘저작자’가 지정하는 은행 계좌로 지급한다.
- ② ‘발주자’는 아래와 같이 대금을 분할하여 지급한다.
- 계약금 : 계약체결시 _____ 원
- 중도금 : _____ 년 _____ 월 _____ 일까지 _____ 원
- 잔금 : _____ 년 _____ 월 _____ 일까지 _____ 원
- (또는) 잔금 : 최종 원고 인도 후 _____ 일 이내에 _____ 원

[인세 지급 방식]

- ① ‘발주자’는 아래와 같이 ‘저작자’에게 정가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일정 부수(발행부수 또는 판매부수)를 곱한 금액을 지정 계좌를 통하여 저작권사용료로 지급한다. 이때 ‘저작자’는 ‘발주자’에게 발행부수 또는 판매부수에 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초판의 경우 도서정가의 _____ % X 발행부수,
2쇄부터는 도서정가의 _____ % X 판매부수 ()
- 도서정가의 _____ % X 발행부수 ()
- 도서정가의 _____ % X 판매부수 ()
- 기타 _____
- ② ‘발주자’는 _____ 개월에 한 번씩 발행부수 또는 판매부수를 ‘저작자’에게 통보하고 그 기간에 해당하는 저작권사용료를 다음달 말일까지 ‘저작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지급한다.
- ③ ‘저작자’는 납본, 증정, 신간 안내, 서평, 홍보 등을 위하여 제공되는 부수에 대하여는 저작권사용료를 면제한다. 다만, 그 부수는 매쇄 당 _____ %를 초과할 수 없으며, ‘발주자’는 자세한 내역을 ‘저작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 ④ ‘발주자’는 이 계약 성립일로부터 _____ 영업일 이내에 선금금으로 _____ 원을 ‘저작자’에게 지급한다. 계약 종료 시까지의 ‘저작자’가 지급받은

작권사용료의 합계가 선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도, ‘저작자’는 차액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 ⑤ 초판 제1쇄의 발행부수는 _____부로 정한다. ‘발주자’는 이후 대상 저작물 초판 제1쇄 및 이후 발행 시 지급할 저작권사용료에서 제4항의 선금금을 공제할 수 있다.
- ⑥ ‘저작자’와 ‘발주자’는 검인지를 [부착하기로 () / 부착하지 아니하기로 ()] 합의한다.
- ⑦ ‘발주자’가 ‘저작자’에게 본조의 저작권사용료를 지급할 때, ‘발주자’는 ‘저작자’에게 출판물의 발행 부수, 인세 계산 내역 등이 기재된 정산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해당 정산 주기에 ‘저작자’에게 지급할 저작권사용료가 없는 경우에도 같다.
- ⑧ ‘저작자’가 제7항의 정산서 내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발주자’는 정산서 내용의 근거 자료(관련 계약서를 포함한다)를 제공하여야 한다. 단, 제공이 불가능한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 별도의 합의를 거쳐 ‘발주자’는 ‘저작자’에게 이를 열람하도록 한다.
- ⑨ ‘발주자’는 발행 부수, 인세 계산 내역, 인세 지급 내역 등과 관련된 이 계약에 따른 장부 및 자료를 별도로 유지, 보관하고, 이를 이 계약 종료 후 5년 후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 ⑩ ‘저작자’가 제9항의 기간 동안 장부 또는 자료의 열람 또는 제공을 요청할 경우, ‘발주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해야 한다. 제8항 제2문은 본항에도 적용된다.

제9조 (정가, 판형, 제책방식 등)

- ① 본 조는 제8조의 인세 지급방식의 경우에만 적용된다.
- ② 출판물에 대한 정가, 판형, 제책방식 등은 ‘저작자’와 ‘발주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발주자’는 ‘저작자’에게 관련 사항을 알려야 한다.
- ③ ‘발주자’는 출판물의 중쇄의 시기, 수량, 홍보와 판매 방법 등을 결정할 수 있으며, 중쇄가 진행되는 경우 ‘발주자’는 ‘저작자’에게 수량과 시기 등 중쇄 계획에 대해 미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④ 출판물의 중판 여부 및 내용은 ‘저작자’와 ‘발주자’가 사전 합의하여야 한다.
- ⑤ ‘발주자’는 출판물의 재고가 없을 경우 중쇄를 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 중쇄의 시기, 수량, 판매 방법 등은 시장 상황, 계약의 잔여기간, ‘발주자’의 경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저작자’와 ‘발주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⑥ ‘발주자’는 이 계약기간 중 대상 저작물의 출판을 중단해서는 아니 된다.¹⁾

1) 단행본 이외의 연속물(1권이상~완결권)은 완결작품 전체를 제6항의 대상으로 한다.

제10조 (저작물의 보증 등)

- ① ‘저작자’는 대상 저작물의 내용으로 인해 제3자의 저작권 등 법적 권리를 침해하여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발주자’가 제공한 소재, 내용 등 ‘발주자’가 제공하거나 관여한 부분으로 인하여 제3자의 저작권 등 법적 권리를 침해한 경우는 ‘발주자’가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 ③ ‘저작자’는 ‘발주자’가 이 계약상의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 장애가 되는 사정(계약 이전에 대상 저작물의 저작권을 처분하거나 권리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등)이 없고, 이 계약기간 중에도 ‘발주자’의 동의 없이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한다.

제11조 (저작인격권의 존중)

- ① ‘발주자’는 대상 저작물에 관한 ‘저작자’의 저작인격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 ② ‘발주자’는 대상 저작물 및 그 복제물에 ‘저작자’의 실명 또는 ‘저작자’가 지정하는 이명(필명)을 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않는 등 ‘저작자’가 요구하는 바에 따라 올바르게 사용하여야 한다.
- ③ ‘발주자’는 대상 저작물의 제호, 내용 또는 형식을 바꾸고자 할 때는 ‘저작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발주자’는 대상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의 변경을 할 수 있으나, 저작물의 본질적 내용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발주자’는 대상 저작물과 관련하여 ‘저작자’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 (교정과 편집)

- ① 대상 저작물의 교정과 편집은 ‘발주자’가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저작자’와 ‘발주자’가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교정·편집 수행자의 상대방은 교정·편집 수행자에게 협력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자신이 수행한 교정·편집 결과물에 대하여 ‘저작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13조 (저작자에 대한 증정보 등)

- ① '발주자'는 출판물의 초판 및 개정판 1쇄 발행 시 ___부, 중쇄 발행 시 ___부를 '저작자'에게 증정한다. 이 증정본의 개수는 저작권사용료를 산정하기 위한 발행 부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 ② '저작자'가 제1항에 규정된 부수를 초과하는 출판물이 필요한 경우 정가의 ___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발주자'로부터 구입할 수 있다. 이 구입본의 개수는 저작권사용료를 산정하기 위한 발행부수에 포함된다.

제14조 (원고의 반환 등)

- ① 계약기간의 만료 등으로 이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발주자'는 '저작자'로부터 받은 육필 원고나 원화 등 실물원고 기타 일체의 자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원고 또는 자료가 전자적 형태로 제공되었을 경우, 이 계약 종료 시 '발주자'는 이를 파기하고, 이를 파기하였다는 서면 확인서를 만들어 '저작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③ '발주자'가 원고 또는 자료를 훼손 또는 분실하거나 본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발주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다만, 자신의 책임 없는 사유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발주자'는 제16조 제1항에 따른 성과의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자료를 '저작자'와 협의하여 보존할 수 있다.

제15조 (권리 소멸 후의 배포)

- ① '발주자'의 권리가 소멸한 후에도 '발주자'는 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에 발행된 도서의 재고 물량을 ___개월 동안 배포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배포에 대하여 '발주자'는 제8조에서 정한 저작권사용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선금금(제8조 인세 지급 방식일 때)이 소진되지 않은 경우 제8조 제5항 후문을 준용한다.

제16조 (발주자의 성과 존중)

- ① '저작자'는 저작물을 구성하는 스타일, 구성, 레이아웃 등 출판물의 형식에 대한 '발주자'의 성과를 존중하여야 한다.
- ② '저작자'가 이 계약이 종료된 후 '발주자'가 구성한 제1항의 성과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저작자'와 '발주자'가 별도의 서면 합의를 거쳐야 한다.

제17조 (권리·의무의 양도 등)

‘저작자’와 ‘발주자’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는 이 계약상 권리·의무 또는 계약상 지위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8조 (계약 내용의 변경 및 보완)

- ① ‘저작자’와 ‘발주자’는 필요시 서면 합의에 따라 이 계약의 내용 중 일부를 변경할 수 있으며, 그 서면 합의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변경된 사항은 그다음 날부터 효력을 가진다.
- ② ‘저작자’와 ‘발주자’는 이 계약의 내용을 보충하거나,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부속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부속 합의는 이 계약의 내용과 배치되거나 위반하지 않는 범위로 한정한다.

제19조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

- ① ‘저작자’ 또는 ‘발주자’가 이 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그 상대방은 ___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제대로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상대방은 대상 저작물의 창작의 착수 이전까지는 이 계약을 해지·해제할 수 있으며, 창작의 착수 후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민법 등 관계 법령이 있는 경우에는 법정 해지·해제, 합의 해지·해제할 수 있다.

- ③ ‘저작자’ 또는 ‘발주자’는 상대방이 더 이상 대상 저작물을 이 계약에 따라 출판할 의사가 없음을 서면으로 통지하거나, 상대방이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이 계약에 따른 출판을 계속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즉시 서면으로 이 계약의 해지를 통고할 수 있다.
 1. 회생, 파산, 회사정리, 해산 또는 청산절차가 개시된 경우
 2. 발행한 어음, 수표가 지급 거절되는 경우
 3. 제3자에게 인수 또는 합병되거나 영업을 위하여 필요한 주요한 재산이 제3자에게 양도되는 경우
 4. 영업을 위하여 필요한 주요 재산에 대하여 법원의 보전처분 또는 강제집행이 개시되고 60일 이내에 해소되지 않는 경우

- 고의적인 30일 이상의 계약 불이행 및 연락 두절 등으로 출판을 지속할 수 없는 사정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 작품 표절, 사회적 물의로 인한 계약 상대방의 손해, 범죄 등이 법원의 판결 등으로 객관적으로 입증된 경우

제20조 (손해배상)

- 이 계약을 고의 또는 과실로 위반한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 사실은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21조 (불가항력)

천재지변, 자연재해, 전쟁, 내란, 폭동 등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저작자' 또는 '발주자'가 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계약 불이행에 대한 서로의 책임을 면제하며, 쌍방이 서면 합의를 통해 후속 조치를 결정한다.

제22조 (성희롱 등의 금지)

- '저작자'와 '발주자'는 상대방 또는 상대방의 임직원 등 관련자로부터 객관적인 증거로 확인되는 성희롱·성폭력 피해를 입은 경우 행위자의 업무 배제 등 적절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고, 상대방은 이러한 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 '저작자' 또는 '발주자'는 상대방 또는 상대방의 임직원 등 관련자로부터의 성희롱·성폭력으로 인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나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이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제23조 (비밀유지)

- '저작자'와 '발주자'는 이 계약의 내용 및 계약 이행 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의 영업상 비밀 정보를 상대방의 사전 승낙 없이 제3자에게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 아래 각호의 경우는 제1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 계약서 체결 또는 검토를 위하여 비밀유지의무를 지는 변호사 등 전문가, 만화, 예술 또는 저작권 관련 공공기관 및 설립에 필요한 법령상 절차를 거친 협회·단체·조합 등의 자문을 받는 경우
 - 수사나 소송 등의 분쟁으로 인해 수사기관 또는 사법기관에 제출하는 경우
 - 법령에 따른 신고나 조사를 위한 목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4. 그 밖의 법령에 의해 정보의 공개가 강제되는 경우

- ③ ‘저작자’와 ‘발주자’는 이 계약의 이행 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유의하여 취급하여야 하며, 상대방 동의 없이 이를 공개, 누설 또는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4조 (‘저작자’의 정보 이용)

‘저작자’는 ‘발주자’가 이 계약에 따른 홍보, 판매 등을 위하여 ‘저작자’가 제공한 정보를 스스로 또는 제3자를 통하여 공개 또는 이용하는 것을 허락한다. 다만, ‘저작자’의 실명과 초상의 공개 또는 이용에 대하여는 ‘저작자’와 ‘발주자’가 별도 합의하여 결정한다.

제25조 (저작권 침해의 공동대응)

‘저작자’와 ‘발주자’는 대상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 행위를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상대방에게 자료를 제공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26조 (예술인고용보험)

- ① ‘발주자’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경우 ‘저작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고용보험 취득신고 등 자격관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 ② ‘발주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저작자’와 ‘발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자’는 ‘저작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를 ‘저작자’에게 지급하는 보수에서 원천공제하여 납부할 수 있다.

제27조 (분쟁 해결)

- ① 이 계약에서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저작자’와 ‘발주자’가 자율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 ② ‘저작자’ 또는 ‘발주자’는 소송에 앞서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을 받을 수 있다.
- ③ 이 계약과 관련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한다.

제28조 (설명 의무)

- ① ‘발주자’는 ‘저작자’에게 이 계약서의 주요 내용과 취지를 설명해야 한다. 다만, ‘저작자’의 의사에 따라 추가되거나 변경된 계약의 내용은 ‘저작자’가 ‘발주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 ② 제1항과 별개로, ‘발주자’는 ‘저작자’가 계약서 내용 전문을 최초로 확인한 시점

으로부터 최소 15일의 기간을 보장하여 ‘저작자’가 계약 전 법률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어야 한다.

제29조 (효력 발생)

이 계약은 계약체결일로부터 효력이 발생된다.

이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저작자’, ‘발주자’가 서명 날인한 다음 각 1통씩 보관한다.

_____년 __월 __일

“저작자”

성 명(이명) :

생 년 월 일 :

주 소 :

기 명 날 인 : _____(인)

입 금 계 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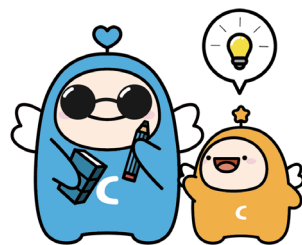
“발주자”

상 호 :

사업자번호 :

주 소 :

대 표 자 : _____ (인)



[별표7]

2차적저작물작성권 이용허락 계약서(제2조 제7호 관련)

저작권자¹⁾ _____(이하 ‘저작권자’라고 한다)와(과) 사업자 _____(이하 ‘사업자’라고 한다)는(은) (기획만화 계약서(이하 ‘원 계약’) / 원 계약 없는) 목적물인 아래의 대상 저작물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2차적저작물작성권 이용허락 계약을 체결한다.

원 계약의 유무(O / X)

계약명:

계약체결주체:

계약일시:

대상 저작물의 표시

제호(가제) :

1) 저작권자는 저작재산권을 보유한 ‘저작자’와 저작재산권을 양도받아 권리를 행사하는 ‘저작재산권자’를 포함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저작권자’가 권리를 보유한 대상 저작물의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사업자’에게 이용허락을 함에 있어 양 당사자 사이의 권리·의무 및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1. “대상 저작물”은 위에 표시한, 이 계약의 목적이 되는 저작물을 말한다.
2. “원 계약”은 위에 표시한, 이 계약과 관련하여 ‘저작권자’와 ‘사업자’가 체결한 계약을 말한다.
3. “2차적저작물”은 대상 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말한다.
4.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대상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를 말한다.
5. “총 매출액”은 본 계약에서 허락되는 대상 저작물의 2차적저작물작성권 이용허락으로 인해 ‘사업자’가 취득하는 총 합계 금액을 말한다.
6. 본조에서 정하지 않은 용어의 정의는 관련 법령과 상관습에 따른다.

제3조 (계약기간)

- ① 이 계약의 계약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___개월 / 대상 저작물의 ___회 연재 종료일 / 대상 저작물의 최종화 공개일로부터 ___개월 / ___년 ___월 ___일)까지로 한다.
- ② 이 계약기간 중에 체결된 제3자와의 계약에 관해서는 해당 계약에 한하여 그 사업화 계약을 처리하기 위한 범위 내에서 이 계약의 효력이 유지된다.

제3조 제2항 관련 사업자가 제3자와의 계약 체결에 따라 본 계약서의 효력 유지여부가 변동되므로 “저작권자”는 제7조 제3항에 따른 서면 동의 시 ‘계약기간’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 ③ 부득이 사업자가 이 계약기간을 초과하여 제3자와의 계약기간을 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7조 제3항의 사전 서면 동의를 얻기 전에 제3자와의 계약기간이 이 계약기간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저작권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제4조 (2차적저작물작성권의 이용허락)

- ① ‘저작권자’는 ‘사업자’에게 대상 저작물에 관하여 계약 효력 기간 동안 아래 표 중 ○로 선택한 항목에 관련된 2차적저작물작성권의 이용을 허락한다(아래 표에 기재되지 않은 합의 항목은 표에 항목을 추가한다). 이용을 허락한 항목에 대해서는 (저작권자:사업자)의 형식으로 분배 비율을 기재한다.

	국내		국외		
	허락여부	분배비율	지역 또는 언어	허락여부	분배비율
영상화(애니메이션화)					
영상화(영화, 드라마 등)					
공연화(뮤지컬, 연극 등)					
상품화(유형물)					
이모티콘, NFT 등 상품화(무형물)					
게임화					
어문저작물작성					
음성저작물작성					
음악저작물작성					
광고					
번역저작물					
(추가기재가능)					

분배 비율 결정 시 ①사업자가 직접 사업화하는 경우와 ②제3자에게 이용허락을 하는 경우 등을 고려하여 정하십시오.

- ② 제1항의 이용허락은 (독점적 / 비독점적)으로 한다. 항목별로 독점/비독점을 달리할 경우, ‘허락여부’란에 독점, 비독점을 별도로 기재한다.
- ③ 제2항의 이용허락을 ‘독점적’으로 한 경우, ‘저작권자’는 본 계약 체결 이후, 대상 저작물에 관하여 본 계약과 저촉되는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되고, 스스로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본 계약과 저촉되는 권리행사를 해서는 아니 된다.
- ④ 대상 저작물의 캐릭터에 대한 권리, 속편, 후속 시즌, 스피노프(spin-off) 프리퀄(prequel), 시퀄(sequel) 등 관련 저작물을 제작할 권리는 별도로 정한다.

제5조 (저작권의 귀속)

- ① 2차적저작물의 저작권은 이 계약에 따라 별도로 작성되는 계약서 및 저작권법에 따라 귀속을 정한다.
- ② 제1항은 대상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자’의 저작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③ ‘사업자’는 대상 저작물에 관하여 이 계약에서 명시적으로 ‘사업자’에게 허락된 권리만을 갖는다.

제6조 (상표등록 등)

- ① ‘사업자’는 이 계약상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저작권자’의 동의를 얻어 제2차적 저작물작성권을 이용하여 상표나 디자인 기타 유사한 지적재산권을 등록하고 이용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등록은 ‘저작권자’의 이름으로 하여야 하며, 등록에 따른 비용은 합의하여 정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등록된 권리는 이 계약기간 중 이 계약상 업무를 위하여 ‘저작권자’와 ‘사업자’가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제7조 (권리의 행사)

- ① ‘사업자’는 이 계약의 내용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사업자’의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업무를 처리하며 ‘저작권자’를 위하여 최선의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② ‘사업자’는 대상 저작물의 2차적저작물작성권 행사 과정을 ‘저작권자’와 공유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제3자와 협상이 진행될 때에는 제3자의 제안 내용 및 협상의 진행 과정을 ‘저작권자’와 공유하여야 한다.
- ③ ‘사업자’는 대상 저작물에 대하여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반드시 ‘저작

권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사업자'는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한 후, 즉시 해당 계약서의 사본을 '저작권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④ '저작권자'가 이 계약에 따른 업무 처리 현황의 보고를 요청할 경우, '사업자'는 지체 없이 해당 내용을 정리하여 '저작권자'에게 보고한다.

제8조 (수익의 분배 등)

- ① '사업자'의 2차적저작물작성권 행사에 따라 제3자로부터 수익이 발생한 경우 '사업자'는 수익에 대하여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수익분배 비율에 따라 '저작권자'에게 분배한다.
- ② '사업자'가 직접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행사하는 경우, 구체적인 수익분배 및 공제 범위는 별도의 서면 합의로 정한다. 다만, '저작권자'와 '사업자'는 서면으로 합의 하여 순 매출액 산정 시 공제되는 범위 또는 항목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③ '사업자'는 본조의 수익배분을 매 ____ 월마다 진행하고, 다음 달 말일까지 해당 금액을 '저작권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송금한다.

제9조 (정산 등)

- ① '사업자'가 '저작권자'에게 제8조의 대가를 지급할 때, '사업자'는 '저작권자'에게 2차적저작물 이용 내용, 대가 계산 내역 등이 기재된 정산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저작권자'에게 지급할 대가가 없는 경우에도 같다.
- ② '저작권자'가 제1항의 정산서 내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사업자'는 정산서 내용의 근거 자료(관련 계약서를 포함한다)를 제공하여야 한다. 단, 제공이 불가능한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 별도의 합의를 거쳐 '사업자'는 '저작권자'에게 이를 열람 하도록 한다.
- ③ '사업자'는 2차적저작물 이용 내용, 대가 계산 내역, 대가 지급 내역 등과 관련된 이 계약에 따른 장부 및 자료를 별도로 유지, 보관하고, 이를 이 계약 종료 후 5년 후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 ④ '저작권자'가 제3항의 기간 동안 장부 또는 자료의 열람 또는 제공을 요청할 경우, '사업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해야 한다. 제2항 제2문은 본항에도 적용된다.

제10조 (비용의 부담)

- ① '저작권자'는 대상 저작물을 창작하는 비용을 부담한다.
- ② '사업자'는 대상 저작물의 2차적저작물작성권 이용허락 및 이를 사업화 하는데

있어서 발생하는 비용을 부담한다.

- ③ 제8조 제2항에 따른 서면합의에 의하여 저작권자가 부담하기로 한 것은 예외로 한다.

제11조 (저작인격권의 존중)

- ① '사업자'는 대상 저작물에 관한 '저작권자'의 저작인격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 ② '사업자'는 대상 저작물과 관련하여 '저작권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방법으로 2차적저작물을 작성해서는 아니 된다.

제12조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

- ① '저작권자' 또는 '사업자'가 이 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그 상대방은 ___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제대로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상대방은 계약의 이행이 시작되기 이전까지는 이 계약을 해지·해제할 수 있으며, 이행이 시작된 후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민법 등 관계 법령이 있는 경우에는 법정 해지·해제, 합의 해지·해제할 수 있다.

- ③ '저작권자' 또는 '사업자'는 상대방이 더 이상 대상 저작물을 이 계약에 따라 이용할 의사가 없음을 서면으로 통지하거나, 상대방이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이 계약에 따른 이용을 계속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즉시 서면으로 이 계약의 해지를 통고할 수 있다.
 - 1. 회생, 파산, 회생절차, 해산 또는 청산절차가 신청된 경우
 - 2. 발행한 어음, 수표가 지급 거절되는 경우
 - 3. 제3자에게 인수 또는 합병되거나 영업을 위하여 필요한 주요한 재산이 제3자에게 양도되는 경우
 - 4. 영업을 위하여 필요한 주요 재산에 대하여 법원의 보전처분 또는 강제집행이 개시되고 60일 이내에 해소되지 않는 경우
 - 5. 고의적으로 30일 이상 계약을 불이행하거나 연락두절 등으로 계약 이행을 지속할 수 없는 사정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 6. 작품 표절, 사회적 물의로 인한 계약 상대방의 손해, 범죄 등이 법원의 판결 등으로 객관적으로 입증된 경우

제13조 (손해배상)

- ① 이 계약을 고의 또는 과실로 위반한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②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 사실은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4조 (비밀유지 등)

- ① '저작권자'와 '사업자'는 이 계약의 내용 및 계약 이행 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의 영업상의 비밀 정보를 상대방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아래 각호의 경우는 제1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1. 계약서 체결 또는 검토를 위하여 비밀유지의무를 지는 변호사 등 전문가, 만화, 예술 또는 저작권 관련 공공기관 및 설립에 필요한 법령상 절차를 거친 협회·단체·조합 등의 자문을 받는 경우
 2. 수사나 소송 등의 분쟁으로 인해 수사기관 또는 사법기관에 제출하는 경우
 3. 법령에 따른 신고나 조사를 위한 목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4. 그밖에 법령에 의해 정보의 공개가 강제되는 경우
- ③ '저작권자'와 '사업자'는 이 계약의 이행 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유의하여 취급하여야 하며, 상대방 동의 없이 이를 공개, 누설 또는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 (분쟁 해결)

- ① 본 계약에서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저작권자'와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 ② '저작권자' 또는 '사업자'는 소송에 앞서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을 받을 수 있다.
- ③ 이 계약과 관련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한다.

제16조 (설명 의무)

- ① '사업자'는 '저작권자'에게 이 계약서의 주요 내용과 취지를 설명해야 한다. 단, '저작권자'의 의사에 따라 추가되거나 변경된 계약의 내용은 '저작권자'가 '사업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설명과 별개로, '사업자'는 '저작권자'가 계약서 내용 전문을 최초로 확인한

시점으로부터 최소 15일의 기간을 보장하여 ‘저작권자’가 계약 전 법률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어야 한다.

제17조 (기타)

- ①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저작권자’와 ‘사업자’가 체결한 원 계약서에 따른다.
- ② 이 계약과 원 계약서 내용이 상충하는 경우 원 계약의 효력이 우선한다.

원 계약 없이 체결하는 경우 제17조(기타)는 삭제해도 된다.

이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저작권자’, ‘사업자’가 서명 날인한 다음 각 1통씩 보관한다.

_____년 __월 __일

“저작권자”

성 명(이명) :

생 년 월 일 :

주 소 :

기 명 날 인 : _____(인)

입 금 계 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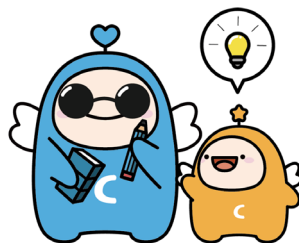
“사업자”

상 호 :

사업자번호 :

주 소 :

대 표 자 : _____ (인)



[별표8]

2차적저작물작성권 양도계약서(제2조 제8호 관련)

저작권자¹⁾ _____ 이하 ‘저작권자’라고 한다)와(과) 사업자 _____ (이하 ‘사업자’라고 한다)는(은) (기획만화 계약서(이하 ‘원 계약’) / 원 계약 없는) 목적물인 아래의 대상 저작물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2차적저작물작성권 양도 계약을 체결한다.

원 계약의 유무(O / X)

계약명:

계약체결주체:

계약일시:

대상 저작물의 표시

제호(가제) :

1) 저작권자는 저작재산권을 보유한 ‘저작자’와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양도받아 권리를 행사하는 ‘저작재산권자’를 포함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저작권자’가 권리를 보유한 대상 저작물의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사업자’에게 양도함에 있어 양 당사자 사이의 권리·의무 및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1. “대상 저작물”은 위에 표시한, 이 계약의 목적이 되는 저작물을 말한다.
2. “선급금”은 대상 저작물의 향후 판매 부수를 예상하고, 해당 부수만큼 미리 지급하는 인세를 말한다.
3. “원 계약”은 위에 표시한, 이 계약과 관련하여 ‘저작권자’와 ‘사업자’가 체결한 계약을 말한다.
4. “2차적저작물”은 대상 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말한다.
5.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대상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를 말한다.

6. “총 매출액”은 본 계약에서 양도되는 대상 저작물의 2차적저작물작성권 행사로 인해 ‘사업자’가 취득하는 총 합계 금액을 말한다.
7. 본조에서 정하지 않은 용어의 정의는 관련 법령과 상관습에 따른다.

제3조 (계약기간)

- ① 계약 체결일로부터 (___개월 / 대상 저작물의 ___회 연재 종료일 / 대상 저작물의 최종화 공개일로부터 ___개월 / ___년 __월 __일 / 영구)까지로 한다.
- ② 이 계약기간 중에 체결된 제3자와의 계약에 관해서는 해당 계약에 한하여 그 사업화 계약을 처리하기 위한 범위 내에서 이 계약의 효력이 유지된다.

제3조 제2항 관련 사업자가 제3자와의 계약 체결에 따라 본 계약서의 효력 유지여부가 변동되므로 ‘계약기간’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음

- ③ 기간이 정해진 계약의 경우 ‘사업자’는 제2항 중 이 계약기간을 초과해 효력이 유지되는 제3자와 계약 체결 시 ‘저작권자’와 사전 합의하여야 한다.

제4조 (2차적저작물작성권의 양도)

- ① ‘저작권자’는 ‘사업자’에게 대상 저작물에 관하여 계약 효력 기간 동안 아래 표 중 ○으로 표시한 항목에 관련된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양도한다(아래 표에 기재되지 않은 합의 항목은 표에 항목을 추가한다). ‘수익 분배 방식’으로 대가를 받기로 합의한 항목에 대해서는 (저작권자:사업자)의 형식으로 수익 분배 비율을 기재한다.

	국내		국외		
	양도여부	분배비율	지역 또는 언어	양도여부	분배비율
영상화(애니메이션화)					
영상화(영화, 드라마 등)					
공연화(뮤지컬, 연극 등)					
상품화(유형물)					
이모티콘, NFT 등 상품화(무형물)					
게임화					
어문저작물작성					
음성저작물작성					
음악저작물작성					
광고					
번역저작물 (추가기재가능)					

‘저작권자’는 2차적저작물작성권 재양도 금지에 관하여 다음 예시와 같이 특약을 체결할 수 있다.
예시) ‘사업자’는 ‘저작권자’에게 양도받은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제3자에게 재양도할 수 없다.

- ② 대상 저작물의 캐릭터에 대한 권리, 속편, 후속 시즌, 스피노프(spin-off), 프리퀄(prequel), 시퀄(sequel) 등 관련 저작물을 제작할 권리는 별도로 정한다.

제5조 (권리의 등록)

- ① ‘사업자’와 ‘저작권자’는 2차적저작물작성권의 저작권 양도 등록을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사업자’는 ‘저작권자’에게 2차적저작물작성권의 저작권 등록, 저작권 양도 등록 등에 협력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자’가 등록을 하는 경우 ‘저작권자’는 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는 등으로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이루어진 경우, 계약기간 만료, 해지·해제 등으로 이 계약이 종료된 후 (지체없이 / ___일 이내에) ‘사업자’는 등록을 말소해야 한다.

거래안전을 위해 ‘지체없이’가 원칙이나, 합의에 따라서 일 수를 정할 수 있다.

제6조 (대가의 지급)

제6조는 다음 중 _____ 방식으로 한다.

[일시불 방식]

- ① ‘사업자’는 이 계약에 따른 저작권 양도의 대가로 ‘저작권자’에게 _____원을 지급한다. ‘사업자’는 본조의 대가를 ‘저작권자’가 지정하는 은행 계좌로 지급한다.
- ② “사업자”는 아래와 같이 대금을 분할하여 지급한다.
계약금 : 계약체결시 _____ 원
중도금 : _____년 _____월 _____일까지 _____ 원
잔금 : _____년 _____월 _____일까지 _____ 원
(또는) 잔금 : 최종 원고 인도 후 _____일 이내에 _____ 원

[수익 분배 방식]

- ① ‘사업자’는 이 계약 체결과 동시에 선금금으로 _____원을 ‘저작권자’에게 지급한다. 이 선금금은 이후 ‘저작권자’에게 지급할 수익 분배에서 공제한다. 계약 종료 시까지의 ‘저작권자’가 지급받은 추가 수익의 합계가 선금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도, ‘저작권자’는 차액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 ② ‘사업자’의 2차적저작물작성권 행사에 따라 제3자로부터 수익이 발생한 경우 ‘사업자’는 수익에 대하여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수익분배 비율에 따라 ‘저작권자’에게 분배한다.
- ③ ‘사업자’가 직접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행사하는 경우, 구체적인 수익분배 및 공제범위는 별도의 서면 합의로 정한다. 다만, ‘저작권자’와 ‘사업자’는 서면으로 합의하여 순 매출액 산정시 공제되는 범위 또는 항목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④ ‘사업자’는 본조의 대가의 지급을 매 ___월마다 진행하고, 다음 달 말일까지 해당금원을 ‘저작권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송금한다.
- ⑤ ‘사업자’가 ‘저작권자’에게 대가를 지급할 때, ‘사업자’는 ‘저작권자’에게 매출 내역, 수익 계산 내역 등이 기재된 정산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해당 정산 주기에 ‘저작권자’에게 지급할 대가가 없는 경우에도 같다.
- ⑥ ‘저작권자’가 제5항의 정산서 내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사업자’는 정산서 내용의 근거 자료(관련 계약서를 포함한다)를 제공하여야 한다. 단, 제공이 불가능한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 별도의 합의를 거쳐 ‘사업자’는 ‘저작권자’에게 이를 열람하도록 한다.
- ⑦ ‘사업자’는 매출 내역, 수익 계산 내역, 수익 지급 내역 등과 관련된 이 계약에 따른 장부 및 자료를 별도로 유지, 보관하고, 이를 이 계약 종료 후 5년 후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 ⑧ ‘저작권자’가 제7항의 기간 동안 장부 또는 자료의 열람 또는 제공을 요청할 경우, ‘사업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해야 한다. 제6항 제2문은 본항에도 적용된다.

제7조 (저작인격권의 존중)

- ① ‘사업자’는 대상 저작물에 관한 ‘저작권자’의 저작인격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 ② ‘사업자’는 대상 저작물과 관련하여 ‘저작권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방법으로 2차적저작물을 작성해서는 아니 된다.

제8조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

- ① ‘저작권자’ 또는 ‘사업자’가 이 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그 상대방은 ___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제대로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상대방은 계약의 이행이 시작되기 이전까지는 이 계약을 해지·해제할 수 있으며, 이행이 시작된

후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민법 등 관계 법령이 있는 경우에는 법정 해지·해제, 합의 해지·해제할 수 있다.

- ③ ‘저작권자’ 또는 ‘사업자’는 상대방이 더 이상 이 계약을 이행할 의사가 없음을 서면으로 통지하거나,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이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즉시 서면으로 이 계약의 해지를 통고할 수 있다. 다만, 1호 내지 4호의 경우 영구 양도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1. 회생, 파산, 회생절차, 해산 또는 청산절차가 신청된 경우
 2. 발행한 어음, 수표가 지급 거절되는 경우
 3. 제3자에게 인수 또는 합병되거나 영업을 위하여 필요한 주요한 재산이 제3자에게 양도되는 경우
 4. 영업을 위하여 필요한 주요 재산에 대하여 법원의 보전처분 또는 강제집행이 개시되고 60일 이내에 해소되지 않는 경우
 5. 고의적으로 30일 이상 계약을 불이행하거나 연락두절 등으로 계약 이행을 지속할 수 없는 사정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6. 작품 표절, 사회적 물의로 인한 계약 상대방의 손해, 범죄 등이 법원의 판결 등으로 객관적으로 입증된 경우

제9조 (손해배상)

- ① 이 계약을 고의 또는 과실로 위반한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②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 사실은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0조 (비밀유지 등)

- ① ‘저작권자’와 ‘사업자’는 이 계약의 내용 및 계약 이행 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의 영업상의 비밀 정보를 상대방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아래 각호의 경우는 제1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1. 계약서 체결 또는 검토를 위하여 비밀유지의무를 지는 변호사 등 전문가, 만화, 예술 또는 저작권 관련 공공기관 및 설립에 필요한 법령상 절차를 거친 협회·단체·조합 등의 자문을 받는 경우

2. 수사나 소송 등의 분쟁으로 인해 수사기관 또는 사법기관에 제출하는 경우
 3. 법령에 따른 신고나 조사를 위한 목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4. 그밖에 법령에 의해 정보의 공개가 강제되는 경우
- ③ '저작권자'와 '사업자'는 이 계약의 이행 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유의하여 취급하여야 하며, 상대방 동의 없이 이를 공개, 누설 또는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 (분쟁 해결)

- ① 본 계약에서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저작권자'와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 ② '저작권자' 또는 '사업자'는 소송에 앞서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을 받을 수 있다.
- ③ 이 계약과 관련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한다.

제12조 (설명 의무)

- ① '사업자'는 '저작권자'에게 이 계약서의 주요 내용과 취지를 설명해야 한다.
단, '저작권자'의 의사에 따라 추가되거나 변경된 계약의 내용은 '저작권자'가 '사업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설명과 별개로, '사업자'는 '저작권자'가 계약서 내용 전문을 최초로 확인한 시점으로부터 최소 15일의 기간을 보장하여 '저작권자'가 계약 전 법률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어야 한다.

제13조 (기타)

- ①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저작권자'와 '사업자'가 체결한 원 계약서에 따른다.
- ② 이 계약과 원 계약서 내용이 상충하는 경우 원 계약의 효력이 우선한다.

원 계약 없이 체결하는 경우 제13조(기타)는 삭제해도 된다.

이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저작권자'와 '사업자'가 서명 날인한 다음 각 1통씩 보관한다.

_____년 __월 __일

“저작권자”

성 명(이명) :

생 년 월 일 :

주 소 :

기 명 날 인 : _____ (인)

입 금 계 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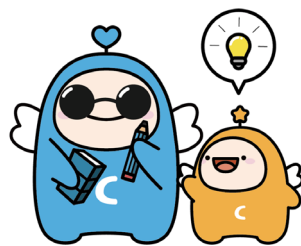
“사업자”

상 호 :

사업자번호 :

주 소 :

대 표 자 : _____ (인)



부록 2 : 웹소설 분야 표준계약서

[별표1]

웹소설 출판권 설정계약서

저작자의 표시 성명 : _____ 이명(필명) : _____

저작재산권자의 표시 성명 : _____ 생년월일 : _____

저작물의 표시 제호(가제) : _____

위에 표시된 저작물(이하 ‘대상 저작물’이라고 함)의 저작재산권자(이하 ‘저작권자’라고 함) _____ 과(와) 이를 문서 또는 도화로 발행하고자 하는 이용자(이하 ‘출판권자’라고 함) _____ 는(은) 다음과 같이 출판권설정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대상 저작물의 저작권자가 출판권자에게 대상 저작물을 인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문서 또는 도화로 발행(복제·배포)하는 권리를 부여하기 위해 체결한다.

제2조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복제 : 저작물을 인쇄·사진촬영·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한다.
2. 배포 : 저작물의 원본 또는 그 복제물을 공중에게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아니하고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3. 발행 : 저작물 또는 음반을 공중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복제·배포하는 것을 말한다.
4. 공중송신 : 저작물, 실연·음반·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이하 ‘저작물등’이라고 함)을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5. 공중 : 불특정 다수인(특정 다수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6. 출판권 : 출판사 등이 저작권자와의 출판권설정계약에 따라 저작물을 인쇄 등의 방법으로 문서 또는 도화로 발행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출판권자는 설정 행위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저작물을 원작 그대로 출판할 권리를 가진자를 말한다.
7. 저작인격권 : 저작물에 대한 저작자의 인격적·정신적 이익을 보호하는 권리로서 다른 사람에게 양도나 상속 할 수 없다.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3가지 권리로 구성된다.
8. 2차적저작물 : 대상 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말한다.
9. 2차적저작물작성권 : 대상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를 말한다.
10. 부차권(부차적 이용허락) : 법적 권리는 아니지만 현장에서 원저작물의 부가적 이용을 허락하는 권리로 통용된다. 이미 공표된 저작물을 재이용하거나 축약본·요약본을 제작할 권리, 라디오에서 저작물을 읽을 권리, 저작물에 기반한 상품을 만들 권리 등에 대한 것으로서 2차적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11. 계약의 해지와 해제 : 해지(解止)는 계속적으로 효과가 이어지는 계약관계에서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향후 계약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반해 해제(解除)는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이미 성립된 계약을 소멸시켜 애초에 그런 계약이 없었던 것과 같이 만드는 효과를 말한다.
12. 분쟁 조정 : 저작권에 관한 분쟁이 생겼을 때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이다. 신청 취지와 이유를 기재한 조정신청서를 제출하면 조정이 개시되며 조정부가 당사자 사이의 의견교환을 통해 합의를 유도한다. 조정절차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13. 완전원고 : 교정·편집만 거치면 출판을 가능한 정도에 이르는 창작 작업이 끝난 원고를 말한다.
14. 본조에서 정하지 않은 용어의 정의는 저작권법 등 관련 법령과 상관습에 따른다.

제3조 (출판권의 설정)

- ① 저작권자는 출판권자에게 대상 저작물에 대한 출판권을 설정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출판권자는 대상 저작물을 원작 그대로 출판할 수 있는 독점적이고도 배타적인 권리를 가진다.
- ③ 출판권자는 대상 저작물을 다른 언어로 번역하거나 대한민국의 영토 외의 장소에서 발행할 수 없다. 단, 출판권자는 대상 저작물을 다른 언어로 번역하거나

대한민국 이외의 영역에서 이용하고자 할 경우, 저작권자와 별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4조 (출판권 설정의 등록)

- ① 저작권법에 따라 출판권자는 대상 저작물에 대한 출판권 설정 사실을 한국저작권 위원회에 등록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출판권자가 출판권 설정등록을 하는 경우 저작권자는 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출판권자에게 제공하는 등 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배타적 이용)

- ① 저작권자는 이 계약기간 중 대상 저작물의 제호 및 내용의 전부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별도로 출판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출판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저작권자는 이 계약기간 중 출판권자의 사전 동의 없이 대상 저작물의 개정판 또는 증보판을 직접 발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발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 (출판권의 존속기간 등)

- ① 출판권자가 보유하는 대상 저작물의 출판권은 계약일로부터 시작하여 초판 1쇄 발행일(완결권 기준)로부터 ___년까지 효력을 가진다.
- ② 저작권자 또는 출판권자는 계약기간 만료일 ___개월 전까지 문서로써 상대방에게 계약의 종료를 통보할 수 있으며, 이러한 종료 통보에 따라 계약기간 만료일에 이 계약은 종료된다.
- ③ 제2항에 따른 종료 통보가 없는 경우에 이 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___년까지 자동 연장되며, 이 경우 출판권자는 자동 연장 이전까지의 저작권사용료를 정산 하여야 한다.
- ④ 출판권자는 제2항의 계약종료 통보 기한 이전에 저작권자에게 제2항 및 제3항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 ⑤ 저작권자와 출판권자가 이 계약을 연장하면서 계약 조건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계약조건을 반영한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7조 (완전원고의 인도 시기)

- ① 저작권자는 ___년 ___월 ___일까지 대상 저작물의 출판을 위한 완전원고 또는 이에 상당한 자료를 출판권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출판권자와 협의하여 그 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 ② 출판권자는 저작권자로부터 완전원고를 인도받은 날로부터 _____개월 이내에 대상 저작물의 초판 제1쇄 _____부를 원래 목적대로 출판하여야 한다(특약이 없는 경우 9개월 이내 출판함).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저작권자와 협의하여 그 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제8조 (원고의 반환 등)

- ① 계약기간의 만료 등으로 이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출판권자는 저작권자로부터 인도받은 육필 원고나 원화 등 실물원고 기타 일체의 자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원고 또는 자료가 전자적 형태로 제공되었을 경우, 이 계약 종료 시 출판권자는 이를 파기하고, 이를 파기하였다는 서면 확인서를 만들어 저작권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③ 출판권자가 원고 또는 자료를 훼손 또는 분실하거나 본 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출판권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다만, 자신의 책임없는 사유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출판권자가 판면, 포맷 등 대상 작품의 원안을 편집하여 구성한 경우 그 성과의 존중을 위하여, 출판권자는 필요한 최소한의 자료를 저작권자와 협의하여 보존할 수 있다.

제9조 (저작물의 내용에 따른 책임 등)

대상 저작물의 내용 중 저작권자가 소재, 내용 등을 모두 독립적으로 제작한 부분이 제3자의 저작권 등 법적 권리를 침해하여 출판권자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칠 경우에는 저작권자가 그에 관한 책임을 진다. 다만, 대상 저작물의 내용 중 출판권자가 저작권자에게 소재, 내용 등을 제공하였거나 대상 저작물의 제작에 참여한 부분이 제3자의 저작권 등 법적 권리를 침해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칠 경우에는 출판권자가 그에 관한 책임을 진다.

제10조 (저작인격권의 존중)

- ① 출판권자는 대상 저작물에 관한 저작자의 저작인격권을 적극적으로 존중하여야 한다.
- ② 출판권자는 저작자가 사용하는 실명 또는 필명 등을 저작자가 요구하는 바에 따라 올바르게 사용하여야 한다.
- ③ 출판권자는 대상 저작물의 제호, 내용 또는 형식을 바꾸고자 할 때는 저작자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하고, 저작물의 본질적 내용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출판권자는 대상 저작물과 관련하여 저작자 및 저작권자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 저작권자가 저작자가 아닌 경우 출판권자가 본조의 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저작권자는 저작자의 의사표시나 동의 여부를 적시에 확인하여 출판권자에게 전달하여야 하고, 이를 보증한다.

제11조 (수정 및 교정)

출판권자는 제10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상 저작물의 출판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수정이나 교정을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출판권자는 저작권자에게 수정, 교정된 내용에 관하여 최종 확인을 받아야 하며, 이는 협의를 통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2조 (비용의 부담)

- ① 대상 저작물의 창작에 필요한 비용은 저작권자가 부담한다.
- ② 대상 저작물을 출판물 형태로 제작하는 비용 및 홍보, 광고, 판매에 따른 비용은 출판권자가 부담한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저작권자의 요청에 의하여 추가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경우 저작권자와 출판권자는 상호 합의하여 추가 비용에 관한 분담 비율을 정할 수 있다.

제13조 (저작권의 표지 등)

- ① 출판권자는 대상 저작물의 출판물에 적당한 방법으로 저작자의 성명과 발행 연월일 등 저작권 표지를 하여야 한다.
- ② 저작권자와 출판권자는 검인지를 [부착하기로() / 부착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다.

제14조 (정가, 판형, 제책방식 등)

- ① 대상 저작물의 출판물에 대한 정가, 판형, 제책방식 등은 저작권자와 출판권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출판권자는 저작권자에게 관련 사항을 알려야 한다.
- ② 중쇄의 시기 및 홍보·광고, 판매의 방법 등은 출판권자가 결정한다. 다만, 출판권자는 저작권자에게 미리 관련 사항을 알려야 하며, 저작권자가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 성실히 협의하여야 한다.
- ③ 중판 여부 및 내용은 저작권자와 출판권자가 사전 합의하여야 한다.

제15조 (계속 출판의 의무)

- ① 출판권자는 이 계약기간 중 대상 저작물을 계속 출판하여야 한다. 다만, 6개월 동안 판매량이 ____부 이하가 될 경우, 저작권자와 출판권자가 합의하여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② 출판권자에게 출판물의 재고가 없을 경우, 저작권자는 출판권자에게 출판물의 중쇄를 요청할 수 있으며 출판권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 중쇄의 시기, 수량, 홍보와 판매 방법 등은 시장 상황, 이 계약의 잔여기간, 출판권자의 경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이 계약 당사자 간 협의에 의해 결정한다.

제16조 (저작권사용료 등)

- ① 출판권자는 아래와 같이 저작권자에게 정가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일정 부수(발행부수 또는 판매부수)를 곱한 금액을 지정 계좌를 통하여 저작권사용료로 지급한다.

- 초판의 경우 도서정가의 _____% × 발행부수,
2쇄부터는 도서정가의 _____% × 판매부수 ()
- 도서정가의 _____% × 발행부수 ()
- 도서정가의 _____% × 판매부수 ()
- 기타 _____

- ② 출판권자는 _____개월에 한 번씩 발행부수 또는 판매부수를 저작권자에게 통보하고 통보 후 30일 이내에 그 기간에 해당하는 저작권사용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만일 출판권자가 발행부수 또는 판매부수를 약정기일 내에 통보하지 아니하는 경우 저작권자는 저작권사용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출판권자는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 ③ 저작권자는 납본, 증정, 신간 안내, 서평, 홍보 등을 위하여 제공되는 부수에 대하여는 저작권사용료를 면제한다. 다만, 그 부수는 매쇄 당 _____%를 초과할 수 없으며, 출판권자는 자세한 내역을 저작권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17조 (정산 등)

- ① 출판권자가 저작권자에게 제16조의 대가를 지급할 때, 출판권자는 저작권자에게 출판물의 발행 부수, 인세 계산 내역 등이 기재된 정산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해당 정산 주기에 저작권자에게 지급할 대가가 없는 경우에도 같다.
- ② 저작권자가 제1항의 정산서 내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출판권자는 정산서 내용의 근거가 되는 자료를 저작권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공이 불가능한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 별도의 합의를 거쳐 출판권자는 저작권자에게 이를 열람하도록 한다.

- ③ 출판권자는 발행 부수, 인세 계산 내역, 인세 지급 내역 등과 관련된 이 계약에 따른 장부 및 자료를 별도로 유지, 보관하고, 이를 제6조의 계약 종료 후 5년 후까지 유지 및 보관하여야 한다.
- ④ 저작권자가 제3항의 기간 동안 자료의 열람 또는 제공을 요청할 경우, 출판권자는 계약 종료 여부와 관계없이 이에 응해야 한다. 제2항 2문은 본 항에도 적용된다.

제18조 (선금금)

- ① 출판권자는 이 계약 성립일로부터 ____영업일 이내에 선금금으로 ____원을 저작권자에게 지급한다. 계약 종료 시까지 저작권자가 지급 받아야 할 저작권사용료의 합계가 선금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도, 저작권자는 차액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 ② 초판 제1쇄의 발행부수는 ____부로 정한다.
- ③ 출판권자는 초판 제1쇄 발행 시 지급할 저작권사용료에서 제1항의 선금금을 공제한다.

제19조 (저작권자에 대한 증정보 등)

- ① 출판권자는 출판물의 초판 및 개정판 1쇄 발행 시 ____부, 중쇄 발행 시 ____부를 저작권자에게 증정한다. 이 증정본의 개수는 저작권사용료를 산정하기 위한 발행 부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 ② 저작권자가 제1항에 규정된 부수를 초과하는 출판물이 필요한 경우 정가의 ____%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출판권자로부터 구입할 수 있다.

제20조 (2차적저작물 및 부차적 이용허락)

- ① 이 계약기간 중에 대상 저작물이 국내외 제3자의 요청에 의하여 번역, 각색, 편곡, 변형 등의 방법으로 2차적저작물로서 이용되는 경우 그에 관한 이용허락 등 모든 권리는 저작권자에게 있으며, 출판권자에게 먼저 요청이 오는 경우 출판권자는 이 같은 사실을 위의 제3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아울러 출판권자는 제3자의 저작물 이용허락 요청 사실을 저작권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 ② 이 계약의 목적물인 대상 저작물의 내용 중 일부가 국내외 제3자의 요청에 의하여 복제 및 공중송신 등의 방법으로 재이용되거나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부차적으로 이용되는 경우 그에 관한 이용허락 등 모든 권리는 저작권자에게 있으며, 출판권자에 먼저 요청이 오는 경우 출판권자는 이 같은 사실을 위의 제3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아울러 출판권자는 제3자의 저작물 이용허락 요청 사실을 저작권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 ③ 출판권자는 이 계약에 따라 설정된 출판권만을 가지며, 그 이외의 다른 저작권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자와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21조 (전집 또는 선집 등에의 수록)

이 계약기간 중에 저작권자가 대상 저작물을 저작자의 전집이나 선집 등에 수록, 출판할 때는 미리 출판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22조 (저작권재산권 또는 출판권의 양도 등)

- ① 저작권자는 대상 저작물의 복제권 및 배포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이를 출판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 출판권자의 출판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출판권자는 대상 저작물의 출판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저작권자의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23조 (판면파일의 구매 및 양도)

- ① 저작권자는 대상 저작물이 수록된 출판물의 판면을 그대로 이용하여 전자책(e-Book) 등 비종이책의 제작을 제3자에게 허락할 수 없으며, 저작권자가 이를 허락하고자 할 경우 위 저작물의 교정 및 편집에 따른 비용을 감안하여 출판권자로부터 판면파일을 구매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출판권자가 저작권자에게 출판물의 판면파일을 양도하는 경우 그것의 구체적인 금액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 서면으로 합의하여 정한다. 이때 출판권자는 저작권자에게 객관적인 근거에 입각한 합리적인 양도 금액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24조 (계약 내용의 변경)

이 계약은 저작권자와 출판권자 쌍방의 서면에 의한 합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제25조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

- ① 저작권자 또는 출판권자가 이 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그 상대방은 ____일(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제대로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상대방은 대상 저작물의 출판이 시작되기 이전까지는 이 계약을 해지·해제할 수 있으며, 출판이 시작된 후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③ 저작권자는 출판권자가 더 이상 출판할 의사가 없음을 저작권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거나, 파산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출판할 수 없는 상황이 명백한 경우 즉시 이 계약의 해지를 출판권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다.

- ④ 이 계약이 해지되면, 저작권자와 출판권자는 다음과 같은 책임을 부담한다.
 - 1. 출판권자는 저작권자에게 해지 시점까지 발생한 저작권사용료를 즉시 지급한다.
 - 2. 출판권자는 저작권자에게 제8조에 따라 원고 등을 반환 및 교부한다.
 - 3. 출판권자가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이 계약에 따른 출판권을 등록하였을 경우, 해지 즉시 출판권의 소멸 사실을 등록하고, 이에 대한 서면 증빙을 발급받아 저작권자에게 교부한다.
 - 4. 이상의 책임과는 별개로, 해지의 책임이 없는 자는 상대방에게 해지에 따라 발생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⑤ 저작권자가 출판권자 소속 임직원에 의해 성희롱·성폭력 피해를 입은 경우 저작권자는 해당 임직원을 관련 업무에서 배제 요청할 수 있으며, 출판권자는 사실을 확인한 후 업무의 배제 및 기타 적절한 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 ⑥ 저작권자 또는 출판권자(소속 임직원을 포함한다)가 상대방에 대한 성희롱·성폭력으로 인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나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상대방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6조 (성희롱 등의 피해 구제)

제25조 제6항에도 불구하고 계약 당사자(당사자가 법인, 단체일 경우 그 대표를 포함하여 법인,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임직원 및 자문·기획위원 등을 포함함, 이하 본 조에서 동일함) 중 어느 일방이 상대방 당사자로부터의 성희롱 등 행위로 정상적인 저작물 창작활동 또는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지 못한 경우,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그 내용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거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신고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제27조 (손해배상)

- ① 이 계약을 고의 또는 과실로 위반한 당사자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상대방은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 사실은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28조 (출판권 소멸 후의 배포)

- ① 출판권이 소멸한 후에도 출판권자는 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에 발행된 도서의 재고품을 ____개월 동안 배포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재고품의 배포에 대하여 출판권자는 제16조 제1항에 따라 저작권자에게 저작권사용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29조 (불가항력)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재난으로 저작권자 또는 출판권자가 손해를 입거나 계약 이행이 지체 또는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서로의 책임을 면제하며, 후속조치를 쌍방이 서면으로 합의하여 결정한다.

제30조 (비밀유지 등)

- ① 저작권자와 출판권자는 이 계약의 내용 및 계약 이행 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의 사업상 비밀 정보를 상대방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아래 각호의 경우는 제1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1. 계약서 체결 또는 검토를 위하여 비밀유지의무를 지는 변호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경우
 2. 수사나 소송 등의 분쟁으로 인해 수사기관 또는 사법기관에 제출하는 경우
 3. 법령에 따른 신고나 조사를 위한 목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4. 그밖에 법령에 의해 정보의 공개가 강제되는 경우

제31조 (개인정보의 취급)

- ① 저작권자와 출판권자는 대상 저작물의 출판 및 이에 부수하는 업무 과정과 이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의 취지에 따라 유의하여 취급하여야 하며, 사전 동의 없이 이를 누설하거나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저작권자는 출판권자가 이 계약에 의한 출판물의 제작 및 광고, 홍보, 판매 등을 위하여 저작권자가 제공한 정보를 스스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허락한다. 다만, 저작자의 실명과 초상 이용에 대하여는 저작자와 출판권자가 합의하여 결정한다.

제32조 (계약의 해석 및 설명의무)

- ① 이 계약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저작권자와 출판권자가 서면으로 합의하여 정할 수 있고,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저작권법 등 관련법률 및 계약해석의 원칙에 따라 해결한다.
- ② 출판권자는 저작권자에게 계약서의 날인 또는 서명 이전에 계약서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다만, 저작권자의 의사에 따라 추가되거나 변경된 계약의 내용은 저작권자가 출판권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의 설명과 별개로, 출판권자는 저작권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저작권자가 계약서 내용 전문을 최초로 확인한 시점으로부터 최소 15일의 기간을 보장하여 저작권자가 계약 전 법률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어야 한다.

제33조 (분쟁의 해결)

- ① 이 계약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저작권자와 출판권자는 제소에 앞서 한국 저작권위원회의 조정을 받을 수 있다.
- ② 저작권자와 출판권자 사이에 제기되는 소송의 제1심 법원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34조 (효력 발생)

이 계약은 계약체결일로부터 효력이 발생된다.

■ 특약 사항

이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3통을 작성하여 저작권자, 출판권자가 날인 또는 서명한 다음 각 1통씩 보관하고 1통은 출판권 설정 등록용으로 사용한다.

_____년 __월 __일

저작권자의 표시

주 소 :

생년월일 :

성 명 : _____ (인)

계좌번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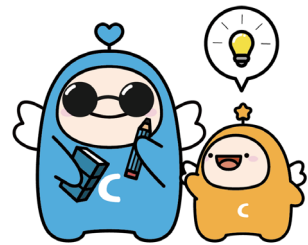
출판권자의 표시

주 소 :

출판권자 명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성명 : _____ (인)



[별표2]

웹소설 전자출판 배타적발행권 설정계약서¹⁾

저작자의 표시 성명 : _____ 이명(필명) : _____

저작재산권자의 표시 성명 : _____ 생년월일 : _____

저작물의 표시 제호(가제) : _____

위에 표시된 저작물(이하 ‘대상 저작물’이라고 함)의 저작재산권자(이하 ‘저작권자’라고 함) _____과(와) 이를 전자책 등으로 발행하고자 하는 이용자(이하 ‘발행권자’라고 함) _____는(은) 다음과 같이 배타적발행권 설정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대상 저작물에 대한 전자책 등의 발행을 위한 배타적발행권을 설정함에 있어 저작권자 및 발행권자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데 그 목적을 둔다,

제2조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복제 : 저작물을 인쇄·사진촬영·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한다.
2. 배포 : 저작물의 원본 또는 그 복제물을 공중에게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아니하고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3. 발행 : 저작물 또는 음반을 공중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복제·배포하는 것을 말한다.
4. 공중송신 : 저작물, 실연·음반·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이하 ‘저작물등’이라고 함)를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1) 저작재산권자가 전자출판을 위한 배타적발행권을 얻고자 하는 이용자에 대하여 저작물의 배타적발행권을 설정하고 발행자는 그 저작물을 이 계약에서 정한 이용 조건과 범위 안에서 디지털 발행물의 형태로 만들어 판매의 방법으로 배포 또는 공중송신하는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서, 준물권적(독점적·배타적) 성격의 배타적발행권이 발생 하는 효력을 갖는다.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리까지 획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배타적발행권을 등록해야 한다. 출판권과 마찬가지로 배타적발행 권자가 저작물의 1차 저작자뿐만 아니라 번역가, 삽화가, 사진작가 등과 체결할 수 있는 계약 유형이다.

5. 공중 : 불특정 다수인(특정 다수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6. 전송(傳送) : 공중송신 중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물등을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그에 따라 이루어지는 송신을 포함한다.
7. 배타적발행권 : 저작물을 공중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복제·배포하는 것과 저작물을 복제·전송(이하 '발행등'이라고 함)하는 것에 관한 배타적 권리를 말한다. 출판권을 제외한다.
8. 저작인격권 : 저작물에 대한 저작자의 인격적·정신적 이익을 보호하는 권리로서 다른 사람에게 양도나 상속 할 수 없다.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3가지 권리로 구성된다.
9. 전자책(e-Book) : PC 또는 휴대용 단말기 등 전자적 기록매체와 저장장치를 통해 읽을 수 있도록 특정 포맷으로 제작된 디지털 파일을 의미한다.
10. 오디오북 : 전문성우나 저작자 등이 직접 책의 내용을 낭독하여 눈으로 읽는 대신 귀로 들을 수 있게 제작한 디지털콘텐츠를 말한다. 음성 및 음향 출력이 가능한 모든 기기를 이용하여 들을 수 있다.
11. 계약의 해지와 해제 : 해지(解止)는 계속적으로 효과가 이어지는 계약관계에서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향후 계약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반해 해제(解除)는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이미 성립된 계약을 소멸시켜 애초에 그런 계약이 없었던 것과 같이 만드는 효과를 말한다.
12. 분쟁 조정 : 저작권에 관한 분쟁이 생겼을 때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이다. 신청취지와 이유를 기재한 조정신청서를 제출하면 조정이 개시되며 조정부가 당사자 사이의 의견교환을 통해 합의를 유도한다. 조정절차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13. 완전원고 : 교정·편집만 거치면 발행이 가능한 정도에 이르는 창작 작업이 끝난 원고를 말한다.
14. 본 조에서 정하지 않은 용어의 정의는 저작권법 등 관련 법령과 상관습에 따른다.

제3조 (배타적발행권의 설정)

- ① 저작권자는 발행권자에게 대상 저작물을 전자책 형식으로 발행등을 할 수 있는 권리인 배타적발행권을 설정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저작권자는 이 계약에서 정한 발행등의 방법 및 조건이 중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상 저작물에 대한 새로운 배타적발행권을 제3자에게 설정할 수 있다.

- ③ 발행권자는 해외진출 등을 위하여 저작물을 다른 언어로 번역하거나 캐릭터, 스토리, 구성요소 등을 활용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저작권자와 합의하여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4조 (배타적발행권 설정의 등록)

- ① 저작권법에 따라 발행권자는 대상 저작물에 대한 배타적발행권 설정 사실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발행권자가 배타적발행권 설정등록을 하는 경우 저작권자는 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발행권자에게 제공하는 등 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배타적 이용)

- ① 발행권자는 제14조 제1항에서 정한 조건 및 방법에 따른 대상 저작물의 발행등에 관하여 독점적이고도 배타적인 권리를 갖는다.
- ② 저작권자는 이 계약기간 중 대상 저작물의 제호 및 내용의 전부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이 계약에서 정한 조건 및 방법과 같거나 유사하게 제3자로 하여금 전자책 발행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 (배타적발행권의 존속기간)

- ① 발행권자가 보유하는 대상 저작물의 배타적발행권은 계약일로부터 시작하여 최초 발행일(완결권 기준)로부터 ____년까지 효력을 가진다.
- ② 저작권자 또는 발행권자는 계약기간 만료일 __개월 전까지 문서로써 상대방에게 계약의 종료를 통보할 수 있으며, 이러한 종료 통보에 따라 계약기간 만료일에 이 계약은 종료된다.
- ③ 제2항에 따른 종료 통보가 없는 경우에 이 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1년 단위로 자동 연장되며, 이 경우 발행권자는 각 자동 연장 이전까지의 저작권사용료를 정산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라 계약이 자동 연장된 경우 저작권자는 언제든지 서면으로 발행권자에게 이 계약의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본 항에 따른 해지는 발행권자가 그 통지를 받은 때로부터 15일이 되는 날 효력이 발생하고 그날 이 계약은 종료한다. 발행권자는 해지 통지를 수령하는 즉시 플랫폼 서비스 중단 등 대상 저작물의 발행 종료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계약종료일까지 이를 완료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통지 수령일로부터 4개월 내에 이를 완료하여야 한다.

- ⑤ 저작권자와 발행권자가 이 계약을 연장하면서 계약 조건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계약조건을 반영한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7조 (완전원고의 인도와 발행 시기)

- ① 저작권자는 ____년 __월 __일까지 대상 저작물의 전자책 등의 발행을 위한 완전원고 또는 이에 상당한 자료를 발행권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발행권자와 협의하여 그 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 ② 발행권자는 저작권자로부터 완전원고를 인도받은 날로부터 __개월 이내에 대상 저작물을 원래 목적대로 발행하여야 한다(특약이 없는 경우 9개월 이내에 발행함).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저작권자와 협의하여 그 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제8조 (원고의 반환 등)

- ① 계약기간의 만료 등으로 이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발행권자는 저작권자로부터 인도받은 육필 원고나 원화 등 실물원고 기타 일체의 자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원고 또는 자료가 전자적 형태로 제공되었을 경우, 이 계약 종료 시 발행권자는 이를 파기하고, 이를 파기하였다는 서면 확인서를 만들어 저작권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③ 발행권자가 원고 또는 자료를 훼손 또는 분실하거나 본 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발행권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다만, 자신의 책임없는 사유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상 저작물을 구매한 이용자에게 차질 없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또는 발행권자가 판면, 포맷 등 대상 작품의 원안을 편집하여 구성한 경우 그 성과의 존중을 위하여, 발행권자는 필요한 최소한의 자료를 저작권자와 협의하여 보존할 수 있다.

제9조 (저작물의 내용에 따른 책임 등)

대상 저작물의 내용 중 저작권자가 소재, 내용 등을 모두 독립적으로 제작한 부분이 제3자의 저작권 등 법적 권리를 침해하여 발행권자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칠 경우에는 저작권자가 그에 관한 책임을 진다. 다만, 대상 저작물의 내용 중 발행권자가 저작권자에게 소재, 내용 등을 제공하였거나 대상 저작물의 제작에 참여한 부분이 제3자의 저작권 등 법적 권리를 침해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발행권자가 그에 관한 책임을 진다.

제10조 (저작인격권의 존중)

- ① 발행권자는 대상 저작물에 관한 저작자의 저작인격권을 적극적으로 존중하여야 한다.
- ② 발행권자는 저작자가 사용하는 실명 또는 필명 등을 저작자가 요구하는 바에 따라 올바르게 사용하여야 한다.
- ③ 발행권자는 대상 저작물의 제호, 내용 또는 형식을 바꾸고자 할 때는 저작자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하고, 저작물의 본질적 내용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발행권자는 대상 저작물과 관련하여 저작자 및 저작권자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 저작권자가 저작자가 아닌 경우 발행권자가 본조의 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저작권자는 저작자의 의사표시나 동의 여부를 적시에 확인하여 발행권자에게 전달하여야 하고, 이를 보증한다.

제11조 (수정 및 교정)

발행권자는 제10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상 저작물의 발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수정이나 교정을 진행할 수 있다. 다만 발행권자는 저작권자에게 수정·교정된 내용에 관하여 최종 확인을 받아야 하며, 이는 협의를 통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2조 (비용의 부담)

- ① 대상 저작물의 창작에 필요한 비용은 저작권자가 부담한다.
- ② 대상 저작물을 전자책 형태로 제작하는 비용 및 홍보, 광고, 판매에 따른 비용은 발행권자가 부담한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저작권자의 요청에 의하여 추가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경우 저작권자와 발행권자는 상호 합의하여 추가 비용에 관한 분담 비율을 정할 수 있다.

제13조 (발행된 저작물의 수정증감)

- ① 저작권자가 발행된 전자책의 내용 등을 수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발행권자와 그 수정 내용에 대해 서면으로 합의하여야 한다. 발행권자가 전자책의 형태 등 대상 저작물의 내용과 관련없는 부분을 수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저작권자에게 그 수정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② 맨 처음 발행등의 방법으로 이용한 후 다시 발행등으로 이용함에 있어 저작권자의 요청에 따른 수정, 증감 등에 의하여 통상의 제작비를 현저히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에 대한 저작권자의 부담액은 저작권자와 발행권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이때 통상의 제작비는 맨 처음 발행등의 비용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제14조 (저작물 이용 방법 및 조건 등)

- ① 대상 저작물의 발행등에 따른 이용 방법 및 조건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 복제 유형 : 온라인-다운로드 방식(), 구독 방식()
오프라인-유형물 제작()
 - 매체 형식 : 전자책()
오디오북()
기타 _____
 - 이용 형식 : _____
 - 정가 : 회당 / 1set / 기타 원
- ② 발행등의 구체적인 시기 및 홍보·광고, 판매의 방법 등은 발행권자가 결정한다. 다만, 발행권자는 저작권자에게 미리 관련 사항을 알려야 하며, 저작권자가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 성실히 협의하여야 한다.

제15조 (계속 발행 등의 의무)

발행권자는 이 계약기간 중 대상 저작물을 계속 발행등의 방법으로 이용하여야 한다.

제16조 (저작권사용료 등)

- ① 발행권자는 저작권자에게 대상 저작물 매출액의 ___%에 해당하는 금액을 저작권 사용료로 지급한다.
- ② 발행권자는 __개월에 한 번씩 매출 현황을 저작권자에게 통보하고 통보 후 30일 이내에 그 기간에 해당하는 저작권사용료를 지정계좌를 통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이때 발행권자는 저작권자에게 매출액 산정에 대한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만일 발행권자가 매출 현황을 약정기일 이내에 통보하지 아니하는 경우 저작권자는 직전 저작권사용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저작권사용료로 청구할 수 있으며, 발행권자는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실제 매출액보다 많이 산정되었음을 발행권자가 입증하는 경우에 이후의 저작권사용료에서 이를 공제한다.

제17조 (선금금)

- ① 발행권자는 이 계약 성립일로부터 __영업일 이내에 선금금으로 _____ 원을 저작권자에게 지급한다. 계약 종료 시까지 저작권자가 지급받아야 할 저작권 사용료의 합계가 선금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도, 저작권자는 차액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 ② 발행권자는 이후 지급할 저작권사용료에서 제1항의 선금금을 공제한다.

제18조 (저작권재산권 또는 배타적발행권의 양도 등)

- ① 저작권자는 대상 저작물의 복제권, 배포권 및 전송권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이를 발행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 발행권자의 배타적발행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발행권자는 대상 저작물의 배타적발행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저작권자의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19조 (발행데이터의 권리 귀속 등)

- ① 발행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발행권자의 노력과 비용으로 만들어진 각종 데이터(이하 '발행데이터'라고 함)에 관한 권리는 발행권자에게 귀속된다.
- ② 저작권자는 이 계약의 유효기간뿐만 아니라 계약 종료 후에도 발행권자의 문서에 의한 승낙 없이는 발행데이터를 직접 이용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만일 발행권자의 발행데이터를 저작권자가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고자 하는 경우 저작권자는 발행권자로부터 발행데이터 파일을 매수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발행권자가 저작권자에게 발행데이터의 파일을 양도하는 경우 그것의 구체적인 금액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문서로 합의하여 정한다. 이때 발행권자는 저작권자에게 객관적인 근거에 입각한 합리적인 양도 금액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20조 (계약 내용의 변경)

이 계약은 저작권자와 발행권자 쌍방의 서면에 의한 합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제21조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

- ① 저작권자 또는 발행권자가 이 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그 상대방은 __일(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제대로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상대방은 대상 저작물의 발행이 시작되기 이전까지는 이 계약을 해지·해제할 수 있으며, 발행이 시작된 후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③ 저작권자는 발행권자가 더 이상 발행할 의사가 없음을 저작권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거나, 파산 등의 사유로 더 이상 발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 즉시 계약의 해지를 발행권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다.
- ④ 이 계약이 해지되면, 저작권자와 발행권자는 다음과 같은 책임을 부담한다.
 1. 발행권자는 저작권자에게 해지 시점까지 발생한 전자책 저작권사용료를 즉시 지급한다.
 2. 발행권자는 저작권자에게 제8조에 따라 원고 등을 반환 및 교부한다.
 3. 발행권자가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이 계약에 따른 배타적발행권을 등록하였을 경우, 해지 즉시 배타적발행권의 소멸사실을 등록하고, 이에 대한 서면 증빙을 발급받아 저작권자에게 교부한다.
 4. 이상의 책임과는 별개로, 해지의 책임이 없는 자는 상대방에게 해지에 따라 발생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⑤ 저작권자가 발행권자 소속 임직원에 의해 성희롱·성폭력 피해를 입은 경우 저작권자는 해당 임직원을 관련 업무에서 배제 요청할 수 있으며, 발행권자는 사실을 확인한 후 업무의 배제 및 기타 적절한 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 ⑥ 저작권자 또는 발행권자(소속 임직원을 포함한다)가 상대방에 대한 성희롱·성폭력으로 인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나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상대방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2조 (성희롱 등의 피해 구제)

제21조 제6항에도 불구하고 계약 당사자(당사자가 법인, 단체일 경우 그 대표를 포함하여 법인,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임직원 및 자문·기획위원 등을 포함함, 이하 본 조에서 동일함) 중 어느 일방이 상대방 당사자로부터의 성희롱 등 행위로 정상적인 저작물 창작 활동 또는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지 못한 경우,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그 내용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거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신고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제23조 (손해배상)

- ① 이 계약을 고의 또는 과실로 위반한 당사자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상대방은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 사실은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24조 (배타적발행권 소멸 후의 배포)

- ① 배타적발행권이 소멸한 후에도 발행권자는 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에 발행등의 방법으로 제작한 유형물을 __개월 동안 배포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배포에 대하여 발행권자는 제16조 제1항에 따라 저작권자에게 저작권사용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25조 (불가항력)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재난으로 저작권자 또는 발행권자가 손해를 입거나 계약 이행이 지체 또는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서로의 책임을 면제하며, 후속조치를 쌍방이 서면으로 합의하여 결정한다.

제26조 (비밀유지 등)

- ① 저작권자와 발행권자는 이 계약의 내용 및 계약 이행 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의 사업상 비밀 정보를 상대방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아래 각호의 경우는 제1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1. 계약서 체결 또는 검토를 위하여 비밀유지의무를 지는 변호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경우
 2. 수사나 소송 등의 분쟁으로 인해 수사기관 또는 사법기관에 제출하는 경우
 3. 법령에 따른 신고나 조사를 위한 목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4. 그밖에 법령에 의해 정보의 공개가 강제되는 경우

제27조 (개인정보의 취급)

- ① 저작권자와 발행권자는 대상 저작물의 발행등 및 이에 부수하는 업무 과정과 이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의 취지에 따라 유의하여 취급하여야 하며, 사전 동의 없이 이를 누설하거나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저작권자는 발행권자가 이 계약에 의한 발행물의 제작 및 광고, 홍보, 판매 등을 위하여 저작권자가 제공한 정보를 스스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허락한다. 다만, 저작자의 실명과 초상 이용에 대하여는 저작자와 발행권자가 합의하여 결정한다.

제28조 (계약의 해석 및 설명의무)

- ① 이 계약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저작권자와 발행권자가 서면으로 합의하여 정할 수 있고,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저작권법 등 관련법률 및 계약해석의 원칙에 따라 해결한다.
- ② 발행권자는 저작권자에게 계약서의 날인 또는 서명 이전에 계약서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다만, 저작권자의 의사에 따라 추가되거나 변경된 계약의 내용은 저작권자가 발행권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의 설명과 별개로, 발행권자는 저작권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저작권자가 계약서 내용 전문을 최초로 확인한 시점으로부터 최소 15일의 기간을 보장하여 저작권자가 계약 전 법률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어야 한다.

제29조 (분쟁의 해결)

- ① 이 계약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저작권자와 발행권자는 제소에 앞서 한국 저작권위원회의 조정을 받을 수 있다.
- ② 저작권자와 발행권자 사이에 제기되는 소송의 제1심 법원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으로 한다.

제30조 (효력 발생)

이 계약은 계약체결일로부터 효력이 발생된다.

■ 특약 사항

이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3통을 작성하여 저작권자, 발행권자가 날인 또는 서명한 다음 각 1통씩 보관하고 1통은 배타적발행권 설정 등록용으로 사용한다.

_____년 __월 __일

저작권자의 표시

주 소 :

생년월일 :

성 명 : _____ (인)

계좌번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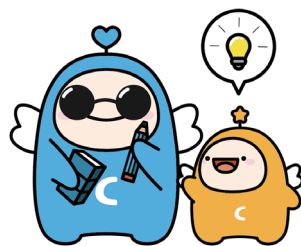
발행권자의 표시

주 소 :

발행권자 명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성명 : _____ (인)



[별표3]

웹소설 연재 계약서

저작자의 표시 성명 : _____ 이명(필명) : _____
저작재산권자의 표시 성명 : _____ 생년월일 : _____
저작물의 표시 제호(가제) : _____

위에 표시된 저작물(이하 '대상 저작물'이라고 함)의 저작재산권자 _____(이하 '저작권자'라고 함)와(과) _____(이하 '콘텐츠사업자'라고 함)는(은) 대상 저작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연재 계약을 체결한다.

다 음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저작권자가 대상 저작물을 콘텐츠사업자에게 제공하고, 콘텐츠사업자는 이를 플랫폼을 통하여 연재를 진행함에 있어 당사자 간의 권리의무 및 기타 제반사항을 규정 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제2조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복제 : 저작물을 인쇄·사진촬영·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한다.
2. 배포 : 저작물의 원본 또는 그 복제물을 공중에게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아니하고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3. 발행 : 저작물 또는 음반을 공중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복제·배포하는 것을 말한다.
4. 공중송신 : 저작물, 실연·음반·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이하 '저작물등'이라고 함)를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5. 공중 : 불특정 다수인(특정 다수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6. 전송(傳送) : 공중송신 중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물등을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그에 따라 이루어지는 송신을 포함한다.
7. 배타적발행권 : 저작물을 공중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복제·배포하는 것과 저작물을 복제·전송(이하 ‘발행등’이라고 함)하는 것에 관한 배타적 권리를 말한다. 출판권을 제외한다.
8. 저작인격권 : 저작물에 대한 저작자의 인격적·정신적 이익을 보호하는 권리로서 다른 사람에게 양도나 상속 할 수 없다.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3가지 권리로 구성된다.
9. 2차적저작물 : 대상 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말한다.
10. 2차적저작물작성권 : 대상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를 말한다.
11. 온라인 서비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대상 저작물을 복제, 전송하는 것을 말한다.
12. 연재 : 대상 저작물을 인터넷 사이트에 온라인 서비스의 방법으로 계약기간 동안 정해진 주기마다 게재하는 것을 말한다.
13. 완전원고 : 교정·편집만 거치면 연재가 가능한 정도에 이르는 창작 작업이 끝난 원고를 말한다.
14. 대리중개 : 저작권자 등의 권리를 가진 자를 위하여 그 권리의 이용에 관한 대리 또는 중개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²⁾
15. 플랫폼 : 대상 저작물의 연재를 진행하는 온라인 사이트 또는 온라인 사이트 운영 업체를 말한다.
16. 프로모션 : 방송, 온라인 서비스 및 인터넷 매체에 대상 저작물을 지속적 또는 단편적으로 노출시켜 그러한 과정을 통해 광고효과를 얻는 것을 말한다.
17. 코인 : 플랫폼에서 연재되는 웹소설 등 콘텐츠를 구매 또는 대여하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전자적 증표 또는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전자적 지급수단을 모두 포함한다.
18. 계약의 해지와 해제 : 해지(解止)는 계속적으로 효과가 이어지는 계약관계에서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향후 계약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반해 해제(解除)는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이미 성립된 계약을 소멸시켜 애초에 그런 계약이 없었던 것과 같이 만드는 효과를 말한다.
19. 분쟁 조정 : 저작권에 관한 분쟁이 생겼을 때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을 통해

2) 다만, 콘텐츠사업자가 대상 저작물을 온라인 플랫폼에 연재하기 위한 콘텐츠사업자의 관련 업무행위는 제외한다.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이다. 신청취지와 이유를 기재한 조정신청서를 제출하면 조정이 개시되며 조정부가 당사자 사이의 의견교환을 통해 합의를 유도한다. 조정절차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20. 본 조에서 정하지 않은 용어의 정의는 저작권법 등 관련 법령과 상관습에 따른다.

제3조 (계약기간 등)

- ① 이 계약의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시작하여 완결화 공개일로부터 ____년까지로 하며, 이 기간 콘텐츠사업자의 권리는 [독점 / 비독점]으로 한다.
- ② 저작권자와 콘텐츠사업자는 계약기간 만료일 ____개월 전까지 서면으로 계약종료의 의사표시를 통지할 수 있고, 그 경우 이 계약은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된다. 다만, 계약의 조건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상대방과의 합의를 통하여 별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의 기간에 상호간에 계약종료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이 계약은 1년 단위로 갱신되는 것으로 한다.
- ④ 제3항에 따라 계약이 자동 연장된 경우 저작권자는 언제든지 서면으로 콘텐츠사업자에게 이 계약의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본 항에 따른 해지는 콘텐츠사업자가 그 통지를 받은 때로부터 15일이 되는 날 효력이 발생하고 그날 이 계약은 종료한다. 콘텐츠사업자는 해지 통지를 수령하는 즉시 플랫폼 서비스 중단 등 대상 저작물의 연재 종료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계약종료일까지 이를 완료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통지 수령일로부터 4개월 내에 이를 완료하여야 한다.

제4조 (연재 권리의 부여)

- ① 저작권자는 콘텐츠사업자에게 이 계약기간 중 대상 저작물을 온라인 서비스 방식으로 연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 ② 콘텐츠사업자는 저작권자로부터 제1항의 권리를 배타적발행권으로서 설정받아 독점적으로 행사하는 경우 저작권법 제54조에 따라 대상 저작물에 대한 배타적 발행권 설정 사실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라 콘텐츠사업자가 배타적발행권 설정등록을 하는 경우 저작권자는 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콘텐츠사업자에게 제공하는 등 이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 ④ 콘텐츠사업자는 계약기간 만료, 해제·해지 등으로 이 계약이 종료되는 즉시 배타적 발행권의 소멸 사실을 등록하고, 이에 대한 서면 증빙을 발급받아 저작권자에게 교부한다.

제5조 (콘텐츠사업자의 연재 권리 등)

- ① 콘텐츠사업자는 이 계약기간 중 대상 저작물의 온라인 서비스에 대하여 연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한다.
- ② 콘텐츠사업자가 대상 저작물을 어떠한 플랫폼에 연재하는 경우 플랫폼과의 연재 약정의 내용(연재로 인한 수익금, 수익금 지급기일, 연재일 및 휴재 등 연재조건 포함)에 대하여 저작권자에게 즉시 고지하여야 한다. 이때 해당 플랫폼에 대한 대상 저작물의 연재 여부 및 연재약정의 내용에 대해 저작권자가 이견을 제시하는 경우 콘텐츠사업자는 성실히 협의하여야 한다.
- ③ 저작권자가 요청하는 경우 콘텐츠사업자는 플랫폼과 체결한 연재약정서를 저작권자가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완전원고의 인도와 연재 시기)

- ① 저작권자는 계약 체결 이후 __일 이내에 콘텐츠사업자에게 __회차 분량의 완전 원고를 인도한다. 남은 회차 완전원고에 대한 인도 일정과 분량은 저작권자와 콘텐츠 사업자가 상호 합의하여 정하되, 필요한 경우 합의로 이를 변경할 수 있다.
- ② 콘텐츠사업자는 계약 이후 최초 원고를 인도받은 날로부터 ____개월 이내에 대상 저작물을 연재하여야 한다. 다만, 원고의 수정, 교정, 편집 등에 기일이 소요되는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저작권자의 동의를 얻어 연재 시기와 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 ③ 연재 종료일은 저작권자와 콘텐츠사업자 간에 협의 후 확정된 일자로 한다.

제7조 (연재의 계속)

- ① 저작권자와 콘텐츠사업자는 계약기간 중 대상 저작물의 연재가 플랫폼에서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상호 신의와 성실로써 협조해야 한다.
- ② 콘텐츠사업자는 계약기간 중 저작권자에게 사전에 고지한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저작권자가 제공한 대상 저작물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연재를 중단해서는 아니된다. 다만, 대상 저작물을 연재하는 사이트 또는 플랫폼의 사정에 의하여 연재가 중단되는 경우 콘텐츠사업자는 그러한 사정에 대하여 즉시 저작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저작권자는 계약기간 중 콘텐츠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대상 저작물의 창작 및 인도를 거부하거나 연재를 중단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저작권자는 사고, 질병 등의 이유로 치료, 휴식이 필요한 경우 콘텐츠사업자에게

휴재를 요청할 수 있고, 콘텐츠사업자는 저작권자와 협의하여 휴재기간을 정한 후 플랫폼에 그 사실을 공지하기로 한다.

- ④ 대상 저작물의 홍보, 마케팅 및 프로모션 방법 등은 저작권자와 콘텐츠사업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8조 (권리의 범위)

- ① 콘텐츠사업자는 대상 저작물을 한국어로, 대한민국에 소재한 플랫폼에 연재할 수 있다.
- ② 저작권자와 콘텐츠사업자는 대상 저작물을 한국어 외의 언어로 번역하거나 해외에 소재한 플랫폼에 연재하기 위해서는 해당 내용이 포함된 별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9조 (저작물의 내용에 대한 책임 등)

- ① 저작권자는 대상 저작물의 내용 중 저작권자가 소재, 내용 등을 모두 독립적으로 제작한 부분이 제3자의 저작권 등 법적 권리를 침해하여 콘텐츠사업자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다만, 대상 저작물의 내용 중 콘텐츠사업자가 저작권자에게 소재, 내용 등을 제공하였거나 대상 저작물의 제작에 참여한 부분이 제3자의 저작권 등 법적 권리를 침해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콘텐츠사업자가 그에 관한 책임을 진다.
- ② 해당 저작물이 제3자의 저작권 등 법적 권리를 침해했다고 불만한 객관적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책임이 있는 자는 이에 대해 해명하고 해결하여야 한다. 만일 해명이 없거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 책임이 없는 상대방은 연재 중단 등의 긴급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조 (2차적저작물작성권 등)

- ① 저작권자는 이 계약에서 명시적으로 콘텐츠사업자에게 허락한 권리 외의 모든 권리를 가지며, 대상 저작물에 대한 2차적저작물작성권도 저작권자에게 있다.
- ② 콘텐츠사업자가 대상 저작물에 대한 2차적저작물작성권 이용 또는 대리중개를 위해서는 저작권자와 별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③ 저작권자는 콘텐츠사업자가 대상 저작물에 대한 2차적 저작물작성권 이용허락 또는 대리중개 계약을 위해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성실하게 협의하기로 한다. 단, 해당 계약 체결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권은 저작권자에게 있다.

제11조 (수익 분배)

저작권자와 콘텐츠사업자는 대상 저작물 연재에 따른 순매출³⁾을 분배 비율 [___%(저작권자) : ___%(콘텐츠사업자)]에 따라 분배한다. 대상 저작물에 프로모션이 진행되는 경우 사전에 저작권자와 콘텐츠사업자는 그 진행 여부 및 분배 비율에 대하여 합의하여 정하기로 하며, 분배 비율에 대하여 따로 합의가 없는 경우 위 순매출의 분배 비율대로 분배하기로 한다.

제12조 (정산 등)

- ① 콘텐츠사업자는 저작권자와의 합의에 따라 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__영업일 이내에 ___원을 선인세로 지급한다. 콘텐츠사업자는 제11조에 따라 분배할 수익에서 이 금액을 공제한다.
- ② 콘텐츠사업자는 저작권자에게 (__주/ __개월)마다 1회, 지급할 대가 유무와 관계 없이 별도의 자료(엑셀 등 파일 형태를 포함한다) 또는 인터넷 사이트(이메일 등)를 통해 수익 정산서를 제공한다. 수익 정산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다.⁴⁾
 1. 해당 기간 대상 저작물로 인하여 발생한 총 매출액(대여·소장·이벤트 판매수량, 스토어별 판매 수량, 유료 판매비율 등 포함)
 2. 저작물이 플랫폼에서 판매될 당시 코인으로 환산한 저작물의 회차별 가격 및 코인당 단가
 3. 세금, 플랫폼 수수료율 및 수수료, 결제/환불 수수료 등 비용 내역
 4. 순 매출액 내역
 5. 순 매출액 중 저작권자에게 실제 지급되는 금액(원고료, 최소보장금(MG), 수익분배금, 차감액, 이월금 등을 구분하여 표시한다)

제13조 (비용의 부담)

- ① 대상 저작물의 창작에 필요한 비용은 저작권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콘텐츠사업자는 저작권자와의 합의에 따라 창작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② 대상 저작물의 연재를 위한 제작비 및 판매, 홍보에 따른 비용은 콘텐츠사업자가 부담하기로 한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저작권자의 요청에 의하여 추가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경우 저작권자와 콘텐츠사업자는 상호 합의하여 추가 비용에 관한 부담 비율을 정할 수 있다.

3) 순매출은 총매출액에서 플랫폼 수수료가 공제한 차액을 의미한다.

4) 정산서상 제공되는 정보는 플랫폼사로부터 제공받는 정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다만 정산서의 세부 내용과 정보가 부족할 때에는 콘텐츠사업자가 협력하여 플랫폼사에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 (저작권격권의 존중)

- ① 콘텐츠사업자는 대상 저작물에 관한 저작자의 저작권격권을 적극적으로 존중하여야 한다.
- ② 콘텐츠사업자는 저작자가 사용하는 실명 또는 필명 등을 저작자가 요구하는 바에 따라 올바르게 사용하여야 한다.
- ③ 콘텐츠사업자는 대상 저작물의 제호, 내용 또는 형식을 바꾸고자 할 때는 저작자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하고, 저작물의 본질적 내용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콘텐츠사업자는 대상 저작물과 관련하여 저작자 및 저작권자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 저작권자가 저작자가 아닌 경우 콘텐츠사업자가 본조의 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저작권자는 저작자의 의사표시나 동의 여부를 적시에 확인하여 콘텐츠사업자에게 전달하여야 하고, 이를 보증한다.

제15조 (수정 및 교정)

콘텐츠사업자는 제14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상 저작물의 연재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수정이나 편집을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콘텐츠사업자는 저작권자에게 수정, 교정된 내용에 관하여 최종 확인을 받아야 하며, 이는 협의를 통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6조 (원고의 반환 등)

- ① 계약기간의 만료 등으로 이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콘텐츠사업자는 저작권자로 부터 받은 육필 원고나 원화 등 실물원고 기타 일체의 자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원고 또는 자료가 전자적 형태로 제공되었을 경우, 저작권자는 콘텐츠사업자에게 이를 파기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파기 사실을 확인하는 서면 교부를 요구할 수 있다.
- ③ 콘텐츠사업자가 자료를 훼손 또는 분실하거나 본 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콘텐츠사업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다만, 자신의 책임없는 사유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상 저작물을 구매한 이용자에게 차질 없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또는 콘텐츠사업자가 판권, 포맷 등 대상 저작물의 원안을 편집하여 구성한 경우 그 성과의 존중을 위하여, 콘텐츠사업자는 필요한 최소한의 자료를 저작권자와 협의하여 보존할 수 있다.

제17조 (계약 내용의 변경)

이 계약은 저작권자와 콘텐츠사업자 쌍방의 서면에 의한 합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제18조 (양도 금지)

저작권자 또는 콘텐츠사업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이 계약상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9조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

- ① 저작권자 또는 콘텐츠사업자가 이 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그 상대방은 ___일(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제대로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상대방은 대상 저작물의 연재가 시작되기 이전까지는 이 계약을 해지·해제할 수 있으며, 연재가 시작된 후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③ 저작권자는 콘텐츠사업자가 더 이상 이 계약을 진행할 의사가 없음을 서면으로 통지하거나, 파산 등의 사유로 이 계약에 따른 이행을 계속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 즉시 이 계약의 해지를 콘텐츠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다.
- ④ 이 계약이 해지되면, 저작권자와 콘텐츠사업자는 다음과 같은 책임을 부담한다.
 1. 콘텐츠사업자는 저작권자에게 해지 시점까지 발생한 모든 수익분배금을 즉시 지급한다.
 2. 콘텐츠사업자는 저작권자에게 제16조에 따라 원고 등을 반환 및 교부한다.
 3. 콘텐츠사업자는 즉시 대상 저작물의 연재 및 이용을 중지하거나 저작권자의 요구에 따라 계약상의 권리를 양도하여야 한다.
 4. 이상의 책임과는 별개로, 해지의 책임이 없는 자는 상대방에게 해지에 따라 발생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⑤ 저작권자는 콘텐츠사업자가 제6조 제2항의 기간 내에 연재를 개시하지 않는 경우 이 계약의 해제를 콘텐츠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다. 본 항에 따라 이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제21조 제1항은 적용되지 아니하고, 만약 저작권자가 콘텐츠사업자로부터 이 계약 제12조 제1항에 의해 교부받은 금액이 있다면 이를 콘텐츠사업자에게 전액 반환하기로 한다.
- ⑥ 저작권자가 콘텐츠사업자 소속 임직원에 의해 성희롱·성폭력 피해를 입은 경우 저작권자는 해당 임직원을 관련 업무에서 배제 요청할 수 있으며, 콘텐츠사업자는 사실을 확인한 후 업무배제 및 기타 적절한 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 ⑦ 저작권자 또는 콘텐츠사업자(소속 임직원을 포함한다)가 상대방에 대한 성희롱·성폭력으로 인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나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상대방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0조 (성희롱 등의 피해 구제)

제19조 제7항에도 불구하고 계약 당사자(당사자가 법인, 단체일 경우 그 대표를 포함하여 법인,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임직원 및 자문·기획위원 등을 포함함, 이하 본 조에서 동일함) 중 어느 일방이 상대방 당사자로부터의 성희롱 등 행위로 정상적인 저작물 창작 활동 또는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지 못한 경우,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그 내용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거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신고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제21조 (손해배상)

- ① 이 계약을 고의 또는 과실로 위반한 당사자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상대방은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 사실은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22조 (불가항력)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재난으로 저작권자 또는 콘텐츠사업자가 손해를 입거나 계약 이행이 지체 또는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서로의 책임을 면제하며, 후속조치를 쌍방이 서면으로 합의하여 결정한다.

제23조 (비밀유지 등)

- ① 저작권자와 콘텐츠사업자는 이 계약의 내용 및 계약 이행 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의 사업상 비밀 정보를 상대방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개 또는 누설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아래 각호의 경우는 제1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1. 계약서 체결 또는 검토를 위하여 비밀유지의무를 지는 변호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경우
 2. 수사나 소송 등의 분쟁으로 인해 수사기관 또는 사법기관에 제출하는 경우
 3. 법령에 따른 신고나 조사를 위한 목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4. 그밖에 법령에 의해 정보의 공개가 강제되는 경우

제24조 (개인정보의 취급)

- ① 저작권자와 콘텐츠사업자는 대상 저작물의 연재 및 이에 부수하는 업무 과정과 이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의 취지에 따라 유의하여 취급하여야 하며, 사전 동의 없이 이를 누설하거나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저작권자는 콘텐츠사업자가 이 계약에 의한 연재물의 제작 및 광고, 홍보, 판매 등을 위하여 저작권자가 제공한 정보를 스스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허락한다. 다만, 저작자의 실명과 초상 이용에 대하여는 저작자와 콘텐츠 사업자가 합의하여 결정한다.

제25조 (계약의 해석 및 설명의무)

- ① 이 계약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저작권자와 콘텐츠사업자가 서면으로 합의하여 정할 수 있고,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저작권법 등 관련 법률 및 계약해석의 원칙에 따라 해결한다.
- ② 콘텐츠사업자는 저작권자에게 계약서의 날인 또는 서명 이전에 계약서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다만, 저작권자의 의사에 따라 추가되거나 변경된 계약의 내용은 저작권자가 콘텐츠사업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의 설명과 별개로, 콘텐츠사업자는 저작권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저작권자가 계약서 내용 전문을 최초로 확인한 시점으로부터 최소 15일의 기간을 보장하여 저작권자가 계약 전 법률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어야 한다.

제26조 (저작권 침해의 공동대응)

저작권자와 콘텐츠사업자는 대상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 행위에 공동으로 대응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상대방에게 자료를 제공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27조 (분쟁의 해결)

- ① 이 계약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저작권자와 콘텐츠사업자는 제소에 앞서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을 받을 수 있다.
- ② 저작권자와 콘텐츠사업자 사이에 제기되는 소송의 제1심 법원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28조 (효력 발생)

이 계약은 계약체결일로부터 효력이 발생된다.

■ 특약 사항

이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저작권자, 콘텐츠사업자가 서명 날인한 다음 각 1통씩 보관한다.

_____년 __월 __일

“저작권자”

성명(이명) : _____(인)

생년월일 :

주 소 :

입금계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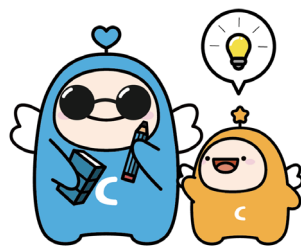
“콘텐츠사업자”

상 호 :

사업자 번호 :

주 소 :

대 표 자 : _____ (인)



부록 3 : 저작권 조정제도 안내

1. 개요

저작권에 관한 분쟁 발생 시 법조계, 학계 그리고 산업계를 대표하는 전문가로 구성된 조정부의 조정위원들이 저작권 분야의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당사자간의 원만한 합의를 유도하는 제도

2. 특징

신속성	소송에 비해 신청 및 진행 절차가 신속 간편하므로 장기간 소요되는 소송에 비해 비교적 단기간 내로 처리(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전문성	각 조정부는 법조계, 학계, 산업계를 대표하는 저작권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어 전문적인 조력 지원 가능 (조정부는 합의부 또는 단독부로 구성)
경제성	소송에 비해 저렴한 비용으로 조정 가능 (조정 수수료는 최소 1만원부터 조정취지에 따라 변동)
비공개성	비공개가 원칙이므로 영업상 또는 개인적 비밀이 보장

3. 조정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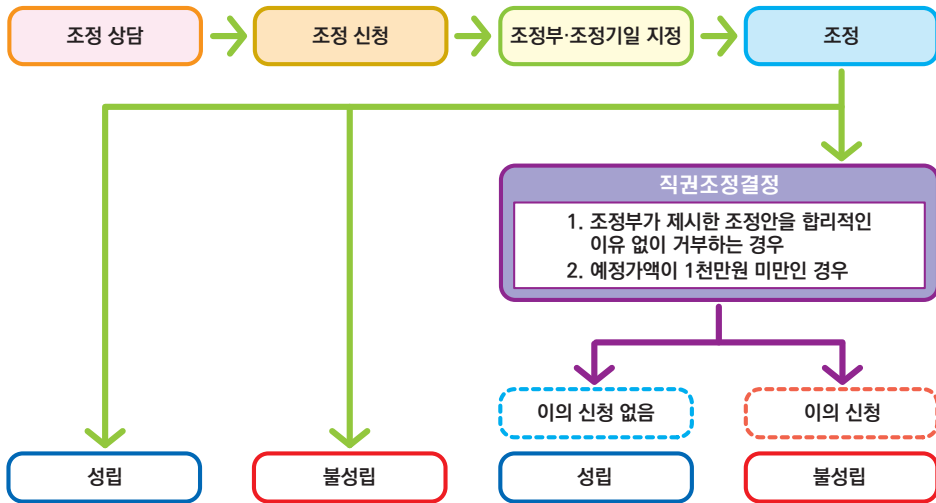
- 저작권 분쟁 당사자의 조정신청서가 접수되면 위원장이 담당 조정부를 지정하고 담당 조정부는 조정 당사자에게 조정기일을 지정하고 조정기일통지서 발송
- 조정부장은 필요한 경우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자의 출석 및 증명 서류의 보완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담당조정부는 조정처리기한인 3개월 안에 1차 이상의 조정기일을 진행을 통해 조정당사자들의 진술을 듣고 당사자간 원만한 합의를 유도
- 조정은 조정 당사자간의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하면 성립되고 이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어서 별도의 재판 절차없이 강제집행이 가능

4. 조정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전자조정사이트 : adr.copyright.or.kr)
- 오프라인 신청(우편)

5. 조정 관련 문의

- 한국저작권위원회 조정감정팀 (☎ 02-2669-0043,0044)



Q. 조정이 성립되었는데, 그 법적인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A. 성립된 조정은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조정은 당사자 간에 합의된 사항을 조정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되며, 이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저작권법 제117조 제5항). 따라서 상대방이 조정조서에 기재된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 조정조서를 채무명의로 하여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조정조서에 대한 강제집행문을 부여하기 위한 근거로 1992년 3월 2일 “각종 분쟁조정위원회 등의 조정조서 등에 대한 집행문 부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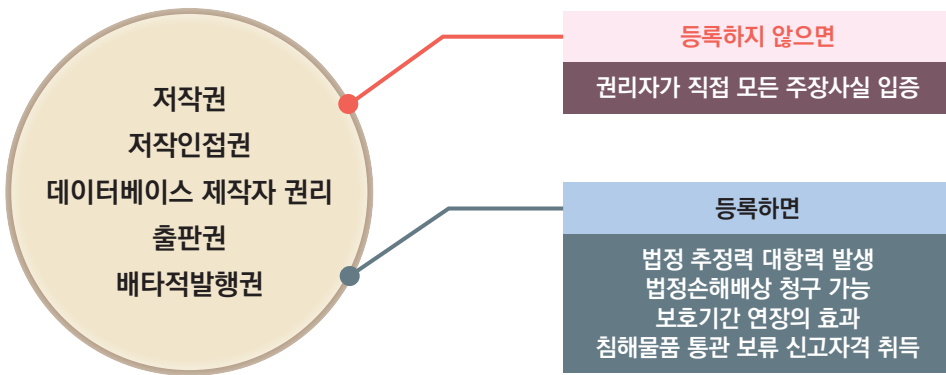
부록 4 : 저작권 등록제도 안내

1. 저작권 등록이란

저작물에 관한 일정한 사항(저작자 성명, 창작연월일, 맨 처음 공표연월일 등)과 저작재산권의 양도, 처분제한, 질권설정 등 권리의 변동에 대한 사항을 저작권등록부라는 공적인 장부에 등재하고 일반 국민에게 공개, 열람하도록 공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저작권 등록의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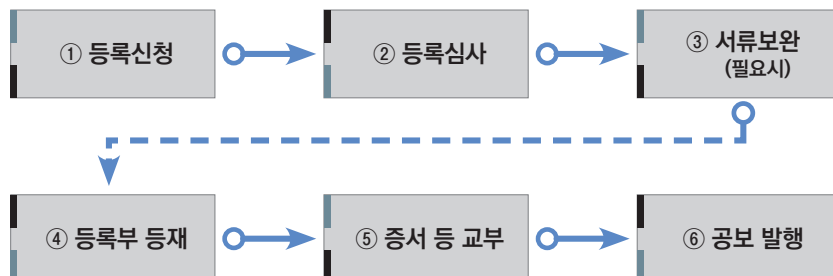
저작권법에서 부여하는 다음과 같은 법률적 효력이 발생함으로써 저작자의 권리를 쉽게 보호하고, 나아가 저작물의 공시에 따른 간접적인 홍보효과도 거둘 수 있습니다.



3. 어떤 등록을 해야 할까요

- 권리등록(저작물의 창작 사실 등 등록)
저작물 제호, 저작자 성명, 창작연월일, 공표연월일, 공표매체 등 등록
- 권리변동 등록(저작재산권의 변동 사실 등록)
저작재산권 양도, 배타적발행권·질권의 설정·이전·변경·소멸,
처분제한(압류·가압류) 등 등록
- 등록사항 변경/말소 등 등록
오기사항 경정, 제호·개명·주소 변경, 등록사항 말소·말소회복 등록

4. 등록절차



5. 신청방법

- 온라인 등록 시스템 : www.cros.or.kr

신청서 작성, 복제물 제출, 수수료 결제, 등록증 발급까지 온라인 등록 시스템으로 빠르고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 공인인증서 필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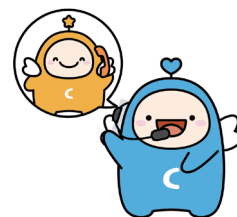
- 우편 / 방문

구비서류와 수수료 일체(등록면허세 포함)를 등기우편으로 보내 주시거나 위원회를 직접 방문하여 담당자 안내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등록 시스템 ‘등록신청 - 오프라인 신청 - 맞춤형 서류 안내’ 참조)

6. 운영 안내

- 운영시간 : 월~금요일(9:00~18:00)(전화상담 및 내방 등록접수는 17:00마감)
- 연락처 : 등록 및 법률상담 Tel. 1800-5455 / Fax. 02)6007-1435
- 홈페이지 : www.cros.or.kr



부록 5 : 저작권법률지원센터 안내

저작권법률지원센터

저작권법률지원센터는 문화예술인의 저작권 권리행사를 지원하고, 각 장르별로 분산된 저작권 관련 법률상담 지원 기능을 연계하여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설립

○ 저작권 법률상담

· 대화상담

- 전화상담 Tel. 1800-5455 / 평일 09:00~17:00 (점심 12:00~13:00)

- ①번. 저작권 법률상담, ②번. 저작권 등록상담,
- ③번. 저작권 계약상담, ④번. 기타 업무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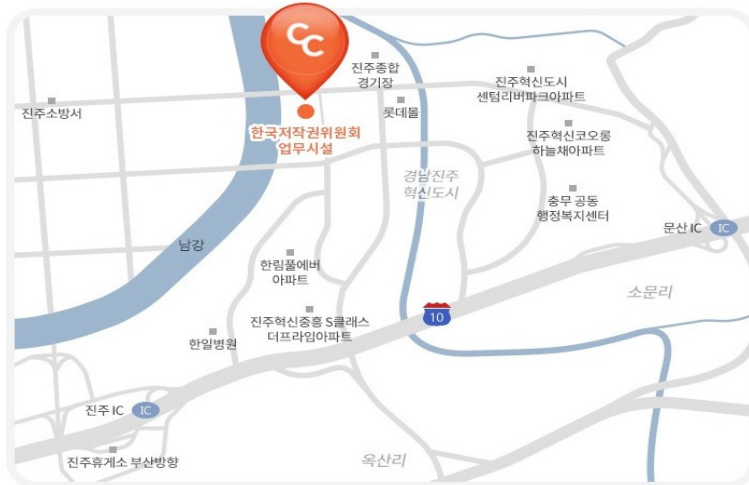
- 방문상담(사전예약) / 평일 10:00~16:00 (점심 12:00~13:00)

· 법률문의게시판

※ 방문상담 예약 및 법률문의 게시판은 한국저작권위원회 누리집→사업→저작권법률지원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오시는 길

[한국저작권위원회 본부]



주소 : (52851) 경상남도 진주시 소호로 117

대표전화 : 055-792-0000

○ 찾아오시는길

- 1) 진주고속버스터미널 승차: 280,290번 버스 탑승,
종합경기장/중소벤처진흥공단 하차 후 도보 5분
- 2) 진주시외버스터미널 승차: 281,292,293,300,301번 버스 탑승,
종합경기장/중소벤처진흥공단 하차 후 도보 5분
- 3) 진주역 승차: 150, 150-1, 10번 버스 탑승
종합경기장/중소벤처진흥공단 하차 후 도보 5분

[한국저작권위원회 서울사무소]



주소 : [우:04323] 서울특별시 용산구 후암로 107 게이트웨이하위 5/16층
대표전화 : 02-2669-0010

○ 교통이용안내

- ▶ 지하철: 서울역
(1호선, 4호선, 공항철도, 경의중앙선) (1호선, 4호선 11번 출구 -> 게이트웨이하위 도보이동 또는 출구 지하 아케이드를 통해 지하2층에서 엘리베이터 이용)
- ▶ 버 스: 서울역버스환승센터
(서울역버스환승센터 -> 서울역 9-1번 출구로 오신 후 지하철 1호선, 4호선 11번 출구를 통해 게이트웨이하위로 도보이동)



펴낸날 2025년 12월

기획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법률지원센터

집필 전현수(한국저작권위원회)

감수문선영(서울시립대학교), 이영욱(법무법인 감우)

펴낸곳 한국저작권위원회

52851 경상남도 진주시 소호로 117

04323 서울특별시 용산구 후암로 107(게이트웨이타워 5, 16층)

디자인 ㈜착한사람들

ISBN 978-89-6120-620-4

978-89-6120-038-7 (세트)